

현안분석 2007-

법령용어 연구 07-01

국방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대희 · 한상우 · 강현철

2007. 10.

국방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national defense related law

연구자 : 김 대 희 (법제처 재정기획관)

Dae, Hee-Kim

한 상 우 (법제처 법제정책팀장)

Han, Sang-Woo

강 현 철 (부연구위원)

Kang, Hyun-Cheol

2007. 10.

국문 요약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조직적 특성과 법령 정비에 대한 다소 경직적인 태도 속에 국방 관계 법률은 다른 분야의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어와 문장을 많이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정 빈도와 폭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일본식 용어와 문장의 개선의 필요성도 비교적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방과 관련된 주요 법률들을 전면적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고치고, 보다 비권위적이며 민주적인 법령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와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방 관계 법률에서 쓰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그리고 전문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잘못 사용된 단어나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반듯한 용어나 문장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조항은 각 호로 분리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체계도 정리하였다.

※ 키워드 : 법령용어, 국방관련법령, 알기 쉬운 법령, 법언어학, 입법학, 법령용어순화

Abstract

National defense related law need t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because of incomprehensibility to cause expression chinese and japanese. Therefore, this report studies on a question and a scheme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national defense related law classify a field.

This field classify the organization, a personnel management administration, military installations and the criminal law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bout terminology and sentence in national defense related law. In particular, this report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 provisions in national defense related law. This suggestion make the good use of research material for establish and revision in law.

As well, This suggestion hope to study a synthesis under conditions of insufficiency opinion about national defense related law. This suggestion hope to make an opportunity of comparison and examination about opinion of another reciprocity.

※ Key words : National defense related law,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terminology,

목 차

| | |
|---------------------------------------|----|
| 국문요약 | 3 |
| Abstract | 5 |
| I. 머리말 | 11 |
| II. 국방 관계 법률의 개요 | 15 |
| 1. 국방 관계 법률의 체계 | 15 |
| 2. 국방 관계 법률의 연혁 | 15 |
| 가. 조직 관련 법률 | 16 |
| 나. 인사 및 연금·기금 관계 법률 | 17 |
| 다. 군수(軍需)와 군사 시설·보안·기밀 관계 법률 | 17 |
| 라. 비상·방위 관계 법률 | 18 |
| 마. 군 사법(司法) 관계 법률 | 19 |
| III. 국방 관계 법률 용어의 순화 | 21 |
| 1. 어려운 한자어 | 22 |
| 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 22 |
| 나. 풀어 써야 할 한자어 | 26 |
| 다. 한자 병기가 필요한 한자어 | 27 |
| 2. 일본식 한자어 | 27 |
| 3. 지나치게 줄여 쓴 한자어와 어구 | 31 |
| 4.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 32 |

| | |
|---------------------------------------|----|
| 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 32 |
| 나. 본딤말 | 34 |
| 5. 군에 특유하거나 권위적·비민주적인 용어 | 35 |
| 6.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 36 |
| | |
| IV.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 39 |
| 1. 문장 구조 | 39 |
| 가. 문장 성분의 호응(呼應) | 39 |
| 나. 문장의 어순 | 40 |
| 다. 사물 주어와 피동문 | 42 |
| 2. 한문이나 일본어투 표현 | 42 |
| 가. 명사 연결체와 명사가 연결된 구절의 경우 | 42 |
| 나. ~으로써 | 43 |
| 다. 조사 ‘~에’가 잘못 쓰인 경우 | 44 |
| 라. ~을 필요로 하는 / ~을 요하는 | 45 |
| 마. ‘~에 있어(서)’, ‘~에 있어서의’ | 45 |
| 바. 조사 ‘의’의 남용 및 오용 | 46 |
| 3.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표현 | 48 |
| 4.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 48 |
|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 50 |
| | |
| V.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의 개선 | 55 |
| 1. 법령문 띄어쓰기 | 55 |
| 가. 법령 제명(이름) 띄어쓰기 | 56 |

| | |
|----------------------------------|----|
| 나. 명사·명사구의 띄어쓰기 | 56 |
| 다. 접미사의 띄어쓰기 | 57 |
| 라. 그 밖의 용어와 기호 | 58 |
| 2. 문장 부호 | 59 |
| 가. 가운데점(·) | 59 |
| 나. 반점(.) | 60 |
| VI.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의 개선 | 61 |
| 1. 인 용 | 61 |
| 2. 준 용 | 62 |
| 3.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체계 등 조정 | 63 |
| VII. 국방 관계 법률의 정비안 개요 | 69 |
| 1. 정비 개요 | 69 |
| 2. 정비 원칙 | 69 |
| 3. 정비 법률 개요 | 69 |
| VIII. 맺는말 | 71 |

《부 록》

| | |
|--------------------------------------|-----|
|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75 |
| 【통칙·조직 관계 법률】 | 77 |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현행·정비안 대비표 | 77 |
| ○ 「國軍組織法」 현행·정비안 대비표 | 88 |
| 【인사 및 연금·기금 관계 법률】 | 93 |
| ○ 「군인사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93 |
| ○ 「군무원인사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128 |
| ○ 「군인연금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141 |
| ○ 「군인복지기금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168 |
| 【군사 시설·보안·기밀 관계 법률】 | 171 |
| ○ 「軍需品管理法」 현행·정비안 대비표 | 171 |
| ○ 「군사시설보호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180 |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현행·정비안 대비표 ... | 187 |
| ○ 「군사기밀보호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191 |
| 【비상·방위 관계 법률】 | 197 |
| ○ 「계엄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197 |
| ○ 「徵發法」 현행·정비안 대비표 | 203 |
| ○ 「통합방위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212 |
| 【군사법 관계 법률】 | 225 |
| ○ 「군형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225 |
| ○ 「군행형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 247 |

I. 머리말

법치국가에서의 법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는 모범 문장이어야 하나, 현실을 보면 용어가 어렵고 문장이 복잡하며,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도 어문 규정에 맞지 않아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기가 무척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되어 한글날이 국경일로 되면서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개선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다.¹⁾

따라서, 백성은 하늘이 낸 것이라는 천민의식(天民意識)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 했듯이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법률 문화도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보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1)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면접조사 (2006. 11. 7.~22.) ; (주) 한국리서치 성인 남녀 846명
- 법령용어와 문장에 대한 인식
 - * 대부분의 국민(87%)은 현행 법령 용어와 문장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 그 주요 원인(2가지 선택)은,
 -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다(61.9%)
 - 어려운 전문 용어나 일본식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48.5%)
 -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27.4%)
 - 용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서(20%)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의견
 - * 대부분의 국민(83.9%)은 내용 변화 없이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친다(63.2%)
 - 한자를 한글로 바꾼다(15.9%)
 - 일본식/한자식 용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고친다(13.4%)
 - 문맥에 맞게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꾼다(4.8%)
 -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고친다(2.8%)

1. 머리말

이런 가운데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²⁾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조직적 특성과 법령 정비에 대한 다소 경직적인 태도 속에 국방 관계 법률은 다른 분야의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어와 문장을 많이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정 빈도와 폭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일본식 용어와 문장의 개선의 필요성도 비교적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06년 말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안보 환경과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방과 관련된 주요 법률들을 전면적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고치고, 보다 비권위적이며 민주적인 법령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와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업은 4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려운 한자, 한자어, 일본식 표현, 전문 용어, 외래어나 외국어 등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령’이 되게 하고, 모호하거나 번잡한 표현은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법령’이 되게 하며,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범을 충실히 지켜 ‘반듯한 법령’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럽고 친숙한 법령’ 문장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방 관계 법률에서 쓰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그리고 전문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잘못 사용된 단어나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반듯한 용어나 문장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조항은 각 호로 분리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체계도 정리해 보려고 한다.

Ⅱ. 국방 관계 법률의 개요

1. 국방 관계 법률의 체계

국방과 군사 관계 법률은 국방 조직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법률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법률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안위(安危)는 국민의 생존은 물론 나라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국방 활동은 대표적인 국가 사무로 인식되어 왔다.

야경국가 시대에서부터 국방은 국가목적적인 주요 행정작용의 하나로 생각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겨지지만, 지금의 현대전(現代戰)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한 총력전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과 군사 관계 법률도 크게 국방 준비태세의 확립에 관한 법제와 유사 시 그 자원과 역량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작용에 관한 법제로 구분되어 규정되고 있다.

군정(軍政) 및 군령(軍令)에 관한 구분을 기초로 할 때 국방과 군사 관계 법률은 먼저 군정에 관하여 군의 조직편성과 군의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군의 조직에 관한 법제, 병력의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병역에 관한 법제,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 군공무원인 군인·군무원에 관한 법제(인사 및 복지·후생에 관한 법제), 군수(軍需) 및 군재정에 관한 법제, 군사보안과 시설의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군사의 운용(軍令)이라는 측면에서는 군의 운용에 관한 법제(계엄·작전·동원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다.

2. 국방 관계 법률의 연혁

건국 이후 6·25 직전까지는 창군(創軍)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조직 법규와 병역자원의 확보를 위한 「병역법」의 제정이 주된 것이었다.

II. 국방 관계 법률의 개요

그런데 그 후 1960년대 초까지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 등으로 국방 관계 법률의 완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 1970년대 초까지는 국방 체제의 정립기로 국방과 군사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군인사법』, 『군속인사법』(『군무원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보수법』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고, 『국군조직법』과 병역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로서 자주국방의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 군 지휘체계의 개선과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군의 현대화를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10년 동안에는 군사 대비태세의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방위력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통합 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군 구조개편 사업, 방위력 개선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6년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방 운영의 체제, 군의 구조 개편을 통한 정예(精銳) 강군(強軍)을 육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가. 조직 관련 법률

1948년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국군에 편입되고 그 명칭도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으며, 정식으로 국군 조직의 대강이 법제화된 것은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된 때부터이다. 『국군조직법』은 국방기관의 설치와 편성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정과 군령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63년에 전부개정되었고, 그 후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을 뿐 전부개정은 되지 않았다.

『국군조직법』에서는 각군 부대 및 기관의 설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군 교육기관과 각군의 소속 부대는 대부분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와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유능한 초급장교와 하사관의 육성과 군인 등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각종 사관학교가 각기 근거법을 두고 설치되었다.

나. 인사 및 연금·기금 관계 법률

군인의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군인사법』은 5·16 후인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어 군인의 계급, 병과 구분, 복무, 정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후 『군인사법』은 44차례나 개정되었으나, 한번도 전부개정된 바가 없어서 가지조문이 많음은 물론 조문 체계가 비교적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군인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했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이나 사망한 때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3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그 후 27차례나 개정되었으나, 한번도 전부개정된 바는 없다.

한편, 1995년 12월 19일에는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여 군인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2002년에 한차례 개정되었다.

다. 군수(軍需)와 군사 시설·보안·기밀 관계 법률

군수와 방위산업 관련 법제는 군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포함하는 물적 자원(군수품)의 획득과 관리에 관한 법제이며, 크게 군수품의 관

II. 국방 관계 법률의 개요

리라는 차원에서 『군수품관리법』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과 군수물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이라는 차원에서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³⁾이 있으며, 일반 재무행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군수품관리법』은 『물품관리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군수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3년 3월 23일에 제정되어 전부개정 없이 5차례 개정된 바가 있다.

한편,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며 군사시설구역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72년 12월 26일에는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후 한차례의 전부개정을 포함해서 5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와 토지 등의 수용(收用)에 관한 규정을 일반 법률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 1991년 1월 14일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그 후 9차례 일부개정만 된 바가 있다.

그리고,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2년 12월 26일에는 『군사기밀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한차례의 전부개정을 포함해서 4차례 개정된 바가 있다.

라. 비상·방위 관계 법률

군이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비상시에든 헌법적 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의 군의 기능은 가능하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3)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이지만, 한글화된 법률이므로 부록 정비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헌헌법 제64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했고, 그에 따라 1949년 11월 24일에 『계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후 한차례의 전부개정을 포함해서 4차례 개정되었다.

그리고 1963년 5월 1일에는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징발법』을 제정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군 작전에 필요한 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 법은 제정된 이후 7차례 일부개정만 되었다.

한편, 전시(戰時)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적용되는 계엄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대침투작전의 수행을 위해 1997년 1월 13일에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후 7차례 일부개정만 되었다.

마. 군 사법(司法) 관계 법률

군 사법제도(司法制度)는 일반 형사 사법제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형사 실체법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 절차와 사법(司法) 조직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⁴⁾이 제정되어 있으며, 형의 집행에 관하여는 『군행형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후 13차례 일부개정만 된 바가 있다. 또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사법원의 조직, 군검찰관의 직무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군사법원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다.

4)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이지만, 일반 법원법과 소송법과의 통일성 유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록의 정비대상에서는 제외했다.

II. 국방 관계 법률의 개요

한편, 『군행형법』은 군사법원에 의하여 형을 받은 자를 격리·보호하고 교정·교화하여 사회 또는 군에 복귀시키기 위해 군행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다.

Ⅲ. 국방 관계 법률 용어의 순화

‘용어’란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로서, 법령 분야에서도 공통적인 용어는 물론 분야별 전문 법령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함축성과 간결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법령문에서 용어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문장과 함께 법령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령문의 순화에 있어서 법령 용어의 순화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용어는 법령문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너무 전문적인 내용의 용어를 사용하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법령에서 멀어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용어는 ‘법령 용어 순화 편람’을 활용해서 그 법령문의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쉽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좋은 표현이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방 관계 법률에서는 이런 순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지 못한 채 용어 사용이 굳어져 왔기 때문에 순화 작업에 대한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많을 수 있어서 더욱 세심한 우리말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방 관계 법률에서의 용어 순화는 주로 군 내부에서만 쓰이는 용어의 경우 특별히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순화의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용어가 국방 관련 제도를 국민에게 설명한다든지 군 복무 후 일반국민의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순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어려운 한자어

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했는데, 여기서 ‘어려운 한자어’의 기준은 일반국민의 눈높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순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素行**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 평소의 행실

「군인사법」

제19조 (참모총장의 임명)

④참모총장은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가 **終了**된 후 **合參議長**으로 **轉職**되지 아니하는 **限轉役**된다.

⇒

④참모총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거나** 그 임기를 마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轉役**)된다.

「계엄법」

제 6 조 (지휘·감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에 **국가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국책(國策)**]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제 9 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④계엄사령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燒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불에 태워 없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대상자나 그 법령을 자주 찾아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게 느끼고 있는 한자어를 무리해서 순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군인사법」 등에서 쓰이고 있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라는 말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말이지만, 「군인사법」 등을 주로 보는 군인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풀어 쓰게 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령에 나오면서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용어는 쉬운 고유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위(詐僞)’를 ‘속임수’로, ‘허위(虛僞)’를 ‘거짓’으로, ‘교부(交付)하다’를 ‘내주다, 주다’로 고치는 것이 그 예이다.

- 그 밖에 어려운 한자어나 보다 쉬운 우리말이 있는 한자어
(* 일부 법률에서만 쓰이는 경우에는 법 제명과 조문을 표시했다.)

「군형법」 §41②

가병(假病)

⇒

피병

「통합방위법」 §17①(3)

개활지(開闢地)

⇒

앞이 막힘없이 트여 열려 있는 지역

Ⅲ. 국방 관계 법률 용어의 순화

| | | |
|---|---|---------------------------------|
| 경유(經由)하다 | ⇒ | 거치다 |
| 「군사시설보호법」 §2(1) 공용(供用)되는 | ⇒ | 쓰이거나 쓰기 위하여 준비되는 |
| 「군형법」 §6 등 군용에 공(供)하는 | ⇒ | 군용에 쓰이는(제공되는) |
| 「군행형법」 §19 주류(酒類)와 담배를 <u>급여(給與)하지</u> 못한다. | ⇒ | 주류(酒類)와 담배를 <u>주지</u> 못한다. |
| 기(既) | ⇒ | 이미, 기존에 |
| 기능 증진(增進)을 위한 | ⇒ | 기능을 높이기 위한 |
| 납부(納付)하다 | ⇒ | 내다 |
| 「군형법」 §2(5) 내습(來襲)을 | ⇒ | 적이 습격하여 오는 것을 |
|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동목 | ⇒ |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같은 목 |
| 득(得)하다 | ⇒ | 받다, 얻다 |
| 「군형법」 §5(2) 모의(謀議)에 | ⇒ | 반란을 피하고 의논하는 데에 |
| 「군형법」 §71① 복몰(覆沒) 또는 | ⇒ | 함선을 뒤집혀 가라앉게 하거나 [복몰(覆沒)] |
| 본법, 본장, 본조 | ⇒ | 이 법, 이 장, 이 조 |
| 「군형법」 §35(2) 병원(兵員) | ⇒ | 병력 |

1. 어려운 한자어

| | | |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③(4) 사력(沙礫/砂礫) | ⇒ | 자갈 |
| 소정(所定)의 | ⇒ | 정하여진 |
| 「군사기밀보호법」 §22③ 신문(訊問)하고 | ⇒ | 자세히 따져서 물어보고 |
| 「군행행법」 §82① 약취(掠取)한 | ⇒ | 재물을 훔쳐서 빼돌려 가지거나 약탈하여 가진 |
| 「통합방위법」 §2(13) 심대한 | ⇒ | 매우 큰 |
| 원격지(遠隔地) | ⇒ | 멀리 떨어진 곳 |
| 「군행형법」 §35(2) 위난(危難)에 처하여 | ⇒ |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당하여 |
| 「군형법」 §6 작당(作黨)하여 | ⇒ | 무리를 이루어 |
| 「군형법」 §61(2) 조세(助勢)한 | ⇒ | 도움을 준 |
| 통지(通知)하다 | ⇒ | 알리다 |
| 통할(統轄), 통괄(統括) | ⇒ | 총괄 |
| 「군무원인사법」 §30① 직위가 폐직(廢職)되거나 | ⇒ | 직위가 없어지거나 |
| 「군형법」 §14(1) 향도(嚮導)하거나 | ⇒ | 길을 인도하거나 |
| 해태(懈怠)하다 | ⇒ | 게을리하다, 제때 하지 않다 |

III. 국방 관계 법률 용어의 순화

나. 풀어 써야 할 한자어

적절한 우리말 순화 용어를 찾기가 어려운 한자어의 경우 일단 그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 후 쌍점(:)을 찍고 그 뜻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 |
|--|--|
| 「군형법」 | |
| 제40조 (哨令違反) | 제40조 (초령위반) |
| ①정당한 사유 없이 <u>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u> 哨兵을 교체시키거나 교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 ①정당한 사유 없이 <u>초령(哨令: 경계를 서는 병사가 지켜야 할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u> 초병(哨兵)을 교체시키거나 교체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위의 사례에서는 조문 제목의 ‘초령’ 부분은 그대로 두되, ‘초령’이라는 용어는 매우 어려우므로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되, 쉽게 풀어서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했다.

| | |
|--|--|
| 「군형법」 | |
| 제27조 (指揮官의 守所離脫) | 제27조 (지휘관의 수소이탈) |
| 指揮官이 正當한 理由없이 部隊를 引率하여 <u>守所를 離脫하거나 配置區域에 臨하지 아니한 때</u> 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 지휘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u>일정한 구역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를 이탈(수소이탈(守所離脫))하거나 배치구역을 지키지 아니한 때</u>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 |
|--|---|
| 「계엄법」 | |
| 제 6 조 (指揮·監督) | 제 6 조 (지휘·감독) |
|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戒嚴司令官을 指揮·監督함에 있어서 <u>國策</u> 에 關係되는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 ②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에 <u>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國策)</u> 에 關係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위의 사례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등을 풀어쓰되, 그 한자어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해서, 괄호에 그 한자어도 함께 적어 주었다.

다. 한자 병기가 필요한 한자어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한자 병기(併記)가 필요한 데,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군기 ⇒ 군기(軍旗)
: 「국군조직법」 §5①, 군기(軍紀) 등과 혼동 우려
- 전력체계 ⇒ 전력체계(戰力體系),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3(5),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 도서 ⇒ 도서(島嶼)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15②,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 장관급 장교 ⇒ 장관급(將官級) 장교
: 「군인사법」 §3①(1) 등, 장관(長官) 등과 혼동 우려
- 전군 ⇒ 전군(轉軍)
: 「군인사법」 §5의2 등, 전군(全軍) 등과 혼동 우려
- 계속 ⇒ 계속(係屬)
: 「계엄법」 §12② 등,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 원장 ⇒ 원장(原狀)
: 「징발법」 §14,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2.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는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뜻으로 읽는 것(訓讀)을 그대로 옮겨서 표기하고 읽는 것이므로 우리 법령에서 이

Ⅲ. 국방 관계 법률 용어의 순화

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 오다보니 그것이 일본식 한자어인지도 모르는 채 우리말처럼 굳어져 버린 것들이 많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응하는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순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공(供)하다 ⇒ 쓰이다, 제공하다, 사용되다
: 「군형법」 §11① 등, 군용에 **供하는** → 군용에 **쓰이는**
- 당해(當該) ⇒ 그, 해당
: 「국군조직법」 §14③, **당해** 군참모총장 → **해당** 군참모총장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8①,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 부의(附議)하는 ⇒ 회의에 부치는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7(6),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요(要)하다 ⇒ 필요하다
: 「군인사법」 §24의3, **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 **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 잔여(殘餘) ⇒ 남은
: 「군인사법」 §60의3③, **잔여기간** → **남은** 기간
- 제반(諸般) ⇒ 모든, 각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9①, **제반**사항 → **모든** 사항
: 「통합방위법」 §2(12)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 **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 참작(參酌)하여 ⇒ 고려하여
: 「군무원인사법」 §15①, §44① 등

○ 현저(顯著)한 ⇒ 뚜렷한

: 『군인사법』 §24의3 등 공적이 특히 **현저한** → 공적이 특히 **뚜렷한**

그 밖에 국방 관계 법률에서 자주 나오는 일본식 한자어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쓴다.

○ 그 밖의 일본식 한자어

| | | |
|----------|---|-------------------|
| 간주(看做)하다 | ⇒ | 여기다, --로 보다 |
| 감(減)하다 | ⇒ | 빼다, 덜다, 낮추다 |
| 감안(勘案)하다 | ⇒ | 고려하다, 살피다, 생각하다. |
| 경(輕)하다 | ⇒ | 가볍다, 약하다 |
| 중(重)하다 | ⇒ | 무겁다 |
| 구축(構築)하다 | ⇒ | 마련하다, 갖추다 |
| 기재(記載)하다 | ⇒ | 쓰다, 적다 |
| 내역(內譯) | ⇒ | 명세, 내용 |
| 단축(短縮)하다 | ⇒ | 줄이다 |
| 도래(到來)하다 | ⇒ | 이르다 |
| 부의(附議)하다 | ⇒ | 회의에 부치다 |
| 부합(附合)하다 | ⇒ | (들어)맞다 |
| 비치(備置)하다 | ⇒ | 갖추어 두다, 준비하다 |
| 상당(相當)한 | ⇒ | 적당한, 적절한, 해당하는 |
| 소요(所要)되다 | ⇒ | (비용이)들다, (시간이)걸리다 |
| 식별하다 | ⇒ | 알아보다 |

Ⅲ. 국방 관계 법률 용어의 순화

| | | |
|----------------------|---|-------------------------|
| 요(要)하다 | ⇒ | 필요로 하다, 요구되다 |
| 용이(容易)하다 | ⇒ | 쉽다 |
| 응(應)하다 | ⇒ | 따르다, 응답하다 |
| 일체(一切) | ⇒ | 모두 |
| 잔여(殘餘) | ⇒ | 나머지 |
| 잔재(殘在)하다 잔존(殘存)하다 | ⇒ | 남아 있다 |
| 저해(沮害)하다 해(害)하다 | ⇒ | 해치다 |
| 적정(適正)한 | ⇒ | 적절한, 적당한, 적절하고 알맞은 |
| 참작(參酌)하다 | ⇒ | 헤아리다, 고려하다 |
| 취합(聚合)하다 | ⇒ | 모으다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限)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필증(畢證) | ⇒ | 증명서 |
| 한(限)하다 | ⇒ | ~만을 말한다, ~로(에) 한정(제한)한다 |
| 현저(顯著)한 | ⇒ | 뚜렷한, 매우 큰 |

* 위의 일본어 한자어는 해당 법령문에서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해서 적절하게 수정·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지나치게 줄여 쓴 한자어와 어구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축약어(縮約語: 줄여 쓴 말)는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게 되기 때문에 법령문에서는 가급적 줄이지 않은 완전한 말로 풀어쓴다.

국방 관계 법령에서의 사례와 정비안은 다음과 같다.

「군수품관리법」 §9
 物品運用官과 그 分任者 ⇒ 물품관리관과 그의 사무를 위임 받은 자

「군수품관리법」 §26
군원공여품(軍援供與品) ⇒ 군사원조에 따른 공여품

법령문에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을 대등하게 열거하면서 주로 서술어가 같은 경우 앞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그 대신 반점(.)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략되는 내용이 다소 길고 복잡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지 않고 모두 써 주도록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문장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정도는 아닌 반면, 문장이 끝나는 부분까지 읽지 않아도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 법문장이 쉬워지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군인사법」 §59의2 (영창의 절차 등)
 ④인권담당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④인권담당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4.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특히 ‘각 호의 1’은 오해의 소지도 있으므로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어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 | | |
|---------------------------------------|---|------------------------|
| 「통합방위법」 §10② 2 이상 의 시·도에 걸쳐 | ⇒ | 둘 이상 의 시·도에 걸쳐 |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또한, ‘내지(乃至)’는 ‘~에서 ~까지’의 의미 외에 ‘또는’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법령 해석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내지’는 예외 없이 ‘~부터 ~까지’로 바꾸어 쓰되, 뒤에 조사가 연결되면 ‘까지’ 뒤에 ‘~의 규정’을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도록 한다.

| | | |
|---|---|---|
| <u>제2항 내지 제4항</u> 에 따라 | ⇒ | <u>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u> 에 따라 |
| <u>제12조 내지 제14조</u> 를 준용한다 | ⇒ | <u>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u> 을 준용한다. |
| <u>제3항 내지 제5항</u> 및 제7항에 따라 | ⇒ | <u>제3항부터 제5항까지</u> 및 제7항에 따라 |
| <u>제5조 내지 제7조</u> , 제9조, 제12조 및 <u>제15조 내지 제20조</u> 를 준용한다. | ⇒ | <u>제5조부터 제7조까지</u> , 제9조, 제12조 및 <u>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u> 을 준용한다. |

4.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한편, ‘및 / 또는’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법령문에서는 매우 많이 쓰이면서 법령문을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법령문의 이해나 표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고려해서, ‘및 / 또는’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두 개의 사항만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와/과’, ‘나/이나/거나’ 등으로 연결한다.

| | | |
|--|---|------------------------------|
| 제1항 <u>및</u>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제1항 <u>과</u> 제2항에 따른 |
| 병과·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u>추천 또는</u> 제청하여야 한다. | ⇒ | <u>추천하거나</u> 제청하여야 |
| 軍需品の <u>亡失 또는</u> 毀損의 危險 | ⇒ | 군수품이 <u>망실(亡失)되거나</u> 훼손될 위험 |

*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바꾸어 쓴다.

| | | |
|-------------------|---|------------------|
| 군사시설의 관리 및 작전의 수행 | ⇒ | 군사시설의 관리와 작전의 수행 |
|-------------------|---|------------------|

* ‘및’으로 연결하면, ‘군사시설의’가 일단 ‘관리’와 ‘작전’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여, 원래의 의미인 ‘군사시설의 관리’와 ‘작전의 수행’을 연결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데에 보다 어려움이 있으므로 ‘와’로 바꾸어 쓴다.

| | | |
|----------------------------------|---|----------------------|
| 이 법에 따라 <u>선임 또는</u> 임명된 것으로 본다. | ⇒ | <u>선임되거나</u> 임명된 것으로 |
|----------------------------------|---|----------------------|

○ ‘및’과 ‘또는’을 사용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 위법 전역 <u>및(또는)</u> 제적 소청 | ⇒ | 위법 전역 소청 (○) 위법 전역 <u>과(나)</u> 제적 소청 (×) |
|--------------------------|---|---|

Ⅲ. 국방 관계 법률 용어의 순화

* 위의 경우 ‘과’나 ‘나’로 연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래의 의미인 ‘위법 전역에 대한 소청’과 ‘위법 제적에 대한 소청’으로 이해되지 않고, ‘위법 전역’과 ‘제적 소청’으로 나누어 이해되기 쉬우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나. 본딧말

본딧말은 줄여지기 전의 원래 말인데, 법령문에서 지금까지는 본딧말을 쓰도록 해 왔으나, 본딧말은 일상생활의 언어와는 달리 어색한 것이 많으므로 일상적인 언어 습관과 사용법에 맞게 준말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외 없이 준말로 바꾸는 경우 정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편리한 점이 있겠으나, ‘~첨부하여 제출하다’, ‘~위반하여 ~을 한 자’ 등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므로 ‘~하여’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본딧말을 준말로 바꾸어 쓰는 문제는 아직도 법령문에 적용하는 데에 의견이 완전히 통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에 법제처가 『정비 기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와 법제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말을 쓰는 것으로 어렵게 결정했지만,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도 정비안을 조만간 활용할 것을 고려해서, 준말을 쓰는 것을 유보하고 일단 본딧말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아니한 → 않은

확정되지 아니한

⇒ 확정되지 않은

- 아니하는 → 않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 해당되지 않는

- 아니 된다 → 안 된다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안 된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5. 군에 특유하거나 권위적·비민주적인 용어

국방 관계 법령의 경우 상하 계급 관계와 명령에 따른 업무 수행 등의 조직 및 업무상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법령문의 용어와 문장에서도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군대식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하(隸下)’ 또는 ‘예속하(隸屬下)’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휘관이나 우두머리의 지휘 아래 딸린’라는 의미로서, 권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이지만, 법령문에서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국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친숙한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국방 관계 법률 용어의 순화

「국군조직법」

제11조 (隸下部署의 장의 권한)

各軍의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編制 또는 作戰指揮·監督系統 上의 上級部隊 또는 上級機關의 長의 命을 받아 그 所屬部隊 또

⇒

제11조 (각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 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 (各軍部隊 및 機關의 設置)

① 各軍의 隸屬下에 필요한 部隊와 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제15조 (각군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 각군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군조직법」

제11조 (隸下部署의 장의 권한)

各軍의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編制 또는 作戰指揮·監督系統 上의 上級部隊 또는 上級機關의 長의 命을 받아 그 所屬部隊 또

⇒

제11조 (각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 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한편, 대부분의 법령에서 나오는 ‘과태료에 처한다’는,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인 것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는 가능한 경우 보다 덜 권위적인 용어로 고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법령문에서는 인원수의 단위로 ‘인(人)’을 써 왔으나, ‘인(人)’이 홀로 쓰일 때에는 ‘명’으로 바꾸어 쓴다. 다만, 합성어로서 2인승, 3인분, 5인 가족 등과 같이 이미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인(人)’을 함께 쓴다.

또, 법령문에서 명사나 명사구 등을 나열하는 경우 ‘기타(其他)’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인 ‘그 밖의’나 ‘그 밖에’로 가급적 고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타(其他)’도 함께 쓰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나 ‘그 밖에’는 의미에 맞게 구별해서 쓰도록 한다.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 | |
|--|---|--|
| 군의 인사 <u>기타</u>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명 | ⇒ | 군의 인사(人事)나 <u>그 밖의</u> 업무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명 |
| 군인, 군무원, <u>기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 군인, 군무원, <u>그 밖에</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u>기타</u>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 | ⇒ |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u>그 밖에</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
| 위원회의 구성·운영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천재지변 <u>기타</u>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 | 천재지변이나 <u>그 밖의</u>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 거짓이나 <u>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 ⇒ | 거짓이나 <u>그 밖의</u> 부정한 방법으로 |

다만,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기타’(기술료=수입금)는 ‘기타’를 그대로 쓴다.

| | | |
|---------------------|---|-----------|
| 수수료 등 <u>기타</u> 수입금 | ⇒ | <u>기타</u> |
|---------------------|---|-----------|

Ⅲ. 국방 관계 법률 용어의 순화

그 밖에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얻다’는 ‘승인(면허, 인가, 동의 등)을 받다’로, ‘○월’은 ‘○개월’로, ‘제○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는 ‘제○조에도 불구하고’로, 통일해서 쓰도록 한다.

IV.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법령 용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법령 용어만을 알기 쉽게 바꾼 정도로 법령문이 충분히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문은 법령 용어와 함께 문장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법령 용어와 함께 법령 문장을 알기 쉽게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령문은 그 구조는 물론 표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한문투 또는 일본어투 표현, 번역체 표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표현,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 문장 구조

가. 문장 성분의 호응(呼應)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군인사법」

제22조 (능률증진) ① 군인의 직무를 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 제22조 (능률 증진) ①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군인’과 ‘직무 수행’ 그리고 ‘능률’과 ‘발휘되고’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이므로 자연스러운 호응을 위해, ‘직무수행을’을 서술어 형태인 ‘직무를 수행할’로 바꾸고, ‘능률은’은 ‘능률이’로 바뀌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한다.

5) ‘문장(文章)’이란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로 원칙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IV.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정부의 기본의무)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

⇒

필요한 인적자원을 최적화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충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목적어로 쓰였으나, 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잘 호응하지 않는 예

| | | |
|---------|---|--------------------|
| ~에 같음하다 | ⇒ | ~을/를 같음하다 |
| ~에 위반하다 | ⇒ | ~을/를 위반하다, ~에 위반되다 |

나. 문장의 어순

문장의 어순은 표현의 번잡을 방지하고,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흐트리지 않도록 하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해 준다.

문장의 어순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주어, 부사구 또는 부사절,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다면,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부사구 또는 부사절이 나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어가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군인사법」
 제53조의2 (명예전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

⇒

제53조의2 (명예전역)
 ⑤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약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주어를 앞에 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 경우

「국군조직법」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③ 合同參謀本部의 職制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되, 各軍의 均衡發展과 合同作戰遂行을 保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각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합동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앞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어순을 조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

그리고 형용사구,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다면, 다음의 사례와 같이 이를 목적어, 부사구(형용사구를 부사구로 바꿈), 서술어의 순서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알기 쉽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6 조 (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 사물 주어와 피동문

1) 사물 주어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물 주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정관이 정하는’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정관으로 정하는’으로 바꾸고, ‘~의 조례가 정하는’은 ‘~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바꾼다.

2) 피동문의 제한

피동문인 법령문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주체가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도록’을 ‘국방부장관이 그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으로 고치는 것과 같이 그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쓰도록 한다.

2. 한문이나 일본어투 표현

가. 명사 연결체와 명사가 연결된 구절의 경우

여러 개의 명사가 조사 없이 나열되거나 어색한 명사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한문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를 그대로 옮겨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조사 없이 명사를 나열하면 문장을 딱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읽혀지지 않아서 의미 전달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조사(助詞)를 사용하거나 형용사 또는 동사로 바꾸어 표현하면 부드러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사를 넣을 것인지 품사를 바꾸어 표현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문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적절한 보조사를 사용한 사례

| | | |
|---|---|---|
| 「군사시설보호법」 §4⑤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달성을 위하여 | ⇒ |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
| 설비와 그 부품의 <u>호환성 제고</u> 를 위하여 | ⇒ | <u>호환성을 높이기</u> 위하여 |
| <u>집행유예선고</u> 를 받고 | ⇒ | <u>집행유예</u> 를 선고받고 |
| <u>보호구역 변경이 있는</u> 경우에는 | ⇒ | <u>보호구역이 변경된</u> 경우에는 |
| 피난장소 <u>도착시</u> 의 조치 | ⇒ | 피난 장소에 <u>도착했을 때</u> |
| 보호구역의 <u>효율적인 보전·이용</u> 및 <u>관리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 | <u>효율적으로 보전·</u> <u>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u> |
| 「군행행법」 §14 ② <u>다른 곳에서의 移送</u>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釋放할 수 있다. | ⇒ | ② <u>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것이</u> 불가 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

나. ~으로써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기 위해 ‘~(함)으로써’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한문 투의 표현으로 ‘~여(서)’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으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렇게 바꾸어서 도구나 수단·방법 등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하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함으로써’도 쓴다.

IV.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군인사법」

제26조 (최저복무기간)

④士官學校課程·육군3사관학교과정·士官候補生課程 또는 『병역법』 第57條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教育團士官候補生課程 履修중 外國將校養成學校에 留學함으로써 第11條第1項第5號의2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된 將校의 進級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依하여 國內將校養成課程을 같은 期에서 履修하였던 者와 均衡을 維持시킬 수 있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이수를 하던 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하여 제 11조 제 1항 제 5호의 2에 따라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다. 조사 ‘~에’가 잘못 쓰인 경우

법령문에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게 않게 사용된 예가 많은데, 이는 일본어 조사(助詞)를 직역한 데서 생긴 오류인 경우가 많다.

「군수품관리법」

第28條 (物品管理公務員의 責任)

②物品出納公務員과 그 分任者 또는 代理者는 그 保管에 속하는 軍需品을 亡失 또는 毀損한 경우에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怠만히 하지 아니한 證明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辨償의 責任을 진다.

⇒

②물품출납공무원과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나 대리자는 그가 보관하는 군수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怠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결원수에 부족하고 → 결원 수보다 적고
-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 → 적립금이 부족할 때
- 이 법에 규정한 → 이 법에서 규정한
- ○○법에 정한 → ○○법에서 정한
- 상대방에 도달한 → 상대방에게 도달한
- 소유자에 속한 → 소유자에게 속한

라. ~을 필요로 하는 / ~을 요하는

‘~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나 ‘~을 요하는’은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이므로 ‘~이(가) 필요한 (경우)’로 고쳐 쓴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 (대어)
 ①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
 기타 연합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마. ‘~에 있어(서)’, ‘~에 있어서의’

‘에 있어(서)’와 ‘에 있어서의’도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인데, 이는 ‘에서’,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에 따라’ 등으로 상황에 적절한 표현으로 고쳐 쓸 수 있다. ‘승진에 있어서’를 ‘승진에서’로,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할 때’로 바꾸는 것이 그 예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9조 ②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 **추진하는 과정에서**

IV.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징발법」

제21조 ②제1항에 있어서 補償基準이 되는 課稅標準은 大統領令으로 指定한다.

⇒

제21조 ②제1항에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9조 ②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 조사 ‘의’의 남용 및 오용

조사 ‘의’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본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결 관계 등을 잘 고려해서 생략하거나 적절하게 바꾸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에 변화가 없으면 ‘의’를 생략하거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考試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

고시(考試) 외의 능력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 그 군인의 생존하는 동안 → 그 군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 근무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 근무관계가 끝난 때부터
- ~ 이상의 것 → ~ 이상인 것

| | | |
|--|---|--|
| 군사시설의 보호에 | ⇒ | 군사시설 보호에 |
| 「군사기밀보호법」 §22②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 ⇒ |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
| 수탁자 중 법인의 경우에는 | ⇒ |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 ⇒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
| 「군인사법」 제52조 (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외에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는다. | ⇒ |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군수품관리법」 제14조 (대여) ③다만, 主要完成裝備 및 主要編制裝備의 初度補給修理附屬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다만, 주요 완성 장비와 주요 편제 장비 중 맨 처음 보급한 수리부속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p>또한, ‘에서의, 와의, 로의, 로서의, 로부터의, 에의’ 등과 같이 다른 조사에 겹쳐 쓰여 복합조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쳐 쓸 수 있다.</p> | | |
| ○○업무의 관리자로서의 능력 | ⇒ | ○○업무의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능력 |
| 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 ⇒ | 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
| ‘○○법(규정)에의 위반여부 | ⇒ | ‘○○법(규정) 위반 여부 |

3.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복잡한 표현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이 반복되어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나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거나 항(項) 등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구 등을 복잡하게 나열하여 한눈에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로 분리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모두 포함되는지 아니면 선택적인 것인지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사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규정)

| | | |
|---|---|--|
| <p>「군인사법」 제24조의3 (근속진급) <u>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임용 될 수 있다.</u> ※ 하사가 상사로도 바로 근속진급 임용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음</p> | ⇒ | 제24조의3 (근속진급) <u>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는 중사로 근속진급 임용될 수 있고,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상사로 근속진급될 수 있다.</u> |
|---|---|--|

위와 같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내용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게 되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지게 된다.

4.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법령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정의 규정은 그동안 ‘~(이)라 함은 ~을(를) 말한다’로 규정해 왔으나, 이는 불필요한 서술어를 중복하고 있는 표현이므로, ‘~(이)란 ~을(를) 말한다’로 고쳐 쓴다.

그리고 주격(主格)이 반복되거나 주어와 부사구의 연결이 어색한 경우가 많은데, 주격이 반복되면 어색하므로, ‘~(이)가 ~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이)가 ~ 손실을 입은 경우’로 바꾸며, 주어와 부사구에서 ‘~은(는) ~은(는)’은 중복으로 어색하므로, 문맥에 따라 잘 판단하여 문제가 없으면 ‘~은(는) ~ 하려면’으로 바꾼다.

- ~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을)를 하고자 하는 때(경우)에는
→ ~(을)를 하려면 (문맥에 따라 ‘~(을)를 하려는 때(경우)에는’으로 고칠 수도 있다.

「군수품관리법」
제13조 (불용의 결정 등)
② 國防部長官 이외의 國防官 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用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령이 正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하려면

‘~은 이를 ~하다’에서 ‘~은’은 사실상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이를’을 사용하면 목적어가 중복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를’을 생략하는 것이 좋다.

- ‘~은 이를 제외한다’ → ‘~은 제외한다’

「국군조직법」
第10條 (各軍參謀總長의 權限等)
② 各軍參謀總長은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各々 當該軍을 指揮・監督한다. 다만, 戰鬥을 主任務로 하는 作戰部隊에 대한 作戰指揮・監督은 이를 제외한다.

⇒

② 各軍參謀總長은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各々 해당 軍(軍)을 指揮・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감독은 제외한다.

IV.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그 밖에도 ‘구역 안 / 지역 안’ 등의 경우 ‘구역’이나 ‘지역’ 속에 이미 ‘정하여진 범위의 안’이라는 뜻이 포함되므로, ‘구역 / 지역’ 등으로 쓰고, ‘기간 동안’의 경우에도 그 의미가 중복되므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일정 기간’으로 쓴다.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법령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한자 용어로 경직되고 딱딱한 문장,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 권위적이면서 수요자 중심이 아닌 문장,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문장을 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미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자연스럽거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문을 여러 번 다듬어야 한다.

「군인사법」

第22條 (能率增進)

①軍人の 職務遂行을 爲한 能率は 充分히 發揮되고 增進되도록 圖謀하여야 한다.

제22조 (능률 증진)

①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은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흔히 ‘군부대에게’와 같이 사물에 대해 ‘~에게’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군부대에’로 자연스럽게 고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어떤 서열을 가진다’라고 하여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게 쓴 경우도 있는데, ‘서열이 몇 위이다’라 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

第18條 (合同參謀議長任命)

②合參議長은 在任期間中 軍 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 가진다.

제18조 (합동참모의장의 임명)

②합참의장은 재임기간 중 軍 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서열 1위가 된다.

그 밖에 자연스럽게 읽지 않은 표현을 고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군사용에 제공하거나 → 군사용으로 제공하거나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 퇴직자로 된 → 퇴직자가 된

한편, ‘응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과 연결될 때에는 ‘따라야 한다’로 고치되, ‘질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고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응하여야 한다’는 위와 같이 ‘따라야 한다’로 고치거나 그대로 둘 수도 있으나, 내용이 간단하고 명확한 경우 그 지시하는 내용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

「군인사법」 §20② 후단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앞의 내용이 많고 복잡한 경우로서 그 내용을 모두 써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과 연결되면서 ‘이에 따라야 한다’로 고쳤다.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진 또는 재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

지정하는 시일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받아야 한다.

IV.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중앙회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의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에 의한/의하여/의한다’는 ‘~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바꾸되, ‘의하여’가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하면 ‘~으로’ 등으로 바꾼다. 이 경우 ‘제○조의 규정’에서 ‘의 규정’은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그 밖에 ‘~로 하여금’이라는 표현은 ‘~에게, ~을/를, ~이/가’ 등을 써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꾼다.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에 관하여/대하여’를 남용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생략해서 문장을 간결하게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정부의 기본의무)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을 최적화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자연스럽게 읽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기타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 경주사업자에게 있다.

V.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의 개선

1. 법령문 띄어쓰기

그동안 법령문에서는 띄어쓰기를 어문 규정에 맞지 않게 쓴 경우가 많았고 특히 복합명사의 경우 가급적 띄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법령문에서는 물론 그 간결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명사를 모두 띄어 쓸 경우 산만해져 오히려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지나치게 붙여 써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눈에 구분되고 하나의 단위로 읽혀지는 것이 더 나은 경우인지를 잘 판단하여 붙여쓰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범문장도 원칙적으로는 일반 문장과 같이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부분)에 맞게 띄어쓰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글 맞춤법』 상 명사의 띄어쓰기 원칙

| | |
|--|----------------------|
| 제49항 ⇒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
| ㄱ | ㄴ |
|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 제50항 ⇒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
| ㄱ | ㄴ |
|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

V.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의 개선

가. 법령 제명(이름) 띄어쓰기

법령의 제명은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 등에서 띄어 쓰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단어별로 띄어 쓰되, 기본적으로 ‘법령 제명(이름) 띄어쓰기 기준’에 따르고, 법령 본문에서 법령 제명을 사용하는 경우 낫표(『』)를 붙여 구분했다.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나. 명사·명사구의 띄어쓰기

명사와 명사구의 띄어쓰기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되,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 용어는 당연히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준에 따랐다.

다만, ‘정의’나 ‘약칭’, 기관(위원회, 협회 등),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기금 등의 이름,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정하거나 축소하는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 등은 붙여 쓸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 쓴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법률 용어나 전문 용어로 볼 수 있는 명사구 중 띄어 써도 의미상 혼선을 주지 않는 용어(국세 체납처분, 소유 구조 등)
- ○○용(用) 다음(공사용 건축물)
-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 (앞말과 띄어 씀, 학교 ∨ 안, 자연공원 ∨ 밖 등)

- 의존명사 ‘간’은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씀(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 부모와 자식∨간 등)
 - * 예외 : 한 단어로 굳어진 예(고부간, 국제간, 다소간, 다자간, 동기간, 부녀간, 부부간, 부자간, 인척간, 조만간, 좌우간, 천지간, 피차간 등)
- 의존명사 ‘중, 시, 내, 외’ (앞말과 띄어 씀, 관계 전문가∨중, 계획 수립∨시, 기일∨내, 규정된 사항∨외 등)
-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앞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앞말과 띄어 씀,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다. 접미사의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할 때에 명사나 명사구뿐만 아니라 접미사의 띄어쓰기도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를 잘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上) (앞말에 붙여 씀)
 -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관계상/미관상/외관상/절차상)
 -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터넷상/전설상/통신상)
 -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국민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V.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의 개선

- 하(下) (앞말에 붙여 씀)
 -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식민 지하/원칙하/지도하/지배하)
 -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 조건에서는
특히 곤란한 자

- 별(別) (앞말에 붙여 씀)
 - ‘그것에 따른’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능력별/성별/월별/직업별/학년별)
- 당(當) (앞말에 붙여 씀)
 -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마리당/시간당 등)
- 간(間) (앞말에 붙여 씀)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틀간/한 달간/삼십 일간)
 - 다만 ‘동안’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바꾼다. (‘이틀 동안’ 등)

라. 그 밖의 용어와 기호

‘게을리하다’의 경우 사전에는 없지만 붙여 쓰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는 하나의 낱말로 붙여 쓴다. 또한, 문장부호 가운데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쓴다.

한편, 각 항을 나타내는 ①, ② 등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 쓴다.

제 2 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 ⇒ ①V이 법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편, 법령문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도 띄어쓰기가 틀리는 것이 종종 있는데, ‘지체 없이’를 붙여 쓰거나 ‘아니 된다’를 붙여 쓰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2. 문장 부호

여러 가지 문장 부호 가운데 어문 규정에 맞지 않게 쓰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가운뎃점(·)과 반점(.)의 적절한 사용은 법령문을 간결하게 하여 알기 쉽게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가. 가운뎃점(·)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열거하는 경우에는 반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A, B·C, D 및/또는 E’의 예처럼 입법기술상 반점과 함께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의 예: 지정·공고, 조사·연구, 조사·심의, 지도·감독, 위법·부당, 기록·유지, 설치·운영, 유지·관리, 부과·징수 등]

○ 가운뎃점을 와/과(나/이나)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

- 두 단어 사이의 가운뎃점

국방부장관·각군참모총장이 ⇒ 국방부장관이나 각군참모총장이

V.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의 개선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관리에 필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 추·운영할 수 있다 ⇒ 구 축하여 운영할

- 세 개 이상 단어나 구절 사이의 가운뎃점

A · B 및/또는 C ⇒

- A, B 및/또는 C
- A나 B 또는 C
- A와 B 및 C
- A · B 및/또는 C

*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 ⇒ ‘A나 B 또는 C’로 열거하거나 각 호 등으로 분리해서 명확히 함

○ 가운뎃점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

- 구나 절을 연결하는 경우

「군수품관리법」 §14① 등
 국방관서의 장·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 ⇒ 국방관서의 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

나. 반점(,)

반점(,)은 주로 명사 또는 어구(語句)를 열거하거나 절(節)과 절 사이에 쓴다. 일반적으로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아닌 명사 사이에서는 반점을 써야 하나 가운뎃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반점을 쓴다.

VI.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의 개선

1. 인용

‘인용(引用)’은 다른 규정을 어떤 규정에 가져오는 것인데, 조문 번호만 가져오게 되면, 그 조문을 다시 찾아 가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을 함께 가져 와서 써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문 제목을 인용하면 되지만, 조문 제목이 그 조문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조문의 내용과 조문 제목을 확인한 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이나 호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문 제목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항이나 호의 내용에 맞는 핵심적인 제목을 만들어 인용할 필요가 있다.

인용 시 핵심적이거나 주요한 사항을 함께 써 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징발법』

第8條 (遠隔地徵發等) ①徵發官은 事態가 急迫하여 徵發令狀을 발행할 余裕가 없거나 遠隔地 이어서 徵發令狀이 필요한 期日 內에 到達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 하고 電信으로 徵發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멀리 떨어진 곳 이어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제7조의 징발 집행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신(電信)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징발법』

第28條 (罰則) ①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急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

제28조 (벌칙) ① **제10조에 따른 징발 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장 변경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I.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의 개선

『**군무원인사법**』
제27조 (당연퇴직) 군무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준 용

‘준용(準用)’은 같은 종류의 규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법 기술로서 원래의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준용을 할 때에는 주로 조문 번호만 인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은 바꾸어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준용 규정은 법령을 법령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모두 규정하기에는 조문 수 등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가급적 준용 규정으로 하지 말고 내용을 수정하여 모두 써 주는 방향으로 조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행형법**』
제24조 (보상심의회)
④第3項의 규정에 의한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에 따라 징발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체계 등 조정

* 제4항만 보아서는 무엇을 준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준용보다는 가급적 그 내용을 모두 규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경우가 많다.

특히 단순히 글자 수나 조문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준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준용되는 내용을 풀어 써 줌으로써 준용 대상 규정을 다시 찾아가 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징발법』
 제19조 (보상)
 ④ 권리를 徵發한 때에는 第2項에 準한다. ⇒ ④ 권리를 징발한 경우에는 제2항의 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징발에 준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 제4항만 보아도 제2항의 어떤 사항에 준하는지 개요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군행형법』
 제 6 조 (신입자의 수용등) ⇒ 제 6 조 (신입자의 수용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서 적당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교도소나 미결수용실에서 적당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와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병원 이송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

3.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체계 등 조정

종래에는 법령을 제정할 때에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복잡한 내용도 한 문장으로 써서 읽기도 어려운 문장을 많이 써 온 것이

VI.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의 개선

사실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우로서 그 내용을 별개로 나눌 수 있는 법문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條)나 항(項)으로 나누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나 절을 여러 개 나열하여 복잡하고 알기 어렵게 된 법령문은 각 호나 각 목 등으로 구분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연결 관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연결관계란 나열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선택적으로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호’ 등으로 구분해서 규정하여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표현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문장의 간결화와 명확화는 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용어와 문장의 정비 외에도 체계 등을 정비하는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현행 | 정비안 |
|---|---|
| <p>제14조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p> | <p>제14조 (국방 인력 운영 구조의 개선·발전) 국가는 미래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방인력의 운영 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편 2.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3. 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

3.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체계 등 조정

* 현행 규정에서는 국방 인력의 운영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했다.

○ 『국군조직법』 : 항 분리 후 체계 조정

| 현행 | 정비안 |
|---|--|
| <p>第3條 (各軍의 任務等) ①陸軍은 地上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 裝備되며 필요한 教育· 訓練을 한다.</p> <p>②海軍은 海上作戰 및 상륙작전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 裝備되며 필요한 教育· 訓練을 한다.</p> <p>③ 삭제</p> <p>④空軍은 航空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 裝備되며 필요한 教育· 訓練을 한다.</p> | <p>제3조 (각군의 임무 등) ①각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임무를 수행한다.</p> <p>1. 육군: 지상작전</p> <p>2. 해군: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p> <p>3. 공군: 항공작전</p> <p>②각군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한다.</p> |

*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된 사항을 제1항에서 하나로 규정한 후 각군별로 다른 사항은 각 호로 분리하여 규정했다.

○ 열거 사항의 각 호 분리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사례

| 현행 | 정비안 |
|---|--|
| <p>제14조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 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 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p> | <p>제14조 (국방 인력 운영 구조의 개선· 발전) 국가는 미래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p> |

VI. 입법 기술에 관한 사항의 개선

| 현행 | 정비안 |
|---|---|
| <p><u>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u></p> | <p><u>하여 국방인력의 운영 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 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편</u> 2. <u>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u> 3. <u>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u> |

* 구체적으로는 연결 관계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국방인력 운영 구조를 개선·발전시키는 목적 등이 정비안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통합방위법」 사례

| 현행 | 정비안 |
|--|---|
| <p><u>第 6 條 (保護區域 등의 標識) 國防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 또는 民統線을 설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護區域 또는 民統線의 설정사실, 관할부대장등,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處罰의 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民統線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이 官報에 告示함으로써 이에 같음할 수 있다.</u></p> | <p><u>제 6 조 (보호구역 등의 표지)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통선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표지의 설치를 같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 사실</u> 2. <u>관할부대장등</u> 3. <u>제한 또는 금지 사항</u> 4. <u>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u> 5. <u>그 밖에 필요한 사항</u> |

3.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체계 등 조정

* 정비안에서는 각 호의 열거 사항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와 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이 있다.

- 「군행형법」 사례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48條 (假釋放의 審査) ①審査委員會가 假釋放의 適格與否를 審査함에 있어서는 受刑者의 年齡, 罪名, 犯罪의 動機, 刑期, 受刑중의 行實, 假釋放후의 生計手段과 生活環境, 再犯의 危險性 유무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p> | <p>제48조 (가석방의 심사) ①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다음 각 호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 2. 죄명 3. 범죄의 동기 4. 형기(刑期) 5. 수형 중의 행실 6. 가석방 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7. 재범의 위험성 유무 |

* 현행에서는 고려 사항이 반점으로만 구분되어 열거되고 있어서 한눈에 전체를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다.

VII. 국방 관계 법률의 정비안 개요

1. 정비 개요

국방 관계 법률의 경우 다른 분야의 법률과 비교할 때 전부개정되거나 대폭 개정되는 비율이 적어, 한자로 되어 있는 법률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간단한 표현부터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

따라서 법령의 용어와 문장이 어렵고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아 순화가 필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정비 원칙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르되,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없는 사항도 정비했다.

그러나 알기 쉽게 하면서도 법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확인·점검했으며,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하였다.

결국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되, 뜻풀이 방식의 정비로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법적 간결성과 함축성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유의했다.

3. 정비 법률 개요

여기서 정비대상으로 한 법률은 국방 관계 법률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로서 한자로 되어 있는 법률과 비교적 일반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로 했다. 구체적인 정비 대상 법률은 국방 관련 주요 5개 분야의 15개 법률로서 다음과 같으며, 그 선정 기준은 중요성, 한자 법률 여부, 전부개정 빈도 등이다.

VII. 국방 관계 법률의 정비안 개요

- 통칙·조직 관계 법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군조직법」

- 인사 및 연금·기금 관계 법률
 - 「군인사법」
 - 「군무원인사법」
 - 「군인연금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사 시설·보안·기밀 관계 법률
 - 「군수품관리법」
 - 「군사시설 보호법」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보호법」

- 비상·방위 관계 법률
 - 「계엄법」
 - 「징발법」
 - 「통합방위법」

- 군사법 관계 법률
 - 「군형법」
 - 「군행형법」

VIII. 맺는말

국방부 관계 법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자로 된 법률의 비율이 높아서 읽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 등 주요 법률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고치다보니, 용어와 문장, 체계 등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나 어문 규정에도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법제처가 2006년에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2007년에 준비하고 있는 정비 계획⁶⁾을 보면, 국방부의 경우 아직도 알기 쉽게 법령을 만드는 작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점이 없지 않다.

즉 2007년에 법제처가 각 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한 정비 계획을 보면, 국방부의 경우 내용 개정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5건⁷⁾ 외에, 알기 쉽게 만들 목적만으로 추진하는 법률⁸⁾은 없다.

따라서 이번의 국방 관계 용어와 문장 개선 작업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법제처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방 관계 기본적인 법률의 대폭 정비를 추진했으면 한다.

국방 조직과 인사 등의 개편, 국방 운영 체제의 개선과 병영 문화의 발전 등 기본적인 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담는 그릇인 법령이 투명하고 알기 쉽게 바뀔으로써 국방 업무의 선진화·투명화·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법제처가 2007년 3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달 3월 16일에 관보에 고시한 정부입법계획에 그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7) 『군인보수법』, 『군 책임운영기관법』, 『군인복무기본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며, 2007년에 내용 개정이 포함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률 정비안은 계획상 각 부처 것을 모두 합치면 165건이다.

8) 2007년의 경우 법제처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각 부처로부터 정비 계획을 받은 결과, 85건의 법률(최종적으로 16개 부처·기관의 77건의 법률을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은 각 부처의 협조하에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주도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규 조문 대비표)

- 통칙·조직 관계 법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군조직법」
- 인사 및 연금·기금 관계 법률
 - 「군인사법」
 - 「군무원인사법」
 - 「군인연금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사 시설·보안·기밀 관계 법률
 - 「군수품관리법」
 - 「군사시설 보호법」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보호법」
- 비상·방위 관계 법률
 - 「계엄법」
 - 「징발법」
 - 「통합방위법」
- 군사법 관계 법률
 - 「군형법」
 - 「군행형법」

【통칙 · 조직 관계 법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현행 · 정비안 대비표

[제정 2006. 12. 28. 법률 제8097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개혁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u>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u>으로써 <u>선진 정예 강군</u>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u>기여</u>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u>문민기반의 확대</u>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u>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u>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u>부합하는</u>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p>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 |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개혁에 관한 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안보 환경 및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u>국방 운영의 체제, 군의 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u>으로써 <u>선진 정예(精銳) 강군(強軍)</u>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기본 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u>이바지</u>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 정책 <u>추진에서의 문민(文民)기반의 확대</u> 2. 미래전(未來戰)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u>강화와 육군·해군·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u> 3. 군 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 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u>맞는</u>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p>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개혁”이라 <u>한</u> 정보·과학 기술을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p> <p>2.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p> <p>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해군·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p> <p>4.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p> <p>5. “전력체계”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를 말한다.</p> <p>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p> <p>제 4 조 (정부의 기본의무) ①정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p> | <p>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p> <p>2. “국방운영 체제”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p> <p>3. “군 구조”란 국방 및 군사 임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 조직 및 구성 관계로서 육군·해군·공군이 서로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p> <p>4. “문민 기반의 확대”란 국방부가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 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 정책의 결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p> <p>5. “전력체계(戰力體系)”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 인력, 군사 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 체계 및 기반 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를 말한다.</p> <p>6. “합동성”이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 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戰力)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p> <p>제 4 조 (정부의 기본 의무) ① 정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반과 환경을 조성(造成)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을 최적화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국방개혁의 추진</p> <p>제 5 조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u>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 · 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 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p>③국방부장관은 <u>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 · 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u>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6 조 (국방개혁위원회) <u>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u>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u>소요되는 예산</u>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국방개혁의 추진</p> <p>제 5 조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사항</u> 등에 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방운영 체제의 혁신</u> 2. <u>군 구조의 개편</u> 3. <u>병영문화의 개선</u> <p>②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 · 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 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p>③ 국방부장관은 <u>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시점과 만료 시점에 한미동맹의 발전 및 남북 군사관계의 변화 움직임 등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을 분석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④ 제3항에 따른 <u>국방개혁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6 조 (국방개혁위원회) <u>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u>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 기본계획 및 국방개혁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u>드는 예산에 관</u>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에 관한 사항</p> <p>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u>제·개정</u>에 관한 사항</p> <p>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u>부의하는</u> 사항</p> <p>제 8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2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u>필요한 때에는</u>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9 조 (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u>대통령 및</u>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u>제반사항</u>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u>추진함에 있어서</u>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u>국무회의의 또는</u> 국가안전보장회의에 <u>이를 보고할</u> 수 있다.</p> <p>제 3 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p> <p>제10조 (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u>상호 보완</u>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p> <p>제11조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u>군인이 아</u></p> | <p>한 사항</p> <p>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u>제정·개정</u>에 관한 사항</p> <p>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u>회의에 부치는</u> 사항</p> <p>제 8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u>필요하면</u>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9 조 (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u>대통령과</u>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u>모든 사항</u>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u>추진하는 과정에서</u>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u>국무회의나</u> 국가안전보장회의에 <u>그 사항을 보고할</u> 수 있다.</p> <p>제 3 장 국방운영 체제의 선진화</p> <p>제10조 (문민 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 구조는 국가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 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u>서로 보완</u>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p> <p>제11조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u>따른</u>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비율에 따라 <u>현역 군인이 아닌</u></p> |

| 현 행 | 정 비 안 |
|---|---|
| <p>닌 공무원을 연도별·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p> <p>제13조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p> <p>②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u>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용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u></p> <p>제15조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p> <p>②국방부장관은 <u>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u></p> <p>③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u>유급지원병제</u>를 시행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u>규정에 따른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u>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6조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p> | <p>공무원을 연도별·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p> <p>제13조 (민간 인력의 활용 확대) ① 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p> <p>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직급별로 민간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국방 인력 운영 구조의 개선·발전) <u>국가는 미래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방인력의 운영 구조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 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편</u> 2. <u>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u> 3. <u>병역자원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u> <p>제15조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향상)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u>전문분야나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 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隔地)·오지(奧地) 또는 도서(島嶼) 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u></p> <p>③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u>유급지원병제(有給志願兵制)</u>를 시행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u>따른 유급지원병제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u>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6조 (여군 인력 활용의 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u>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u>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p> <p>②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군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민간 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u>규정에 따른 전투군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및 업무위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8조 (장교의 진급) ①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p> <p>②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u>자질과 능력 및 군 기여도</u>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 과정별 인력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진급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9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u>합동성 및 전문성</u>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부대의 장교 직위 중 <u>합동성·전문성</u>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p> | <p>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u>전력(戰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u>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p> <p>1. 장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7까지</p> <p>2. 부사관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5까지</p> <p>② 여군 인력의 활용 과정에서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을 <u>확대하기</u>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군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민간 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u>따른 전투군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과 업무위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8조 (장교의 진급) ① 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 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u>자질 및 능력과 군에 대한 기여도</u>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 과정별 인력 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진급 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9조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u>합동성 및 전문성</u>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합동 부대의 장교 직위 중 <u>합동성·전문성</u>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p> |

| 현행 | 정비안 |
|--|--|
| <p>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을 받아 합동직위로 지정한다.</p> <p>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u>우선적으로 합동직위에</u>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p> <p>제20조 (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u>추천 또는 제청</u>하여야 한다.</p> <p>제21조 (중장 이상 장교의 보직관리) 중장 <u>이상</u> 장관급 장교는 정원의 한도 안에서 보직되어야 하고, <u>정원으로 정한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보직 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에서 전역된다.</u></p> <p>제 4 장 <u>군구조·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u></p> <p>제22조 (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u>양적·재래식</u>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u>정보 수집·관리</u>,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 위주의 질적·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p> <p>제23조 (군구조의 개선)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u>군상부</u>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발전시켜야 한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u>합동작전능력</u> 및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체계 등을 개</p> | <p>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요청을 받아 합동직위로 지정한다.</p> <p>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교에 대하여 <u>합동직위에 우선적으로</u> 근무할 수 있는 합동특기 등의 전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p> <p>제20조 (<u>각군 참모총장</u>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u>추천하거나 제청</u>하여야 한다.</p> <p>제21조 (중장 이상 장교의 보직 관리) ① 중장 <u>이상의</u> 장관급(將官級) 장교는 정원의 한도 안에서 보직되어야 한다. ②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는 정원으로 정한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u>보직 기간이 끝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역에서 전역(轉役)된다.</u></p> <p>제 4 장 <u>군 구조, 전력 체계와 각 군의 균형 발전</u></p> <p>제22조 (발전방향) 국가는 병력 규모 위주의 <u>양적이고 재래식인</u>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u>정보의</u> 수집·<u>관리와</u> 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 위주의 질적·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p> <p>제23조 (군 구조의 개선) 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u>군의</u>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보강·발전시켜야 한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u>합동작전 능력</u>과 이와 관련된 합동군사 교육 체계 등을 개</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발·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p> <p>④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u>중간 지휘체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u></p> <p>제24조 (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p> <p>제25조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p> <p>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u>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u>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④국가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고 <u>생활안정대책</u>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p>개발·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지원분야에서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하여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p> <p>④ 각군 참모총장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되 합동성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u>중간 지휘 부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여 단위부대의 전투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u></p> <p>제24조 (무기 및 장비 분야 전력체계의 발전)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u>전력화(戰力化)</u>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 개념 및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p> <p>제25조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p> <p>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 수준을 정할 때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u> 하고, 그 결과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한다.</p> <p>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 평가</p> <p>2.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p> <p>3. 남북간 평화 상태의 진전 상황</p> <p>③ 제1항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④ 국가는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고 <u>생활안정</u>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p> <p>②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하여야 한다.</p> <p>③ 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①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항만·공항·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①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 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p>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와 각 군별 구성 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 (적정 간부 비율의 유지) ①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 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p> <p>② 예비전력 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連動)하여 개편·조정하여야 한다.</p> <p>③ 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와 예비전력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 임무의 전환) ①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항만·공항·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 임무는 치안기관이나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계 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 (합동참모본부의 균형 편성 등) ①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 인력은 균형 편성과 순환 보직을 통하여 합동성과 통합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②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u>1인</u>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p> <p>③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u>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u>, 육군은 <u>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u>의 비율로 보하며,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p> <p>①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u>합동부대</u> 지휘관은 <u>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u>, 육군은 <u>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u>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발전</p> <p>제31조 (발전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p> <p>제32조 (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①국방부장관은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u>제반</u> 환경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p> <p>②국방부장관은 장병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u>제반</u>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p>②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u>1명</u>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한다.</p> <p>③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u>해군과 공군은 같은 비율로 보</u>하고, 육군은 <u>해군이나 공군의 2배수</u>의 비율로 보하며,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 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필수직위 및 공통직위의 지정과 공통직위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 편성)</p> <p>①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과 <u>합동부대</u>의 지휘관은 <u>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u> 하여 <u>순환보직</u>하고, 육군은 <u>해군이나 공군의 3배수</u>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발전</p> <p>제31조 (발전 방향)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p> <p>제32조 (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① 국방부장관은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u>모든</u> 환경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u>모든</u>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 현 행 | 정 비 안 |
|---|--|
| <p>③국방부장관은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장병 기본권의 <u>보장</u>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 <p>③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장병 기본권의 <u>보장과</u>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

○ 『國軍組織法』 현행 · 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1999. 1. 21. 법률 제5645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國軍組織法</u></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國防의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國軍의 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國軍의 組織) ①國軍은 陸軍·海軍 및 空軍(이하 “各軍”이라 한다)으로 組織하며, 海軍에 海兵隊를 둔다.</p> <p>②各軍의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作戰部隊에 대한 作戰指揮·監督과 合同 및 聯合作戰의 수행을 위하여 國防部에 合同參謀本部를 둔다.</p> <p>③軍事上 필요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 指揮·監督下에 合同部隊와 기타 필요한 機關을 둘 수 있다.</p> <p>第3條 (各軍의 任務등) ①陸軍은 地上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裝備되며 필요한 教育·訓練을 한다.</p> <p>②海軍은 海上作戰 및 상륙작전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裝備되며 필요한 教育·訓練을 한다.</p> <p>③ 삭제</p> <p>④空軍은 航空作戰을 主任務로 하고 이를 위하여 編成·裝備되며 필요한 教育·訓練을 한다.</p> <p>第4條 (軍人의 身分등) ①“軍人”이라 함은 戰時와 平時를 莫論하고 軍에 服務하는 者를 말한다.</p> <p>②軍人의 人事·兵役服務 및 身分에 관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제 5 조 (군기) ①국군은 軍기를 사용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u>국군조직법</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國防의 義務를 수행하는 國軍의 조직과 편성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 2 조 (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組織한다. 이 경우 해군에는 海병대를 둔다.</p> <p>② 각군에서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하여 작전을 지휘·감독하고 합동 및 연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p> <p>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p> <p>제 3 조 (각군의 임무 등) ① 각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임무를 수행한다.</p> <p>1. 육군: 지상작전</p> <p>2. 해군: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p> <p>3. 공군: 항공작전</p> <p>② 각군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p> <p>제 4 조 (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戰時)와 평시(平時)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p> <p>② 군인의 인사(人事), 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 5 조 (군기) ① 국군은 軍旗(軍旗)를 사용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軍事權限</p> <p>第6條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 大統領은 憲法·이 법 및 기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p> <p>第7條 삭제</p> <p>第8條 (國防部長官의 權限) 國防部長官은 大統領의 命을 받아 軍事에 관한 사항을 掌理하고 合同參謀議長과 各軍參謀總長을 指揮·監督한다.</p> <p>第9條 (合同參謀議長의 權限) ①合同參謀本部에 合同參謀議長을 둔다. ②合同參謀議長은 軍令에 관하여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各軍의 作戰部隊를 作戰指揮·監督하고, 合同作戰의 수행을 위하여 設置된 合同部隊를 指揮·監督한다. 다만, 平時 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部隊移動등 主要 軍事事項은 國防部長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各軍의 作戰部隊 및 合同部隊의 범위와 作戰指揮·監督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0條 (各軍參謀總長의 權限등) ①陸軍에 陸軍參謀總長, 海軍에 海軍參謀總長, 空軍에 空軍參謀總長을 둔다.</p> <p>②各軍參謀總長은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각각 當該軍을 指揮·監督한다. 다만,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作戰部隊에 대한 作戰指揮·監督은 이를 제외한다.</p> <p>③海兵隊의 指揮·監督에 관한 海軍參謀總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法令이 정</p> | <p>② 군기의 종류·규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군사에 관한 권한</p> <p>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統帥)한다.</p> <p>제7조 삭제</p> <p>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管掌)하고 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p> <p>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평시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령(軍令)에 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임무 2.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임무 3.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임무 <p>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을 두고, 해군에 해군참모총장을 두며,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p> <p>②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軍)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감독은 제외한다.</p> <p>③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이</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하는 바에 <u>의하여</u> 第14條第4項의 海兵隊司令官의 權限으로 할 수 있다.</p> <p>第11條 (隸下部署의 長의 權限) 各軍의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編制 또는 作戰指揮·監督系統上의 上級部隊 또는 上級機關의 長의 命을 받아 그 所屬部隊 또는 所管機關을 指揮·監督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3 章 合同參謀本部</p> <p>第12條 (合同參謀本部) ①合同參謀本部에 合同參謀議長외에 軍을 달리하는 <u>3人</u> 이내의 合同參謀次長과 필요한 參謀部署를 둔다.</p> <p>②合同參謀次長은 合同參謀議長을 補佐하며, 合同參謀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序列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p> <p>③合同參謀本부의 職制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되, 各軍의 均衡發展과 合同作戰遂行을 保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第13條 (合同參謀會議) ①軍令에 관하여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主要 軍事事項 기타 法令이 定하는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合同參謀本部에 合同參謀會議을 둔다.</p> <p>②合同參謀會議는 合同參謀議長과 各軍參謀總長으로 구성하며, 合同參謀議長이 그 議長이 된다. 다만, 海兵隊등 特定作戰部隊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할 때는 당해 作戰司令官을 陪席시킬 수 있다.</p> <p>③合同參謀會議는 月 1회 이상 定例化하며, 合同參謀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長官이 定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4 章 陸軍·海軍·空軍</p> <p>第14條 (各軍本부의 設置등) ①陸軍에 陸軍本部, 海軍에 海軍本部, 空軍에 空軍本부를 둔다.</p> | <p>정하는 바에 <u>따라</u> 제14조제4항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p> <p>제11조 (각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 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합동참모본부</p> <p>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군(軍)을 달리하는 <u>3명</u>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p> <p>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각군의 <u>군형</u> 있는 발전과 합동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u>군사 사항과 그 밖에</u>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p> <p>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u>해당</u> 작전사령관을 <u>배석(陪席)</u>시킬 수 있다.</p> <p>③ 합동참모회의는 <u>정례적으로 매월 1회 이상</u> 개최하되,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육군·해군·공군</p> <p>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를 두고, 해군에 <u>해군본부</u>를 두며,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②各軍本部에 參謀總長외에 參謀次長 1인과 필요한 參謀部署를 둔다.</p> <p>③各軍參謀次長은 당해 軍參謀總長을 補佐하며 參謀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p> <p>④海軍隸下에 上陸作戰을 主任務로 하는 海兵隊司令部를 두며, 海兵隊司令部에 海兵隊司令官과 필요한 參謀部署를 둔다.</p> <p>⑤各軍本部 및 海兵隊司令부의 職制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5條 (各軍部隊 및 機關의 設置) ①各軍의 隸屬下에 필요한 部隊와 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기타</p> <p>第16條 (軍務員) ①國軍에 軍人 以外에 軍務員을 둔다.</p> <p>②第1項의 軍務員의 資格·任免·服務 기타 身分에 관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第17條 (公表의 保留) 이 법에 의하여 制定되는 命令으로서 軍機密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公表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p>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p> <p>③ 각군참모차장은 해당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p> <p>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 (각군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설치)</p> <p>① 각군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그 밖의 사항</p> <p>제16조 (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軍務員)을 둔다.</p> <p>② 제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와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인사 및 연금·기금 관계 법률】

○ 「군인사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584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군인사법</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軍人の 責任 및 職務의 重要性和 身分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任用·服務·敎育訓練·士氣·福祉 및 身分保障등에 관하여 國家公務員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適用範圍) 이 법은 다음 各號의 者에게 適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准士官·副士官 및 兵 2. 士官生徒·士官候補生 및 副士官候補生 3. 召集되어 軍에 服務하는 豫備役 및 補充役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階級 및 分科</p> <p>第3條 (階級) ①將校는 將官, 領官 및 尉官으로 區分하고 將官은 元帥, 大將, 中將, 少將 및 准將으로, 領官은 大領, 中領 및 少領으로, 尉官은 大尉, 中尉 및 少尉로 한다.</p> <p>②准士官은 准尉로 한다.</p> <p>③副士官은 元士, 上士, 中士 및 下士로 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군인사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士氣)·복지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現役)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계급 및 분과</p> <p>제3조 (계급) ① 장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관(將官): 원수(元帥), 대장(大將), 중장(中將), 소장(少將) 및 준장(准將) 2. 영관(領官): 대령(大領), 중령(中領) 및 소령(少領) 3. 위관(尉官): 대위(大尉), 중위(中尉) 및 소위(少尉) <p>② 준사관(准士官)은 준위(准尉)로 한다.</p> <p>③ 부사관(副士官)은 원사(元士), 상사(上士), 중사(中士) 및 하사(下士)로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④兵은 兵長, 上等兵, 一等兵 및 二等兵으로 한다.</p> <p>第4條 (序列) 軍人の 序列에 關하여는 第3條에 規定된 階級の 順位에 依한다. 其他 序列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5條 (分科) ①軍人の 兵科는 基本兵科와 特殊兵科로 大別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p> <p>1. 基本兵科</p> <p>(1) 陸軍 步兵科, 機甲科, 砲兵科, 防空科, 情報科, 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化學科, 兵器科, 兵站科, 輸送科, 副官科, 憲兵科·經理科 및 政訓科</p> <p>(2) 海軍 航海科·機關科·航空科·情報通信科·兵器科·補給科·施設科·造艦科·經理科·政訓科·情報科·憲兵科·步兵科·砲兵科·機甲科·工兵科·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海兵經理科·海兵政訓科 및 海兵憲兵科</p> <p>(3) 空軍 操縱科·航空統制科·防空砲兵科·情報科·航空武器整備科·情報通信科·氣象科·施設科·補給輸送科·管理科·人事行政科·政訓科·憲兵科 및 教育科</p> <p>(4) 삭제</p> <p>2. 特殊兵科</p> <p>(1) 陸軍 醫務科(軍醫科, 齒醫科, 獸醫科, 醫政科, 看護科의 5科를 말한다. 以下 같다), 法務科 및 軍宗科</p> <p>(2) 해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p> <p>(3) 空軍 醫務科, 法務科 및 軍宗科</p> <p>(4) 削除</p> <p>②國防部長官은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 있어서 必要할 때에는 基本兵科</p> | <p>④ 병(兵)은 병장(兵長), 상등병(上等兵), 일등병(一等兵) 및 이등병(二等兵)으로 한다.</p> <p>제 4 조 (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서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5 조 (분과) ① 군인의 병과(兵科)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기본병과</p> <p>가.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경리과 및 정훈과</p> <p>나. 해군 항해과·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보병과·포병과·기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해병경리과·해병정훈과 및 해병헌병과</p> <p>다. 공군 조종과·항공통제과·방공포병과·정보과·항공무기정비과·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보급수송과·관리과·인사행정과·정훈과·헌병과 및 교육과</p> <p>라. 삭제</p> <p>2. 특수병과</p> <p>가. 육군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의 5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무과 및 군종과</p> <p>나. 해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p> <p>다. 공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p> <p>라. 삭제</p> <p>②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p> |

| 현행 | 정비안 |
|--|---|
| <p>의 一部를 新設, 廢止 또는 併合할 수 있다.</p> <p>第 5 條의 2 (轉軍) ①國防部長官은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 또는 軍組織의 改編으로 軍間의 人力調整이 필요할 때에는 所屬軍을 변경(이하 “轉軍”이라 한다)하여 服務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軍되어 服務하는 者는 轉軍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 處遇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義務服務期間은 轉軍되기 전의 義務服務期間으로 한다. 다만, 轉軍되기 전의 義務服務期間이 轉軍된 軍의 義務服務期間보다 長期인 경우에는 轉軍된 軍의 義務服務期間으로 한다.</p> | <p>과의 일부를 신설,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p> <p>제 5 조의 2 [전군(轉軍)]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나 군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의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군을 변경(이하 “전군”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자는 전군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p> |
| <p>第 3 章 服務</p> | <p>제 3 장 복무</p> |
| <p>第 6 條 (服務의 區分) ①將校는 長期服務와 短期服務로 區分하여 服務한다.</p> <p>②장기복무장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과 동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장교 중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자 4.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 <p>③短期服務將校는 육군3사관학교 또는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 士官候補生 및 『병역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教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와 第2項의 長期服務將校에 屬하지 아니하는 者로 한다.</p> | <p>제 6 조 (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p> <p>② 장기복무장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장교 중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자 4. 공군의 조종병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 <p>③ 단기복무장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2. 사관후보생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④短期服務將校로서 長期服務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願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銓衡을 거쳐야 한다.</p> <p>⑤副士官은 長期服務와 短期服務로 區分하여 服務한다.</p> <p>⑥長期服務副士官은 軍의 教育機關에서 高等學校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者 및 志願에 依하여 銓衡에 合格한 者로 한다.</p> <p>⑦短期服務副士官은 「병역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生軍事教育團副士官候補生課程出身下士官과 第6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志願에 依하여 銓衡에 合格한 者 및 一般教育機關에서 軍獎學生으로 高等學校이상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者로 한다.</p> <p>⑧短期服務下士官으로서 長期服務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願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銓衡을 거쳐야 한다.</p> <p>第7條 (義務服務期間) ①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本人의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를 제외한다)의 義務服務期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 例外로 한다.</p> <p>1. 長期服務將校는 10年으로 하되, 長期服務將校로 任用된 날부터 第5年次에 1회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 다만, 空軍士官學校를 卒業한 空軍의 操縱兵科將校로서 飛行訓練課程을 修了하여 飛行資格이 부여된 者는 15年으로 하되, 第10年次에 1회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p> <p>2. 短期服務將校는 3年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및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는 6年으로 하고, 「병역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生軍事教育團士官候補生課程出身將校 및 女子軍人중 看護科將校(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看護科將校를 제</p> | <p>④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p> <p>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p> <p>⑥ 장기복무부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教育課程)을 이수한 자와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p> <p>⑦ 단기복무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 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하사관</p> <p>2.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p> <p>3. 일반교육기관에서 군 장학생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⑧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p> <p>제7조 (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p> <p>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년차에 1회의 전역 지원(志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는 15년으로 하되, 제10년차에 1회의 전역 지원을 할 수 있다.</p> <p>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및 여자 군인 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p> |

| 현행 | 정비안 |
|---|---|
| <p>외한다)에 대하여는 國防部長官은 各軍의 人力運營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年の 범위내에서 그 服務期間을 단축할 수 있다.</p> <p>3. 准士官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 종사하는 准士官(上士 및 元士에서 准士官으로 任用된 者를 제외한다)은 10年으로 하되, 第7年次에 1회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p> <p>4. 長期服務副士官은 7년, 短期服務副士官은 4년(女子短期服務副士官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學生軍事教育團副士官候補生課程出身副士官은 3년)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 종사하는 長期服務副士官은 10年으로 하되, 第7年次에 1회의 轉役志願을 할 수 있다.</p> <p>5. 削除</p> <p>②軍人으로서 外國에서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修學期間의 2倍에 相當하는 期間을, 國內에서 軍외의 教育機關의 委託教育이나 軍教育機關의 學位課程의 教育을 6月 이상 받은 者는 그 修學期間에 相當하는 期間(國內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軍 외의 教育기관에서 夜間課程의 委託教育을 받은 者는 그 修學期間의 2分の 1에 相當하는 期間)을 각각 그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한다. 이 경우 服務期間의 加算은 教育을 義務服務年限內에 종료한 때에는 그 義務服務年限의 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하며, 義務服務年限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終了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p> <p>③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또는 전문의 학과정을 수습한 자는 그 수습기간에 相當하는 期間을, 第62조제1항의 規定</p> | <p>한다)에 대하여는 國防部長官이 各軍의 人力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年の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3. 准사관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准사관(상사 및 원사에서 准사관으로 임용된 者를 제외한다)은 10年으로 하되, 第7年차에 1회의 전역 지원을 할 수 있다.</p> <p>4. 장기복무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여자 단기복무 부사관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부사관은 10年으로 하되, 第7年차에 1회의 전역 지원을 할 수 있다.</p> <p>5. 삭제</p> <p>② 軍人으로서 위탁교육이나 학위과정의 教育을 6개월 이상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期間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각각 加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加산은 教育을 의무복무연한 內에 마친 때에는 그 의무복무연한 만료일 的 다음 날부터 起산하며, 의무복무연한이 지난 후에 마친 때에는 그 종료일 的 다음 날부터 起산한다.</p> <p>1. 軍人으로서 外國에서 6월 以上 위탁교육을 받은 자: 그 수학기간(修學期間)의 2배에 해당하는 期間</p> <p>2. 國內에서 軍 外 教育기관 的 위탁교육이나 軍교육기관 的 학위과정 教育을 6월 以上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相當하는 期間(國內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軍 外 的 教育기관에서 야간과정 的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分の 1에 相當하는 期間)</p> <p>③ 義務장교로서 기초의학 또는 전문의 학과정을 수습한 자는 그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期間을 義務복무에 加산하여</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가운데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한다.</p> <p>④國防部長官은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獎學生중 副士官으로 任用된 者에 대하여는 그 義務服務期間에 1年の 범위안의 期間을 加算하여 服務하게 할 수 있다.</p> <p>⑤國防部長官은 特殊裝備運用을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履修期間의 2배에 해당하는 期間이 3年未滿인 경우에는 3년까지를, 그 履修期間의 2배에 해당하는 期間이 3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履修期間의 2배에 해당하는 期間을 각각 그 義務服務期間에 加算하여 服務하게 할 수 있으며, 그 加算의 方法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다.</p> | <p>복무하고,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군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한다.</p> <p>④ 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중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 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p> <p>⑤ 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까지를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고,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p> |
| <p>第 8 條 (現役停年) ①現役에서 服務할 停年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에는 예외로 한다.</p> <p>1. 年齡停年 元帥 終身 大將 63歲 中將 61歲 小將 59歲 准將 58歲 大領 56歲 中領 53歲 少領 45歲 大尉이하 43歲 准士官 55歲 元士 55歲 上士 53歲 中士 45歲 下士 40歲</p> <p>2. 勤續停年 大領 35年 中領 32年 少領 24年</p> | <p>제 8 조 (현역의 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p> <p>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이하 43세 준사관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p> <p>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p> |

| 현행 | 정비안 |
|---|--|
| <p>大尉이하 15年 准士官 32年 3. 階級停年 中將 4年 小將 6年 准將 6年 ② 削除 ③士官學校 教授要員으로 勤務중인 將校 및 국방대학교의 教授로서 『고등교육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將校에 대하여는 年齡停年을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60歲로 하며,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3호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은 國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방부장관의 제청으로 將官級將校(將官級將校)의 계급정년을 1年이내의 期間에 限하여 陸軍·海軍 및 空軍(이하 “各軍”이라 한다)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領官級將校의 停年은 軍 構造改編, 職制改編, 人力調整 및 積滯人力의 解消 등 各軍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國防部長官이 各軍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 한다)의 提請을 받아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2年이내의 期間에 한하여 各軍別로 단축할 수 있다. ⑥그 밖에 現역정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補任</p> <p>第9條 (任用) ①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은 學力 및 資格에 基礎를 두고 考試에 依하여 이를 行하되 公開競爭試驗으로 한다. 다만, 考試以外의 能力의</p> | <p>대위이하 15년 준사관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② 삭제 ③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에 대하여는 연령정년을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大統領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國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방부장관의 제청으로 將官級將校(將官級將校)의 계급정년을 1年 이내의 期間에 한정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영관급장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각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國방부장관이 各軍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2年이내의 期間에 한정하여 各軍別로 단축할 수 있다. 1. 軍 구조 개편 2. 직제 개편 3. 인력 조정 4. 적체 인력의 해소 ⑥ 그 밖에 現역정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 제8조는 2009. 1. 1. 시행 예정인 규정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임(補任)</p> <p>제9조 (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考試(考試)에 依하여 하되 공개경쟁 시험으로 한다. 다만, 考試 以外의 능력의</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實證에 基礎를 둘 때에는 銓衡에 依하여 任用할 수 있다.</p> <p>② 考試 또는 銓衡은 職務遂行에 必要한 能力을 檢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10條 (缺格事由등) ①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은 思想이 健全하고 素行이 端正하며 體力이 强健한 者中에서 任用한다.</p> <p>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에 任用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3. 破産선고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5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猶豫中에 있거나 그 執行猶豫期間이 終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彈劾 또는 懲戒에 의하여 罷免되거나 解任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8. 法律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p>③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任用되었던 軍人이 行한 職務行爲 및 軍服務期間은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支給된 報酬는 返納되지 아니한다.</p> <p>第11條 (將校의 任用) ① 將校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중에서 任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士官學校 또는 육군3사관학교를 卒業한 者와 國軍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看護師 國家試驗에 合格한 者 2. 士官候補生課程을 마친 者 3. 『병역법』 第57條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教育團士官候補生課程을 마친 者중에서 選拔된 者 | <p>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u>전형(銓衡)</u>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p> <p>② <u>고시나</u> 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0조 (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u>평소의 행실</u>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u>복권(復權)</u>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u>5년이 지나지</u>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u>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u> 아니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u>날부터 5년이 지나지</u>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u>수행한</u>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p> <p>제11조 (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3.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선발된 자 |

| 현행 | 정비안 |
|--|---|
| <p>4. 專門 또는 技術分野에 對한 知識과 經驗이 豊富하며 銓衡에 合格한 者로서 所定の 課程을 마친 者</p> <p>5. 戰時에 있어서 卓越한 統率力을 發揮한 准士官 및 副士官으로서 將官級 指揮官으로부터 現地任官의 推薦을 받은 者</p> <p>5의2. 外國將校養成學校의 全過程을 履修한 者</p> <p>6. 其他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將校로서의 資格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p> <p>②戰時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將校로 任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士官學校의 第4學年生 2. 육군3사관학교의 第2學年生 3. 國軍看護士官學校의 第4學年生. 다만, 看護師國家試驗에 合格한 者에 한한다. 4. 『병역법』 第57條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教育團士官候補生課程을 履修중에 있는 大學·教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第4學年生. 다만, 『병역법』 第83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依하여 在學生入營의 延期가 停止된 때에 한한다. <p>第12條 (將校의 初任階級 등) ①將校의 初任階級은 少尉로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規定에 依하여 任用될 者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및 第11條 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者의 初任階級은 中尉以上으로 할 수 있고,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者로서 제6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者의 初任階級은 大尉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司法試驗 또는 軍法務官任用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法務將校로 任用되는 者와 司法研修院 所定の 課程을 履修한 者로서 軍法務官에 任用되는 者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合格한 者로서 醫務將校로 任用되는 者 | <p>4. 전문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정하여진 과정(課程)을 마친 자</p> <p>5. 전시(戰時)에 있어서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 임관(任官)의 추천을 받은 자</p> <p>6. 외국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p> <p>7.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② 전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육군3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한다) 4.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학생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자로 한정한다) <p>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少尉)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中尉)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사법연수원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대위(大尉)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에서 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3. 學士이상의 學位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軍宗將校로 任用되는 者</p> <p>3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가.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 나. 외국장교양성학교의 <u>진과정을</u> 이수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p> <p>4. <u>其他</u> 專門 또는 技術分野에 從事한 者로서 當該 專攻分野와 直接關聯이 있는 兵科의 將校로 任用되는 者</p> <p>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되는 者에 대하여는 第26條第1項에 規定된 중위 또는 대위의 進級에 필요한 最低勤續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을 軍에 服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當該部門從事期間이 있는 者로서 그 從事期間이 중위 또는 대위의 進級에 필요한 最低勤續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從事期間의 전부 또는 일부를 軍에 服務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③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當該部門從事期間 및 그 換算方法에 관하여는 大統領승으로 정한다.</p> <p>第13條 (任用權者 및 任用權의 委任) ①將校의 任用은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다만, 大領이하의 將校에 대하여는 任用權者의 委任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國防部長官은 第11條第1項第5號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將校의 任用을 參謀總長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准士官의 任用은 國防部長官이 行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은 參謀總長에게 任用權을 위임할 수 있고, 國防部長官으로부터 任用權을 위임받은 海軍參謀</p> | <p>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와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軍宗장교(軍宗將校)로 임용되는 자</p> <p>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가.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 나. 외국장교양성학교의 <u>모든 과정을</u> 이수한 자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p> <p>5. <u>그 밖에</u> 전문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u>해당 전공분야와</u>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u>해당 부문의 종사기간</u>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③ 제2항 단서에 따른 <u>해당 부문의 종사기간과</u>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u>제11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2에</u>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준사관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군참모</p> |

| 현행 | 정비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總長은 海兵隊准士官의 任用權을 國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海兵隊司令官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p> <p>③副士官의 任用은 參謀總長이 行한다. 다만, 參謀總長은 將官級指揮官에게 任用權을 委任할 수 있다.</p> <p>第14條 (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 准士官 및 副士官의 任用에 關한 事項은 國防部令으로 한다.</p> <p>第15條 (任用年齡制限) ①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에 最初로 任用되는 者의 最低年齡과 最高年齡은 다음과 같다. 다만, 准士官 또는 副士官으로부터 任用되는 少尉의 最高年齡은 35세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任用되는 소위의 最高 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고, 法務·醫務 및 軍宗將校로서 任用되는 者와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나 5級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基本兵科將校에 任用되는 者는 『병역법』 第58條第3項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兵籍編入制限 年齡에 이르기까지 任用할 수 있다.</p> <p>初任階級 最低年齡 最高年齡</p> <table border="1" data-bbox="274 1072 589 1265"> <tr> <td>少 領</td> <td>36歲</td> <td></td> </tr> <tr> <td>大 尉</td> <td>32歲</td> <td></td> </tr> <tr> <td>中 尉</td> <td>29歲</td> <td></td> </tr> <tr> <td>少 尉</td> <td>20歲</td> <td>27歲</td> </tr> <tr> <td>准 尉</td> <td>20歲</td> <td>50歲</td> </tr> <tr> <td>副士官</td> <td>18歲</td> <td>27歲</td> </tr> </table> <p>②第1項의 規定은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例外로 할 수 있다.</p> <p>第16條 (補職) ①將校의 補職은 그 職位에 必要한 階級, 兵科 및 經歷上의 資格을 具備한 者라야 한다.</p> <p>②旅團級이상의 戰鬥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에 規定된 補職上의 資格을 具備한 戰鬥兵科出身將校로써 補한다.</p> <p>③特殊兵科에 任用된 將校는 基本兵科에 屬하는 職位에 補職되지 아니한다.</p> | 少 領 | 36歲 | | 大 尉 | 32歲 | | 中 尉 | 29歲 | | 少 尉 | 20歲 | 27歲 | 准 尉 | 20歲 | 50歲 | 副士官 | 18歲 | 27歲 | <p>총장은 해병대준사관의 임용권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③ 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이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한다.</p> <p>제15조 (임용연령의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으며,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편입 제한연령에 이르기까지 임용할 수 있다.</p> <p>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p> <table border="1" data-bbox="740 1072 1056 1265"> <tr> <td>소령</td> <td>36세</td> <td></td> </tr> <tr> <td>대위</td> <td>32세</td> <td></td> </tr> <tr> <td>중위</td> <td>29세</td> <td></td> </tr> <tr> <td>소위</td> <td>20세</td> <td>27세</td> </tr> <tr> <td>준위</td> <td>20세</td> <td>50세</td> </tr> <tr> <td>부사관</td> <td>18세</td> <td>27세</td> </tr> </table> <p>② 제1항의 임용연령 제한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제16조 (보직) ① 장교의 보직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p> <p>② 여단급 이상의 부대로서 전투를 주요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보한다.</p> <p>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p> | 소령 | 36세 | | 대위 | 32세 | | 중위 | 29세 | | 소위 | 20세 | 27세 | 준위 | 20세 | 50세 | 부사관 | 18세 | 27세 |
| 少 領 | 36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大 尉 | 32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中 尉 | 29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少 尉 | 20歲 | 27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准 尉 | 20歲 | 50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副士官 | 18歲 | 27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령 | 36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위 | 32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위 | 29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위 | 20세 | 27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위 | 20세 | 50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사관 | 18세 | 27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④補職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7條 (任期) ①軍의 重要部署의 長 및 專門人力職位에 補職되는 者의 任期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②장교는 임기 이전에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上位의 職位에 補職되는 境遇 2. 心身障得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하지 못하게 되었을 境遇 3. 當該 職務를 遂行할 能力이 없다고 認定되었을 境遇 4. 戰鬪作戰上 必要한 境遇 <p>③제2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8條 (合同參謀議長任命) ①合同參謀議長(以下 “合參議長”이라 한다)은 參謀總長을 歷任한 者 또는 將官級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國회의 人事청문을 거쳐야 한다.</p> <p>②合參議長은 在任期間中 軍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 가진다.</p> <p>③合參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또는 國防上 필요한 때에는 1年이내의 期間에 限하여 그 任期를 延長할 수 있다.</p> <p>④合參議長에 대하여는 任期동안 第8條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年齡停年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그 職에서 解免되</p> | <p>④ 보직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제17조 (임기) ① 軍의 重要부서의 長과 전문인력 職位에 補職되는 자의 임기에 關하여 이 法에 特히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② 장교는 임기 이전에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위의 職位에 補職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p>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직해임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제18조 (합동참모의장의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책임한 자나 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경우 大總統의 임명 전에 國회의 人事청문을 거쳐야 한다.</p> <p>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중 軍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서열 1위가 된다.</p> <p>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p> <p>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동안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職에서 물러나거나</p> |

| 현행 | 정비안 |
|--|--|
| <p>거나 그 <u>任期가 종료된</u> 때에는 <u>現役에서 轉役된다.</u></p> <p>第19條 (참모총장의 임명) ①참모총장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p> <p>②참모총장은 在任期間中 當該 軍에서 服務하는 現役將校中에서 最高의 序列을 가진다.</p> <p>③參謀總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時에 한하여 1次 連任할 수 있다.</p> <p>④참모총장은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가 終了된 후 合參議長으로 轉職되지 아니하는 限 轉役된다.</p> <p>第20條 (重要部署의 長의 任命等)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職位의 補職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參謀總長이 推薦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하고, 國防部長官은 提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提請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p> <p>1. 各軍參謀次長</p> <p>2. 戰鬥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의 長</p> <p>3. 其他 法令으로 定하는 重要部署의 長</p> <p>②參謀總長은 當해 軍將官級將校中에서 合同參謀本部의 將官級將校의 補職과 『국군조직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作戰部隊 및 合同部隊의 長의 補職을 國防部長官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合參議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③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位에 있는 자는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補任期間이 종료된 후 다른 職位에 轉職되지 아니한 때에는 現役에서 轉役된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審議委員會 및 提請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21條 (兵科長任命) ①兵科長은 各軍 當該 兵科出身將校中에서 參謀總長이 任命한다.</p> | <p>그 임기가 <u>끝난</u> 때에는 <u>현역에서 전역된다.</u></p> <p>제19조 (참모총장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軍의 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중 해당 軍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에서 서열 1위가 된다.</p> <p>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시에만 1차 연임할 수 있다.</p> <p>④ 참모총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거나 그 임기를 마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轉役)된다.</p> <p>제20조 (중요부서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軍의 장관급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p> <p>1. 各軍 참모차장</p> <p>2. 전투를 주요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p> <p>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p> <p>② 참모총장은 해당 軍의 장관급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 (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은 각군 의 해당 병과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②兵科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戰時·事變시에 한하여 1次 連任할 수 있다.</p> <p>③兵科長은 그 職에서 解免되거나 그 任期(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連任된 경우에는 그 連任된 任期를 포함한 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職에 任命되지 아니하며 類似한 系統의 職位에 轉職되지 아니하는 限 轉役된다. 다만, 類似職位에 轉職된 경우에는 轉職후 2年이 경과된 때에 轉役된다.</p> <p>④第1項 내지 第3項에서 兵科長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兵科出身將校 중에서 兵科의 長으로 任命된 者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陸軍에 있어서는 防空科, 工兵科·정보통신과·航空科·化學科·兵器科·兵站科·輸送科·副官科·憲兵科·經理科·政訓科·醫務科·法務科 및 軍宗科 海軍에 있어서는 機關科·航空科·情報通信科·兵器科·補給科·施設科·造艦科·經理科·政訓科·情報科·憲兵科·工兵科·輸送科·海兵通信科·海兵兵器科·海兵補給科·海兵經理科·海兵政訓科·海兵憲兵科·醫務科·法務科 및 軍宗科 空軍에 있어서는 情報通信科·氣象科·施設科·政訓科·憲兵科·醫務科·法務科 및 軍宗科 삭제 | <p>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시에만 1차 연임할 수 있다.</p> <p>③ 병과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유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난 때에 전역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과 출신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에 있어서는 방공과, 공병과·정보통신과·항공과·화학과·병기과·병참과·수송과·부관과·헌병과·경리과·정훈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해군에 있어서는 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造艦科)·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해병경리과·해병정훈과·해병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공군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정훈과·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삭제 |
| <p>第5章 能率</p> | <p>제5장 능률</p> |
| <p>第22條 (能率增進) ①軍人の 職務遂行을 爲한 能率は 充分히 發揮되고 增進되도록 圖謀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能率增進을 爲하여 教育 및 訓練을 實施하고 定期的으로 勤務成績을 評定하여야 한다.</p> <p>③勤務成績의 評定과 能率增進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며 參謀總長은 所屬軍人에 對한 勤務成績을 評定하고 그 結果에 對한 適當한 措</p> | <p>제22조 (능률 증진) ①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군인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p> <p>③ 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 증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p> |

| 현행 | 정비안 |
|--|--|
| <p>置를 講究하여야 한다.</p> <p>第23條 (教育機會의 公正) 軍人은 基本教育·補修教育·專門教育등의 教育訓練을 받기 위하여 教育施設에 參加할 機會가 公正히 賦與되어야 한다.</p> <p>第23條의2 (賞勳) 軍人의 賞勳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 <p>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군인은 기본교육, 보수교육(補修教育),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p> <p>제23조의2 (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사항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進級</p> |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진급</p> |
| <p>第24條 (進級) 將校 및 副士官으로서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勤續期間 및 階級別 最低服務期間(이하 “進級最低服務期間”이라 한다)의 服務를 각각 마치고 上位의 職責을 擔當할 能力이 인정된 者는 一段階씩 進級시킨다. 다만,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役이 保留된 者는 進級시키지 아니한다.</p> | <p>제24조 (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에 따른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담당할 능력이 인정된 자는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 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진급시키지 아니한다.</p> |
| <p>第24條의2 (任期制 進級) ①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服務를 마친 領官級將校이상의 者에 대하여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專門人力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職位에 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任期를 定하여 1階級을 進級시킬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進級된 者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그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轉役된다. 다만, 그 職位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職位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國防부장관이 定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p> | <p>제24조의2 (임기제 진급)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장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한 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職位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전역된다.</p> |
|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과 제2항 단서의 規定에 의한 재보직 및 전직은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豫定人員의 범위안에서 行한다.</p> | <p>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에서 행한다</p> |
| <p>第24條의3(名譽進級) ①服務중 功績이 특히 顕著한 者가 第5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轉役하는 때에는 名譽進級시킬 수 있다.</p> | <p>제24조의3 (명예진급) ① 복무 중 공적(功績)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때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정비안 |
|--|--|
|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進級된 者의 年金, 名譽轉役手當等 각종 給與의 지급은 名譽進級전의 階級으로 하고, 기타 禮遇는 名譽進級된 階級으로 한다.</p> <p>③名譽進級の 要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3 (근속진급) ①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하는 자는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임용 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계급별 인력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 불량자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 된 중사 또는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p> <p>第24條의4 (名譽進級) ①服務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第5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轉役하는 때에는 名譽進級시킬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進級된 者의 年金, 名譽轉役手當等 각종 給與의 지급은 名譽進級전의 階級으로 하고, 기타 禮遇는 名譽進級된 階級으로 한다.</p> <p>③名譽進級の 要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5條 (進級權者) ①將校의 進級은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參謀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行한다. 다만, 大領이하의 將校에 대하여는 國防部長官이 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戰時·事變等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戰死者 및 殉職者의 進級을 參謀總長으로 하여금 行하게 할 수 있다.</p> | <p>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자의 연금과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p> <p>③ 명예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명예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3 (근속진급) ①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는 자는 중사로,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하는 자는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 임용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계급별 인력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 불량자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근속진급된 중사 또는 상사가 복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p> <p>제24조의4 (명예진급) ① 복무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전역하는 때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진급된 자의 연금과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p> <p>③ 명예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명예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 (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의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은 참모총장이 행하게 할 수 있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②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請을 하는 경우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에게 提請한다.</p> <p>③大將의 進級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防部長官의 추천에 의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행한다.</p> <p>④副士官의 進級은 副士官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參謀總長 또는 參謀總長으로부터 委任을 받은 將官級指揮官이 命한다.</p> <p>第26條 (進級最低服務期間) ①進級에 필요한 最低服務期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軍醫科·齒醫科 및 法務科將校의 경우에는 階級別最低服務期間만을 적용한다.</p> <p>進級될 階級 最低勤續期間 階級別最低服務期間</p> <p>少將 28年 准將으로서 2年 准將 26年 大領으로서 3年 大領 22年 中領으로서 4年 中領 17年 少領으로서 5年 少領 11年 大尉로서 6年 大尉 3年 中尉로서 2年 中尉 1年 少尉로서 1年 元士 上士로서 7年 上士 中士로서 5年 中士 下士로서 2年</p> <p>②進級權者는 人力運營上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將官級 및 領官級 將校의 進級最低服務期間을 1年 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年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에 服務한 것으로 보는 期間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에 算入한다.</p> <p>④士官學校課程·육군3사관학교과정·士官候補生課程 또는 『병역법』 第57條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教育團士官候補生課程 履修중 外國將校養成學校에 留學함으로써 第11條第1項第5號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將校의 進級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p> | <p>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p> <p>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p> <p>④ 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이나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지휘관이 명한다.</p> <p>제26조 (진급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p> <p>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p> <p>소장: 28년(준장으로서 2년 포함) 준장: 26년(대령으로서 3년 포함) 대령: 22년(중령으로서 4년 포함) 중령: 17년(소령으로서 5년 포함) 소령: 11년(대위로서 6년 포함) 대위: 3년(중위로서 2년 포함) 중위: 1년(소위로서 1년 포함)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p> <p>② 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및 영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이수를 하던 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內將校養成課程을 같은 期에서 履修 하였던 者와 均衡을 維持시킬 수 있다.</p> <p>⑤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p> <p>第27條 (元帥任命) ①元帥는 國家에 對한 功績이 顯著한 大將中에서 任命한다.</p> <p>②元帥의 任命은 國防部長官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行한다.</p> <p>第28條 (特定職位의 階級賦與) 第18條 및 第19條에 規定된 職位에 補職되는 者에게는 第26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承認된 階級을 賦與할 수 있다. 다만, 2階級以上の 進級을 要하는 境遇에는 補職과 同時에 1階級을 進級시키고 補職後 1年이 經過할 때에 承認된 階級을 賦與할 수 있다.</p> <p>第29條 (將校進級選拔委員會) ①將校의 進級은 國防部長官이 승인한 進級豫定人員의 범위안에서 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 依하여 選拔된 者를 시켜야 한다.</p> <p>②將校進級選拔委員會는 各階級別로 各軍本部에 設置한다. 다만, 海兵隊의 경우에는 海兵隊司令部에 設置한다.</p> <p>③第2項의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委員은 進級選拔對象者보다 上級者인 將校 또는 先任인 將校중에서 參謀總長이 任命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海兵隊司令部에 設置하는 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委員은 海兵隊司令官이 任命한다.</p> <p>④將校進級選拔委員會委員은 不得已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階級の 委員으로 2回以上繼續任命되지 못한다.</p> <p>⑤將校進級選拔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 <p>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p>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p> <p>제27조 (원수의 임명) ① 원수(元帥)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p> <p>② 원수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행한다.</p> <p>제28조 (특정직위의 계급 부여)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되는 자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두 계급 이상의 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한 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 후 1년이 지난 후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29조 (장교진급선발위원회)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p> <p>②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각계급별로 각 군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p> <p>③ 제2항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 또는 선임인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p> <p>④ 장교진급선발위원회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되지 못한다.</p> <p>⑤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第30條 (戰死者·殉職者 및 戰鬥有功者의 進級) ①戰死者 및 殉職者에 對하여는 第26條와 第2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進級시킬 수 있다. 다만, 將官級將校로서 的 進級은 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②戰鬥,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임하여 國家에 對한 功績이 顯著한 者는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進級最低服務期間에 不拘하고 進級選拔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1階級 進級시킬 수 있다. 다만, 少領이상으로의 進級은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3分の 2에 到達하여야 한다.</p> <p>③第2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進級最低服務期間의 3分の 2에 達하기 前에 轉役 또는 退役되는 경우에는 進級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1階級 進級시킬 수 있다.</p> | <p>제30조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장교로서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자는 제26조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의 진급은 제26조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26조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되거나 퇴역되는 경우에는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p> |
| <p>第31條 (進級發令 및 削除) ①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 依하여 選拔된 者는 推薦權者, 提請權者 또는 進級權者에 依하여 取消되지 아니하는 限 進級權者가 當該 全軍에 그 名單을 公表하고 闕員에 따라 先任順으로 隨時로 進級發令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表된 者라 할지라도 進級發令前에 進級시킬 수 없는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進級權者는 이를 進級豫定者 名單에서 削除할 수 있다.</p> | <p>제31조 (진급발령과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①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결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 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한다.</p> <p>② 진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p> |
| <p>第32條 (進級落薦) 進級選拔對象圈에 包含된 大領이하의 將校로서 將校進級選拔委員會에서 進級될 資格이 없다고 認定되어 進級審査對象에서 제외된 者 및 第31條의 規定에 依하여 取消 또는 削除된 者는 進級落薦者로 한다.</p> | <p>제32조 (진급낙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대령 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어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제31조에 따라 취소되거나 삭제된 자는 진급낙천자로 한다.</p> |
| <p>第33條 (將校의 臨時階級賦與) 戰時, 事變, 國家非常時 또는 軍의 增編으로 因하여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進級으로써는 上位階級の 闕員을 補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上級職位에 補職된 者에게 對하여 1階級에 限하여 臨時階級을 賦與할 수 있다.</p> | <p>제33조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사변, 국가 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써는 상위계급의 결원(闕員)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대하여 한 계급에 한정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34條 (原階級復歸) 第33條의 規定에 依하여 臨時階級을 賦與받은 者로서 下位 職位에 補職되거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히 原階級에 復歸한다.</p> | <p>제34조 (원계급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위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원계급에 복귀한다.</p> |
| <p>第7章 轉役 및 除籍</p> | <p>제7장 전역 및 제적</p> |
| <p>第35條 (願에 依한 轉役) ①第7條에 規定된 服務期間을 마친 長期服務者는 願에 依하여 現役으로부터 轉役할 수 있다. 다만, 戰時, 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 例外로 한다. ②30年以上 現役に 服務한 者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不拘하고 願에 依하여 轉役할 수 있다. ③豫備役의 將校·准士官 또는 副士官으로서 召集되어 軍에 服務중인 者는 志願에 依하여 國防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現役に 編入할 수 있다.</p> | <p>제35조 (원에 의한 전역) ①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원(願)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 ③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p> |
| <p>第36條 (停年轉役等) ①第8條의 規定에 依한 現役停年에 達한 者는 停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末日에 當然히 轉役된다. ②第7條에 規定된 義務服務期間을 마친 短期服務將校 및 短期服務副士官은 第6條第4項·第8項의 規定에 依한 銓衡에 合格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滿了日에 轉役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滿了日에 轉役된다. 다만, 戰時·事變等의 國家非常時에는 例外로 한다.</p> | <p>제36조 (정년 전역 등) ①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②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부사관은 제6조제4항·제8항에 따른 전형(銓衡)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p> |
| <p>第37條 (願에 依하지 아니하는 轉役 및 除籍)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各軍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現役에서 轉役시킬 수 있다. 1. 心身障 碍로 因하여 現役服務에 不適 合한 者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現役服務에 적 합하지 아니한 者 3. 第32條의 規定에 依하여 同一階級에 서 2回 進級落薦당한 將校. 다만, 少</p> | <p>제37조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u>심신장애</u>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에 따라 동일 계급에서 2회 <u>진급낙천</u>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p> |

| 현행 | 정비안 |
|--|---|
| <p>尉의 경우에는 1회 <u>進級落薦당한者</u></p> <p>4. 兵力減縮 또는 復員時에 있어서 兵力調整上 轉役시킬 必要가 있다고 認定된者</p> <p>②第1項第1號에 該當하는者로서 <u>戰公傷</u>에 依하지 아니한者는 除籍시킬 수 있다.</p> <p>③戰鬪 또는 作戰關聯訓練중 다른 軍人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行위로 인하여 身體障礙人이 된者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現役으로 계속 服務하게 할 수 있다.</p> <p>第38條(轉役審査委員會) ①第37條 및 第39條에 該當하는者를 審査하게 하기 爲하여 <u>各軍本部 및 任用權</u>이 委任된 部隊에 轉役審査委員會를 設置한다.</p> <p>②轉役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審査對象者보다 先任인 장교와 准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第1項의 設置權者가 任命한다.</p> <p>③轉役審査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39條(轉役保留) ①第8條第1項에 規定된 現役停年에 達한 領官級將校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의 범위내에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博士學位所持者 2. 精密裝備技術者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外國語에 能通한者 4. 政策管理·電算·研究開發·特殊情報分野등의 專門知識 및 特殊技術을 가진者로서 大統領令의 定하는 特殊專門要員 및 技術·技能專門要員 <p>②第8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勤續停年에 達한 大尉로서 大統領令의 定하는 技術職 및 專門職에 補職된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年齡停年에 達할 때까지는 每 3年을 單位로, 年齡停年 이후에는 3年의 범위안에서 1年을 單位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p> | <p>에는 1회 <u>진급낙천된자</u></p> <p>4. <u>병력감축이나 복원(復員)을 할 때에 병력 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자</u></p> <p>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u>전공상(戰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u></p> <p>③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u>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u></p> <p>제38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u>각군본부와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u></p> <p>②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p> <p>③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전역 보류) 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영관급장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u>선</u>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정밀장비 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자 4. 정책관리·전산·연구개발·특수정보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 <p>②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정년에 <u>도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 연령정년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u></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③第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된 年齡停年 또는 勤續停年에 達한 准士官 또는 副士官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軍의 必須技術分野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3年の 범위내에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p> <p>④이 법에 의하여 轉役될 者로서 2年이내에 退役年금을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退役年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p> <p>⑤第7條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服務對象者가 停年에 到達한 경우에는 轉役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殘餘加算服務期間의 범위내에서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p> <p>⑥捕虜는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0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除籍될 때까지는 轉役을 保留할 수 있다.</p> <p>第40條 (除籍) ①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除籍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死亡하였을 때 2. 失蹤宣告를 받았을 때 3. 罷免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除籍決議가 있을 때 6. 捕虜 또는 行方不明者로서 國防部令의 정하는 事由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p>②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除籍된 行方不明者에 대하여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除籍日에 戰死·殉職 또는 死亡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p> <p>③第1項第6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方不明者에 대하여 除籍등의 처분이 있는 후 生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取消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p> | <p>③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軍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에 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p> <p>④ 이 법에 따라 전역될 자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에 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p> <p>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복무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은 가산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p> <p>⑥ 포로는 제8조에 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p> <p>제40조 (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p>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일에 전사·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등의 처분이 있는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第41條 (退役)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退役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年以上 現役に 服務하고 退役을 願하는 者 2. 年齡停年에 達한 者 3. 戰公傷으로 因하여 軍에 服務할 수 없는 者 4. 女子軍人으로서 現役을 마친 者 <p>第42條 (豫備役編入) 現役에서 轉役되는 者로서 退役되지 아니하는 者는 豫備役에 編入한다.</p> <p>第43條 (轉役 및 除籍權限者) ①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의 轉役 및 除籍은 任用權者가 行한다. 다만, 大領以下의 將校에 對하여는 任用權者의 委任에 依하여 國防部長官이 行할 수 있다. ②國防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경우에 戰時事變등 國家非常時에 있어서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除籍에 限하여 參謀總長으로 하여금 行하게 할 수 있다.</p> | <p>제41조 (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退役)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자 3.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4. 여자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자 <p>제42조 (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p> <p>제43조 (전역 및 제적의 권한자)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 및 제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에 한정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p> |
| <p>第8章 權利 및 義務</p> | <p>제8장 권리 및 의무</p> |
| <p>第44條 (身分保障) ①軍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身分이 보장되며, 그 階級에 상응하는 禮遇를 받는다. ②軍人은 이 法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休職을 당하거나 現役에서 轉役 또는 除籍되지 아니한다.</p> | <p>제44조 (신분보장) ①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② 군인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휴직을 당하거나 현역에서 전역되거나 제적되지 아니한다.</p> |
| <p>第45條 (平等取扱의 原則) 軍人은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平等히 取扱되어야 하며 差別되지 아니한다.</p> | <p>제45조 (평등 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p> |
| <p>第46條 (休暇) 軍人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休暇를 받는다.</p> | <p>제46조 (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는다.</p> |
| <p>第46條의2 (職業輔導教育) 軍人으로서 服務한 후 轉役하는 者에 대하여는 就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職業輔導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p> | <p>제46조의2 (직업보도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
| <p>第46條의3 (福祉 및 體育施設) ①軍人의 士氣를 養양하고 福祉를 增進하며 體力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軍 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p> | <p>제46조의3 (복지 및 체육 시설) ①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며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 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의 운영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長官이 定한다.</p> <p>第47條 (職務遂行의 義務) 軍人은 國家에 對하여 忠誠을 다하고 服務期間中 誠實히 그 職務를 遂行하여야 하며 職務上에 危險 또는 責任을 回避하거나 上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職務를 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47條의2 (服務規律) 軍人의 服務에 關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p> <p>第47條의3 (服制 및 禮式) ①軍人은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國防部長官이 許可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軍人은 國家에 忠誠하고 團結을 公고히 하며 엄정한 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軍禮式을 行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軍人의 服制 및 禮式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48條 (休職) ①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하여야 한다.</p> <p>1. 戰公傷을 제외한 心身障 碍로 因하여 6月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p> <p>2. 行方不明된 時</p> <p>②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이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時(略式命令이 請求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할 數 있다.</p> <p>③任用權者는 長期服務將校, 准士官 및 長期服務副士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와 短期服務중인 女子軍人이 第4號의 사유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支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休職을 命할 數 있다. 다만, 여자군인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定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休職을 命하여야 한다.</p> | <p>② 제1항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제47조 (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에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7조의2 (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7조의3 (복제 및 예식) ① 군인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행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 (휴직)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p> <p>2. 행방불명된 때</p> <p>②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때는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자군인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자군인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1. 國際機構 또는 外國機關에 임시로 採用된 때</p> <p>2. 自費로 海外留學을 하게 된 때</p> <p>3. 參謀總長이 지정하는 研究機關이나 教育機關등에서 自費로 研修하게 된 때</p> <p>4.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때</p> <p>5.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필요로 하는 父母·配偶者·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p> <p>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에는 俸給의 半額을 지급하고,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에는 俸給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의 規定에 해당되어 休職된 者가 無罪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俸給의 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p> <p>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職된 者가 無罪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休職을 理由로 進級·補職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不利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p> <p>⑥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49條 (休職의 期間) ①第4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의 期間은 1年으로 하고 그 期間이 滿了될 때까지 復職되지 아니할 때에는 當然轉役된다.</p> <p>②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의 期間은 當該 事件의 繫屬期間으로 한다.</p> <p>③第48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그 採用期間으로 하고, 第48條第3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각각 2年이내로 하며, 第48條第3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각각 1年이내로 한다.</p> | <p>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p> <p>2. 자비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p> <p>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비(自費)로 연수하게 된 경우</p> <p>4.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p> <p>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급하여 그 봉급의 차액을 지급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보직 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p> <p>⑥ 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9조 (휴직의 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전역된다.</p> <p>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의 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한다.</p> <p>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의 휴직기간: 그 채용기간</p> <p>2.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비 해외유학 또는 연수의 경우: 각각 2년 이내</p> <p>3.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녀 양육이나 부모 간호 등의 경우: 각각 1년 이내</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④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義務服務期間과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進級最低服務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規定에 따른 기간은 제26조의 規定에 따른 進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p> <p>第50條 (違法·부당한 轉役 및 除籍등에 대한 訴請)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違法·부당한 轉役·除籍 및 休職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懲戒處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日 이내에 이에 대한 審査를 訴請할 수 있다.</p> <p>第51條 (人事訴請審査委員會) ①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將校 및 准士官의 訴請을 審査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를, 副士官의 訴請을 審査하기 위하여 各軍 本部에 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를 둔다.</p> <p>②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p>③ 訴請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審査·判定方法 및 訴請提起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1條의2 (行政訴訟과의 관계) 轉役 또는 除籍과 懲戒 및 休職 기타 本人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行政訴訟은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訴請審査</p> | <p>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제26조에 따른 進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간은 제26조에 따른 進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p> <p>제50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p> <p>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50조에 따른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p>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 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51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p> |

| 현행 | 정비안 |
|---|---|
| <p>위원회 또는 <u>第6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査委員會의 審査·決定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u></p> <p>第51條의3 (苦衷處理) ①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은 勤務與件, 人事管理 및 身上問題 등에 관하여 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待遇를 받지 아니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國防部 및 各軍 本部에 軍人苦衷審査委員會(이하 “苦衷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③苦衷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軍人事訴請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다.</p> <p>④苦衷委員會의 구성·운영과 審査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 <p>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p> <p>제51조의3 (고충처리)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51조에 따른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p> <p>④ 고충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第9章 報酬</p> | <p>제9장 보수</p> |
| <p>第52條 (報酬) 軍人の 報酬는 階級과 服務年限에 適應하도록 法律로 定한다.</p> <p>第53條 (實費辨償) 軍人은 報酬를 받는 외에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職務遂行에 所要되는 實費辨償을 받는다.</p> <p>第53條의2 (名譽轉役) ①軍人으로서 20년 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名譽롭게 轉役하는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名譽轉役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第21條第3項 또는 第2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役되는 者로서 現役停年의 殘餘期間이 1年이상인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③第8條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年보다 단축된 停年으로 名譽轉役하는 軍人の 名譽轉役手當에 관하여는 第8條第1</p> | <p>제52조 (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服務年限)에 따라 지급하되,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53조 (실비 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외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변상(辨償)받는다.</p> <p>제53조의2 (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에 관한 제1항을 준용한다.</p> <p>③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項의 規定에 의한 停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복무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54條 (補償) 軍人이 戰死, 戰傷 또는 公務로 因하여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 또는 死亡하였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人 또는 그 遺族은 그에 對한 相當한 補償을 받는다.</p> <p>第55條 (年金) 將校, 准士官 및 副士官으로서 相當한 期間 誠實히 勤務하고 轉役되었거나 戰死, 戰傷 또는 公務로 因한 負傷, 疾病 또는 死亡으로 因하여 轉役 또는 除籍될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人이나 그 遺族에게 年金을 支給한다.</p> | <p>하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이나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p>⑤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과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4조 (보상) 군인이 전사(戰死), 전상(戰傷) 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p> <p>제55조 (연금)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하였을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하거나 제적되었을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사(戰死) 또는 전상(戰傷) 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

| 현행 | 정비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10章 懲戒</p> <p>제56조 (징계사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u>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p>第57條 (懲戒의 종류) ①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에 대한 懲戒處分은 重懲戒와 輕懲戒로 하고,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u>정직으로</u>,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구분하되, 懲戒種類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면 또는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身分을 剝奪함을 말한다. 2. 降等은 <u>당해 階級에서 1階級 내림을</u> 말한다. 다만, 將校로부터 准士官으로, 副士官으로부터 兵으로는 降等시키지 못한다. 3. 停職은 그 職責을 <u>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場所에서 謹慎하게 함을</u> 말하며 그 기간은 <u>1월 이상 3월 이하로</u> 한다. 停職期間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減額한다. 4. 減俸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減額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u>1월 이상 3월 이하로</u> 한다. 5. 謹慎은 平常勤務후 懲戒權者가 지정한 營内の 일정한 場所에서 <u>非行을 反省하게 함을</u> 말하고 그 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6. 譴責은 非行을 糾明하여 <u>장래를 訓戒함을</u> 말한다. |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징계</p> <p>제56조 (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u>경우에는</u>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u>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u>경우</u>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u>경우</u>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u>경우</u> <p>제57조 (징계의 종류)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u>정직으로</u> 하며, 경징계는 감봉·<u>근신(勤愼)</u> 또는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면 또는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u>박탈하는 것을</u> 말한다. 2. 강등은 <u>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내리는 것을</u>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을 <u>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u> 말하며 그 기간은 <u>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u> 한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u>감액하는 것을</u> 말하며 그 기간은 <u>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u>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u>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u> 말하고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u>규명하여 장래에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u> 말한다.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② 병에 대한 <u>懲戒處分</u>은 이를 <u>降等</u>·<u>營倉</u>·<u>休暇制限</u> 및 <u>謹慎</u>으로 구분하되, <u>懲戒種類別</u> 내용은 다음 <u>各號</u>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降等</u>은 <u>당해 階級</u>에서 <u>1階級</u> 내림을 말한다. 2. <u>營倉</u>은 <u>部隊</u>·<u>艦艇</u>의 <u>營倉</u> 기타 <u>拘禁場</u>에 <u>監禁함</u>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3. <u>休暇制限</u>은 <u>休暇日數</u>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회에 5일이내로 하며 <u>服務其間중 總制限日數</u>는 15일을 <u>초과하지</u> 못한다. 4. <u>謹慎</u>은 <u>訓練</u> 또는 <u>教育</u>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平常勤務</u>에 <u>服務함</u>을 <u>급하고</u> 일정한 <u>場所</u>에서 <u>非行</u>을 <u>反省하게 함</u>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p>③ 삭제</p> <p>제58조 (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관급장교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2.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전단사령관·비행단장 및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는 연대장·함정장·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는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는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p>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장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p> | <p>② 병에 대한 <u>징계처분</u>은 <u>강등</u>·<u>영창</u>·<u>휴가제한</u> 및 <u>근신</u>으로 구분하되, <u>징계종류別</u>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강등</u>은 해당 계급에서 <u>한 계급 내리는 것</u>을 말한다. 2. <u>영창</u>은 <u>부대</u> 또는 <u>합정의 영창</u>이나 <u>그 밖의 구급장에 감금하는 것</u>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u>휴가제한</u>은 <u>휴가일수</u>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회에 5일 이내로 하며 <u>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u>는 15일을 <u>넘지</u> 못한다. 4. <u>근신</u>은 <u>훈련</u> 또는 <u>교육</u>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평상근무</u>에 <u>복무하는 것</u>을 <u>금지하고</u> 일정한 <u>장소</u>에서 <u>비행</u>을 <u>반생하게 하는 것</u>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p>③ 삭제</p> <p>제58조 (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관급장교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2.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전단사령관·비행단장 및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는 연대장·함정장·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는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는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p>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고,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③징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중 파면·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교의 파면·해임 및 장관급장교의 강등은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해임 및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해임은 참모총장 4. 병의 강등은 연대장·함정장 및 전대장 <p>④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59條 (징계의 절차 등) ①懲戒는 懲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行한다.</p> <p>②懲戒委員會는 懲戒審議對象者보다 先任인 將校 3人以上으로써 構成한다. 다만, 懲戒審議對象者가 副士官 또는 兵인 경우에는 將校 및 그보다 先任인 副士官 3人 이상으로써 구성한다.</p> <p>③懲戒委員會는 當該 懲戒權者의 部隊 또는 機關에 設置한다.</p> <p>④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u>경하다고</u>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u>배치된</u> 징계권자의 <u>차상급</u>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p> <p>제59조의2 (영창의 절차 등) ①영창은 휴가제한·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u>신체구급</u>이 필요한 때에 <u>한하여</u> 처분하여야 한다.</p> | <p>③ 징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중 파면·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의 승인을 <u>받아야</u>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교의 파면·해임 및 장관급장교의 강등은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해임 및 장관급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해임은 참모총장 4. 병의 강등은 연대장·함정장 및 전대장 <p>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징계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u>거쳐서</u> 한다.</p> <p>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u>3명 이상</u>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 대상자가 부사관 또는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u>3명 이상</u>으로 구성한다.</p> <p>③ 징계위원회는 <u>해당</u>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한다.</p> <p>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u>가법</u>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u>배치된</u>, 징계권자의 <u>바로 상급인</u>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p> <p>제59조의2 (영창의 절차 등) ① 영창은 휴가제한·근신 등으로 직무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u>신체의 구급</u>이 필요한 때에 <u>한정하여</u> 처분하여야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②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해외순방 중인 <u>합정</u>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인권담당군법무관은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인권담당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u>중에서</u>,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p> <p>⑤제3항의 <u>규정에 의한</u>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의 <u>규정에 의한</u>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때에는 당해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의견인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⑥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지정한 자에게 징계사건명, 집행일시, 장소, 징계사실의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0조 (항고)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권담당군법무관의 <u>조력</u>을 받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u>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u>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p> | <p>②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해외순방 중인 <u>합정</u>에 <u>서 행하는 경우나</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징계사유, 징계절차, 양정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인권담당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u>중에서 임명하고</u>, 각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때에는 <u>해당</u>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의견인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⑥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지정한 자에게 징계사건명, 집행일시, 장소, 징계사실의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0조 (항고)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인권담당군법무관의 <u>도움</u>을 받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u>바로 상급인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抗告)</u>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p> |

| 현행 | 정비안 |
|--|---|
| <p>이거나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u>차상급</u>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②제1항 본문의 <u>규정에</u>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u>국방부장관에게</u>,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③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④제1항 본문의 <u>규정에 의한</u>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u>차상급</u>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p> <p>⑤제1항 또는 제4항의 <u>규정에 따라</u>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p> <p>⑥제1항 내지 제4항의 <u>규정에 따라</u>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의 <u>규정에 의한</u>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u>취소 또는 감경</u>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 없다.</p> <p>第60條의2 (抗告審査委員會) ①懲戒處分에 대한 抗告를 審査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u>차상급</u> 부대 또는 기관에 抗告審査委員會를 둔다. 다만, 國防部長官이 懲戒權者인 경우와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한 경우에 이를 審査하기 위한 抗告審査委員會는 國防部에 둔다.</p> <p>②抗告審査委員會는 將校 5人以上 9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委員中 1人은 軍法務官 또는 法律에 素養이 있는 將校로 하여야 한다.</p> <p>第60條의3 (懲戒事由의 時效) ①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年(金品 및 響應收受, 公金の 橫領·</p> | <p>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u>바로 상급인</u>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u>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u>,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본문에 <u>따른</u>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u>바로 상급인</u>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바로 상급인</u>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p> <p>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u>규정에 따라</u>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u>따른</u>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u>취소하거나</u>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 없다.</p> <p>제60조의2 (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u>바로 상급인</u>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p> <p>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p> <p>제60조의3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流用의 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p> <p>②懲戒委員會의 구성, 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 抗告審査委員會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 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미만인 경우에도 그 決定 또는 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이내에는 다시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조사나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p> | <p>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p> <p>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p> |
| <p>제11장 보칙</p> | <p>제11장 보칙</p> |
| <p>第61條 (委任規定) 懲戒委員會 및 抗告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과 懲戒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62條 (獎學金の 지급) ①國防部長官은 優秀한 軍人の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各級學校(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설치된 教育機關을 포함한다)의 在學生으로서 將校 또는 副士官으로 任用되기를 원하는 者를 軍獎學生으로 선발하여 獎學金을 지급하고 卒業後 將校 또는 副士官으로 服務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獎學金을 지급받은 者가 本人의 歸責事由로 軍獎學生의 選拔이 取消되거나 第7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服務期間을 服務하지 아니하고 轉役 또는 除籍</p> | <p>제61조 (징계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2조 (장학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군장학생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되거나 제적된 때에는 본인</p> |

| 현행 | 정비안 |
|--|--|
| <p>된 때에는 本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지급한 獎學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軍獎學生의 選拔·取消, 獎學金으로 지급될 學費의 범위, 義務不履行時 還收할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63條 (人事記錄) 參謀總長은 所屬軍人の 兵籍 및 其他 人事에 關한 一切의 事項에 對하여 記錄을 作成하고 이를 保管한다.</p> <p>第64條 削除</p> <p>第6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 <p>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3조 (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의 병적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p> <p>제64조 삭제 <u><삭 제></u></p> |

○ 『**군무원인사법**』 **현행** · 정비안 대비표

[개정 2006. 3. 24. 법률 제7898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u>군무원인사법</u></p> <p>第1章 總則</p> | <p><u>군무원 인사법</u></p> <p>제1장 총칙</p> |
| <p>第1條 (目的) 이 법은 <u>軍務員의 責任 · 職務 · 身分 및 勤務條件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資格 · 任用 · 服務 · 報酬 및 身分保障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u></p> <p>第2條 (軍務員의 구분) ①軍務員은 <u>이를 一般軍務員 및 技能軍務員으로 구분한다.</u> ②一般軍務員은 技術 · 研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業務를 담당하는 軍務員으로서 <u>職群 · 職列別로 分類한다.</u></p> <p>③技能軍務員은 技能的인 業務를 담당하는 軍務員으로서 <u>技能別로 分類한다.</u></p> <p>第3條 (一般軍務員 및 技能軍務員의 階級區分 등) ①一般軍務員은 <u>이를 1級 내지 9級으로 구분한다.</u> ②技能軍務員의 階級區分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각 階級の 職務의 종류별 名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4條 (待遇) 軍務員에 대하여는 軍인에 準하는 待遇를 하되, 그 階級別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條 (軍務員人事委員會) ①軍務員人事制度의 개선, 公正한 人事管理 등 人事에 관한 사항등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國防部와 第6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 또는 補職權이 委任된 경우 그 委任받은 者를 長으로 하는 部隊 또는 機關에 軍務員人事委員會(이</p> | <p>제1조 (목적) 이 법은 <u>군무원(軍務員)의 책임 · 직무 · 신분 및 근무조건</u>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 · 임용 · 복무 ·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군무원의 구분) ① 군무원은 <u>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u>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기술 ·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u>직군별(職群別) · 직렬별(職列別)</u>로 분류한다. ③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u>기능별로 분류한다.</u></p> <p>제3조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u>일반군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한다.</u> ②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 (대우) 군무원에게는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되,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 (군무원인사위원회) ① <u>군무원 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1. 국방부</p> |

| 현행 | 정비안 |
|--|--|
| <p>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事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2 章 任用</p> <p>第 6 條 (任用權者) ①5級 이상의 一般軍務員은 國防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大統領의 委任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任用할 수 있다.</p> <p>②6級 이하의 一般軍務員 및 技能軍務員은 國防部長官이 任用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의 委任에 의하여 各軍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 한다), 國防部直轄部隊·機關의 長(이하 “國防部直轄部隊長”이라 한다) 또는 將官級將校인 部隊·機關의 長(이하 “將官級部隊長”이라 한다)이 任用할 수 있다.</p> <p>第 7 條 (新規採用) ①軍務員의 新規採用은 公開競爭試驗에 의한다.</p> <p>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採用試驗에 의할 수 있다.</p> <p>1. 第28條第1項第3號의 사유로 退職한者 또는 『국가공무원법』 第71條第1項第1號의 사유로 休職되어 休職期間滿了로 退職된 者를 退職日부터 3年 이내에 退職 당시에 在職한 職級の 軍務員으로 採用하는 경우</p> <p>2. 一般軍務員을 技能軍務員으로, 技能軍務員을 一般軍務員으로 採用하는 경우</p> <p>3. 法令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免許證所持者를 그 資格證·免許證에 關連된 職務의 軍務員으로 採用하는 경우</p> <p>4. 1級 一般軍務員을 採用하는 경우</p> | <p>2. 제6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임용권이 나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받은 자를 장으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p> <p>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임용</p> <p>제 6 조 (임용권자) 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p> <p>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임용할 수 있다.</p> <p>1.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p> <p>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직할부대장”이라 한다)</p> <p>3. 장관급(將官級) 장교인 부대·기관의 장(이하 “장관급부대장”이라 한다)</p> <p>제 7 조 (신규채용) ① 군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제 개폐로 인한 인원초과로 퇴직한 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만으로 퇴직한 자를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퇴직 당시에 재직할 직급의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p> <p>2.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p> <p>3. 법령에 따른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p> <p>4. 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5. 採用豫定職級の 분야에 근무한 實績이 있는 軍人을 轉役한 날부터 3年 이내에 採用하는 경우</p> <p>6. 採用豫定職에 상응한 勤務實績 또는 研究實績이 2年 이상인 者를 採用하는 경우</p> <p>7. 島嶼·僻地등 특수한 地域·環境을 고려하여 緣故地등 일정한 地域에 居住하는 者를 그 地域에 所在하는 部隊 또는 機關에 근무할 軍務員으로 採用하는 경우</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採用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多數人을 制限競爭의 方法에 의하여 採用할 수 있으며, 그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採用된 者는 5年間 轉職 또는 당해 部隊·機關외의 部隊·機關으로 轉補될 수 없다.</p> <p>第8條 (試驗實施機關) ①軍務員의 採用試驗·昇進試驗 및 轉職試驗은 國防部長官이 실시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은 參謀總長·將官級部隊長 또는 大領級將校인 部隊의 長(이하 “大領級部隊長”이라 한다)에게 委任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防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開競爭試驗에 한하여 이를 다른 國家機關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第9條 (應試資格) 各種試驗에 있어서 담당할 職務遂行에 필요한 最少限度의 學歷·經歷·年齡 기타 필요한 資格要件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0條 (缺格事由)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와 『국가공무원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軍務員에 任用될 수 없다.</p> <p>第11條 (採用候補者名簿) ①試驗實施機關의 長은 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採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p> <p>②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의 採</p> | <p>5. 채용 예정 직급의 분야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p> <p>6. 채용 예정직에 적정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p> <p>7.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p> <p>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 전직(轉職)되거나 해당 부대·기관 외의 부대·기관으로 전보(轉補)될 수 없다.</p> <p>제8조 (시험실시 기관) ① 군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 장관급부대장 또는 대령급 장교인 부대의 장(이하 “대령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경쟁시험만은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9조 (응시자격) 각종 시험에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p> <p>제11조 (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p> |

| 현행 | 정비안 |
|--|---|
| <p>用候補者名簿의 有効期間은 2年으로 한다.</p> <p>③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가 採用候補者名簿에 登錄을 마친 후 「병역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期間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任用되지 못한 期間은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p> <p>第12條 (試補任用) ①5級 一般軍務員을 新規採用하는 경우에는 6月, 6級 이하의 一般軍務員 및 技能軍務員을 新規採用하는 경우에는 3月의 期間을 試補로 任用하고, 그 期間중 勤務成績이 良好한 경우에는 正規軍務員으로 任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試補任用을 免除하거나 그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p> <p>②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軍務員이 勤務成績 또는 教育訓練成績이 不良한 때에는 第26條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用權者(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免職시킬 수 있다.</p> <p>③休職한 期間·職位解除期間 및 懲戒에 의한 停職 또는 減俸處分을 받은 期間은 第1項의 試補任用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p> <p>④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軍務員의 教育訓練 및 勤務成績評定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3條 (補職) ①軍務員의 補職은 國防部長官이 行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의 委任에 의하여 參謀總長·將官級部隊長 또는 大領級部隊長이 行할 수 있다.</p> <p>②軍務員의 補職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4條 (休職者·長期派遣者등의 缺員補充) ①軍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職級의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派遣期間이 만료되기 2月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p> <p>③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마친 후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 (시보 임용) ①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②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면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불구하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p> <p>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定한다.</p> <p>제13조 (보직) 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참모총장, 장관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p> <p>② 군무원의 보직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定한다.</p> <p>제14조 (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職급의 定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1. 『국가공무원법』 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6月 이상 休職한 때</p> <p>2. 中央行政機關에 6月 이상 派遣된 때</p> <p>3. 教育訓練機關의 6月 이상 課程에 派遣된 때</p> <p>②軍務員이 罷免·解任 또는 免職된 후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軍務員人事訴請 審査委員會나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 또는 法院에서 그 處分の 無效·取消의 決定 또는 判決을 한 때에는 缺員의 補充이 있었던 때부터 罷免·解任 또는 免職處分을 받은 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當해 職級에 최초로 缺員이 발생한 때에 각각 消滅된 것으로 본다.</p> <p>1. 休職者의 復職</p> <p>2. 派遣된 者의 復歸</p> <p>3. 罷免·解任 또는 免職된 者의 復歸</p> <p>第15條(昇進) ①軍務員의 階級間 昇進은 勤務成績評定·經歷評定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한다. 다만, 1級 내지 3級 一般軍務員에의 昇進에 있어서는 能力과 經歷등을 參照하여 任用하며, 5級 一般軍務員에의 昇進은 昇進試驗을 거쳐야 한다.</p> <p>②職務遂行에 현저한 功績이 있는 優秀軍務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別昇進任用을 할 수 있다. 다만, 5級 一般軍務員에의 昇進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昇進試驗을 거쳐야 한다.</p> <p>③階級別 昇進所要最低年數, 昇進의 제한 기타 昇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3 章 服 務</p> <p>第16條 (誠實義務) ①軍務員은 法令을 준수하며 誠실히 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p> | <p>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p> <p>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p> <p>3. 교육훈련기관의 6개월 이상의 과정(課程)에 파견된 경우</p> <p>② 군무원이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1. 휴직자의 복직</p> <p>2. 파견된 자의 복귀</p> <p>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p> <p>제15조(승진) ① 군무원의 계급 간 승진은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 시험을 거쳐야 한다.</p> <p>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승진 시험을 거쳐야 한다.</p> <p>③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복 무</p> <p>제16조 (성실 의무)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②軍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職務상의 위험 또는 責任을 회피하거나 소속上官의 許可없이 職務를 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17條 (秘密嚴守義務) 軍務員은 在職중은 물론 退職후에도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p> <p>第18條 (委託教育者등의 服務) 軍務員으로서 國費 또는 招請國의 부담에 의하여 外國에 留學한 者 및 國內教育訓練機關에서 委託教育을 받은 者는 6年の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을 服務하여야 한다.</p> <p>第19條 (委任規定) 軍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 <p>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 (비밀엄수 의무) 군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 (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군무원으로서 <u>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u> 외국에 유학한 자와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6년의 범위에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p> <p>제19조 (<u>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u>)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第4章 能率</p> | <p>제4장 능력</p> |
| <p>第20條 (能率增進) ①軍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能率을 충분히 發揮하고 增進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國防部長官은 軍務員의 勤務能率의 增進을 위하여 保健衛生·休暇·安全保護·厚生福祉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基準을 設定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第21條 (教育訓練) ①軍務員은 擔當職務와 관련된 學識·技術 및 應用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教育訓練을 받아야 한다.</p> <p>②軍務員의 教育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2條 (勤務成績評定) 軍務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成績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評定하여 이를 人事管理에 반영하여야 한다.</p> <p>第23條 (賞勳) 軍務員의 賞勳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 <p>제20조 (능력 증진)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u>능률이</u>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u>군무능률</u>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위생, 휴가, 안전보호, 후생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1조 (교육훈련) ①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u>기르기 위하여</u>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p>②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 (군무성적평정) <u>군무원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군무성적</u>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3조 (상훈) 군무원의 <u>상훈(賞勳)</u>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報酬</p> <p>第24條 (報酬) ①軍務員의 俸給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軍務員은 俸給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을 받을 수 있다.</p> <p>第25條 (實費辨償) 軍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務遂行에 소요되는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p> |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수</p> <p>제24조 (보수)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p> <p>제25조 (실비 변상) 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身分保障</p> <p>第26條 (意思에 반한 身分措置) 軍務員은 刑의 宣告, 이 法 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休職·職位解除·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級軍務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 (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의 규정 <u>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u>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u>해당하게 된 때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28條 (職權免職) ①軍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1. 身體精神上的의 障礙로 職務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할 때 3. 職制가 改廢되어 定員이 減少하거나 豫算의 減少등에 의하여 過員이 된 때 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期間중 能力의 향상 또는 改悛의 情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轉職試驗에서 2回 이상 不合格한 者로서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p> |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신분보장</p> <p>제26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 (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8조 (직권면직)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가 개폐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전직시험(轉職試驗)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p> |

| 현행 | 정비안 |
|--|---|
|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은 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第29條 (職位解除) ①任用權者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軍務員에 대하여는 職位를 解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者 또는 勤務態度가 심히 不誠實한 者 2.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務員懲戒委員會에 회부된 者 3. 刑事件으로 起訴된 者(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p>②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의 職位解除는 3月 이내의 期間 待機를 命하고 待機期間중 能力回復이나 態度改善을 위한 教育訓練 또는 특별한 研究課題의 부여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③第1項第1號와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事由가 競合되는 때에는 第2號 또는 第3號에 의하여 職位解除를 하여야 한다.</p> <p>④任用權者는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職位解除에 관한 權限을 參謀總長·國防部直轄部隊長 또는 將官級 部隊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를 한 경우에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任用權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解除에 관한 權限을 위임받는 者를 포함한다)는 지체없이 職位를 부여하여야 한다.</p> <p>第30條 (降任) ①任用權者는 職制 또는 定員의 變更등으로 인하여 職位가 廢職되거나 降等되어 過員이 된 때 또는 本人이 同意한 경우에는 降任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降任된 軍務員은 上位職級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1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優先 昇進任用된다.</p> <p>第31條 (停年) ①軍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다만,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에는 예외로 한다.</p> | <p>②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9조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p>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대기기를 명하고 대기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특별한 연구과제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p> <p>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관급 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제4항에 따라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30조 (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廢職] 강등되어 인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군무원을 강임(降任)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15조의 승진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 임용된다.</p> <p>제31조 (정년) ① 군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1. 3級 이상의 一般軍務員 : 60歲 2. 4級 및 5級 一般軍務員 : 58歲 3. 6級 및 7級 一般軍務員 : 57歲 4. 8級 및 9級 一般軍務員 : 55歲 5. 技能軍務員 : 50歲 내지 57歲 ②技能軍務員의 職務의 종류별 停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삭제</p> <p>第32條 (停年退職) 第31條에 規定된 停年에 달한 者는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사이 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 7月에서 12月사이 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當然히 退職된다.</p> <p>第33條 (依願免職) 軍務員은 願에 의하여 그 職을 免할 수 있다. 다만, 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에는 예외로 한다.</p> <p>第34條 (人事訴請) 軍務員은 違法 또는 부당하게 休職·職位解除·降任 또는 免職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p> <p>第35條 (人事訴請審査委員會) ①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審査하게 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軍務員人事訴請審査委員會(이하 “人事訴請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人事訴請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5條의2 (行政訴訟과의 관계) 休職·職位解除·降任·免職·懲戒 기타 本人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行政訴訟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軍務員人事訴請審査委員會 또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軍務員控告審査委員會의 審査·決定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p> <p>第36條 (苦衷處理) ①軍務員은 누구나 勤務條件 또는 人事管理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 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請求를 받은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人事委員會에 회부하여</p> | <p>1. 3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60세 2.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 58세 3. 6급 및 7급 일반군무원: 57세 4.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 55세 5. 기능군무원: 50세부터 57세까지 ② 기능군무원의 직무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p> <p>제32조 (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는 그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當然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當然히 퇴직한다.</p> <p>제33조 (의원면직) 군무원은 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4조 (인사 소청)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35조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34조에 따른 인사 소청 청구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휴직, 직위해제, 강임, 면직, 징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p> <p>제36조 (고충 처리) ① 군무원은 누구나 근무 조건 또는 인사관리,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p> |

| 현행 | 정비안 |
|--|---|
| <p>審査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등 公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軍務員의 人事相談 및 苦衷處理를 위한 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長官이 정한다.</p> | <p>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高층의 해소 등 公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층처리를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第7章 懲戒</p> |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징계</p> |
| <p>第37條 (懲戒事由) 軍務員에 대한 懲戒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행한다.</p> | <p>제37조 (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職務上의 義務를 위반하거나 職務를 怠慢히 한 때 3. 職務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 軍律을 위반한 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軍律(軍律)을 위반한 경우 |
| <p>第38條 (懲戒權者) ①軍務員에 대한 懲戒權者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第58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하되, 軍人과의 階級對比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다.</p> | <p>제38조 (징계권자) ①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58조제1항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 대비는 군무원의 대우에 관한 제4조에 따른다.</p> |
| <p>②懲戒權者가 懲戒를 하고자 할 때에는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務員懲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罷免·解任 또는 停職處分을 할 때에는 任用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 <p>②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40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파면·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 <p>③懲戒權者가 懲戒處分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軍務員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③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무원에게 알려야 한다.</p> |
| <p>第39條 (懲戒의 종류와 效力) ①懲戒는 罷免·解任·停職·減俸 및 譴責으로 구분한다.</p> | <p>제39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p> |
| <p>②停職은 1月 이상 3月 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그 期間중 軍務員의 身分은 保有하나 職務에 종사할 수 없으며 報酬의 3分の 2를 減한다.</p> | <p>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p> |
| <p>③減俸은 1月 이상 3月 이하의 期間, 報酬의 3分の 1을 減한다.</p> | <p>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④ 譴責은 過誤에 대하여 訓戒하고 反省하게 한다.</p> <p>第40條 (징계의 절차 등) ①軍務員의 懲戒處分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第38條 第1項 各號의 部隊 또는 機關에 軍務員 懲戒委員會(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②懲戒委員會의 구성·운영·審議節次 및 懲戒對象者의 陳述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u>결하다</u>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u>차상급</u>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u>심사</u> 또는 <u>재심사</u>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u>심사</u> 또는 <u>재심사</u>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第41條 (懲戒事由의 時效)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年 (<u>金品</u> 및 <u>響應收受</u>, <u>公金</u>의 <u>橫領</u>·<u>流用</u>의 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p> <p>②懲戒委員會의 구성 그 밖에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 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나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 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 미만인 경우에도 그 決定 또는 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 이내 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국가공무원법』 第8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節次를 進行하지 못하여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1月 미만인 경우에 第1項의 期間은 同法 第8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나 搜查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月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p> | <p>④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p> <p>제40조 (징계의 절차 등) ①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38조 제1항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u>가</u> <u>별다</u>고 인정하는 <u>경우</u>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u>바로 상급</u>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u>심사</u>나 <u>재심사</u>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u>심사</u>나 <u>재심사</u>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u>금품</u> 또는 <u>향응 수수</u>나 <u>공금</u>의 <u>횡령</u>·<u>유용</u>(<u>流用</u>)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p> <p>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 또는 징계 양정(量定)의 <u>과다</u>(<u>過多</u>)를 이유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소멸시효까지 남은 <u>기간이 3개월</u>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u>소멸시효</u>가 지나거나 <u>소멸시효</u>까지 남은 <u>기간이 1개월</u> 미만인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u>같은 법</u>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p> |

| 현행 | 정비안 |
|---|---|
| <p>제42조 (항고)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 없다.</p> | <p>제42조 (항고)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바로 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면,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바로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받은 바로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관급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항고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더 무겁게 처분할 수 없다.</p> |
| <p>第43條 (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 ①軍務員의懲戒處分에 대한抗告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軍務員抗告審査委員會(이하 “抗告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國防部長官이懲戒權者인 경우와 第42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에게 抗告한 경우에 이를 審査하기 위한 抗告審査委員會는 國防部에 둔다.</p> <p>②抗告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審査節次 및 抗告人의 陳述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 <p>제43조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①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바로 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p> <p>②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절차 및 항고인의 진술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8章 補則</p> <p>第44條 (別定軍務員) ①戰時·事變등의 國家非常時와 職務의 내용·責任의 特殊性등을 <u>참작하여 大統領令이</u> 정하는 경우에는 別定軍務員을 둘 수 있다.</p> <p>②別定軍務員은 『국가공무원법』상의 特殊經歷職公務員중 別定職公務員으로 <u>보되, 그 任用·服務·報酬·懲戒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u></p> <p>제45조 (계약제 임용 등) ①군무원 직무의 <u>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6조·제17조·제19조, 제4장 능률, 제5장 보수, 제27조 및 제7장 징계에 관한 규정을 <u>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u>채용의 분야 및 조건과 임용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44조 (별정군무원) ①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와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 등을 <u>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u> 정하는 경우에는 別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p> <p>② 別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別정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別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보수, 징계, <u>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u></p> <p>제45조 (계약제 임용 등) ① 군무원 직무의 <u>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u>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격사유에 관한 제10조 2. 성실 의무에 관한 제16조 3.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제17조 4. 위임규정에 관한 제19조 5. 능률에 관한 제4장 6. 보수에 관한 제5장 7. 당연 퇴직에 관한 제27조 8. 징계에 관한 제7장 <p>③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u>채용 분야 및 조건과 임용 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u></p> |

○ 「**군인연금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7. 7. 23. 법률 제8541호]

| 현 행 | 정 비 안 |
|--|--|
| 第1章 總則 | 제1장 총칙 |
| <p>第1條 (目的) 이 법은 軍人이 相當한 年限 誠實히 服務하고 退職하거나 心身의 障擧로 因하여 退職 또는 死亡한 때 또는 公務상의 疾病·부상으로 療養하는 때에 本人이나 그 遺族에게 適切한 給與를 支給함으로써 本人 및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適用範圍) 이 법은 現役 또는 召集되어 軍에 服務하는 軍人에게 適用한다. 다만,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 및 兵에게는 第31條에 限하여 이를 適用한다.</p> <p>第3條 (用語의 定義) ①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報酬月額이라 함은 軍人의 階級과 服務期間에 따라 支給되는 月給與額으로서 俸給과 賞與金의 年支給額을 12로 平均한 額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手當額을 合한 額을 말한다.</p> <p>2. “平均報酬月額”이라 함은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退職으로 給與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退職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退職한 날의 전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遡及하여 3년간(服務期間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服務期間을 말한다)의 報酬月額을 軍人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換算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月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p> <p>3. 退職이라 함은 轉役, 退役 및 除籍의 境遇를 말한다.</p> |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u>연한(年限)</u>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u>심신의 장애로 퇴직</u> 또는 사망한 때나 <u>공무상의 질병·부상</u>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u>본인과</u>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u>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u>현역이나</u>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u>재해보상금에 관한 제31조만</u> 적용한다.</p> <p>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보수월액”이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연 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액수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p> <p>2. “평균보수월액”이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복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p> <p>3. “퇴직”이란 <u>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u>의 경우를 말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4. <u>遺族이라 함은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當時 그에 依하여 扶養되고 있던(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金の 支給에 있어서는 扶養의 與否에 불구한다)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u></p> <p>가.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 포함하며, 退職後 61歲 이후에 婚姻한 配偶者를 제외한다)</p> <p>나. 子女(退職後 61歲 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後 60歲당시의 胎兒는 服務중 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p> <p>다. 父母(退職日 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p> <p>라. 孫子女(退職後 61歲 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後 60歲당시의 胎兒는 服務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p> <p>마. 祖父母(退職日 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p> <p>5. <u>寄與金이라 함은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으로서 軍人이 負擔하는 金額을 말한다.</u></p> <p>6. <u>負擔金이라 함은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으로서 국가가 負擔하는 金額을 말한다.</u></p> <p>②第1項第4號의 規定중 子女는 18歲 미만인 者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18歲 이상인 者에 限한다.</p> <p>③第1項第4號의 規定중 孫子女는 父가 없는 경우 또는 父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限한다.</p> <p>1. 18歲 미만인 者</p> <p>2. 18歲 이상인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者</p> <p>④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 當時의 胎兒는 이 法에 의한 給與에 있어서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p> | <p>4. <u>“유족(遺族)”이란 軍인이나 軍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依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의 경우 부양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 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p> <p>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p> <p>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p> <p>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p> <p>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p> <p>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p> <p>5. <u>“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軍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u></p> <p>6. <u>“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u></p> <p>② 제1항제4호의 규정 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상태(이하 “폐질 상태”라 한다)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p> <p>③ 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자녀는 부(父)가 없는 경우나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p> <p>1. 18세 미만인 자</p> <p>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 상태에 있는 자</p> <p>④ <u>軍인이나 軍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u></p> |

| 현행 | 정비안 |
|--|--|
| <p>第4條 (寄與金の返還) ①軍인이었던者로서 이 법에 <u>依한</u> 給與를 받을 權利가 없는 者 또는 그 遺族에 對하여는 그 軍인이 服務時 納付한 寄與金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を 合한 額을 返還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은 給與額이 寄與金總額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を 合한 額에 未達할 때에도 適用한다.</p> <p>제5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u>징수</u>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u>심사의</u>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u>심사의</u>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③제1항의 <u>규정에</u> 따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u>징수</u>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p> | <p>제4조 (기여금의 반환) ① 군인이었던 자로서 이 법에 <u>따른</u>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u>자나</u>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를 할 때에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② 제1항은 급여액이 기여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p> <p>제5조 (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u>징수와</u>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u>심사</u>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 <u>이내에</u>,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u>심사</u>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u>징수와</u>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p> |
| <p>第2章 給與</p> <p>第1節 通則</p> | <p>제2장 급여</p> <p>제1절 통칙</p> |
| <p>第6條 (給與의 種類) 給與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退役年金 2. 退役年金一時金 3. 退役年金控除一時金 4. 退職一時金 5. 삭제 6. 傷痍年金 7. 遺族年金 | <p>제6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역연금 2. 퇴역연금일시금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5. 상이연금 6. 유족연금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8. 遺族年金附加金 9. 遺族年金特別附加金 10. 遺族年金一時金 11. 遺族一時金 12. 삭제 13. 災害補償金 14. 死亡弔慰金 15. 災害扶助金 16. 退職手當 17. 公務上療養費</p> <p>第7條 (權利의 保護) 給與를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u>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機關에 擔保로 제공하거나, 이 법에 따른 基金의 貸付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한 貸付에 따라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u></p> <p>第8條 (時效) ①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된다. 다만, 死亡弔慰金·災害扶助金 및 公務上療養費의 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事由가 發生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② 삭제</p> <p>③寄與金返還을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된다.</p> <p>④戰時, 事變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第1項 및 第3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없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2年の 範圍內에서 그 時效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p> <p>第9條 (效力發生期間) 이 법에 依한 給與 또는 審査의 請求에 關한 期間計算에 있어서 그 書類가 時效完成前에 郵</p> | <p>7. 유족연금부가금 8. 유족연금특별부가금 9. 유족연금일시금 10. 유족일시금</p> <p>11. 재해보상금 12. 사망조위금 13. 재해부조금 14. 퇴직수당 15. 공무상요양비</p> <p>제7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른 기금의 대부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p> <p>제8조 (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p> <p>② 삭제</p> <p>③ 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p> <p>④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9조 (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을 하는 경우 그 서류가 시효가 완성되</p> |

| 현행 | 정비안 |
|---|---|
| <p>送된 <u>것인 때에는</u> 이에 所要된 日數는 그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p> | <p>기 전에 <u>우송된 것일 경우에는</u> 그에 필요한 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
| <p>第10條 (給與事由의 확인 및 給與의 決定) ① 각종 給與는 그 給與를 받을 權利를 가진 者가 當해 軍人이 소속하였던 軍의 參謀總長의 확인을 얻어 請求하는 바에 따라 國防部長官이 決定하여 지급하되,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傷痍年金, 第2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遺族年金 및 第30條의5의 規定에 의한 公務上療養費의 決定에 있어서는 軍人年金 給與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給여 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사망조위금·재해보상금, 軍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복무기간이 19년 6월 미만인 자의 퇴직수당과 제4조의 規定에 따라 반환하는 기여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軍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p> | <p>제10조 (給여사유의 확인과 給여의 결정) ① 각종 給여는 그 給여를 받을 權利를 가진 자가 해당 軍인이 소속하였던 軍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등의 결정을 할 때에는 軍인연금給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給여 중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사망조위금·재해보상금, 軍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미만인 자의 퇴직수당과 제4조에 따라 반환하는 기여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軍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급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상이연금 2.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3.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p> |
|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人年金給與審議會는 國防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 <p>② 제1항에 따른 軍인연금給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第11條 (支給事務의 委託) 國防部長官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給與의 支給에 關한 事務를 情報通信部長官·國家報勳處長 또는 金融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p> | <p>제11조 (지급사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給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이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
| <p>第12條 (遺族의 優先順位) 給與를 받을 遺族의 順位는 財産相續의 順位에 依한다.</p> | <p>제12조 (유족의 우선 순위) 給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p> |
| <p>第13條 (同順位者의 競合) 遺族에게 同順位者가 2人 以上 있을 때에는 그 給與는 等分하여 支給하되 支給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 <p>제13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에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給여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第14條 (給與의 受給者에 對한 特例)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死亡한 境遇에 給與를 받을 遺族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限度의 額을 그 直系卑屬 또는 直系尊屬에게 支給하고 直</p> | <p>제14조 (給여 수급자에 대한 특례) 軍인이나 軍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給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정비안 |
|--|---|
| <p><u>系卑屬 또는 直系尊屬도 없을 때에는 當該 軍人이었던 者를 爲하여 使用한다.</u> 第15條 (給與의 還收) ①國防部長官(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의 支給事務를 委託받은 國家報勳處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을 還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給與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 및 還收費用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還收金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가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방법으로 給與를 받은 경우 1의2, 제42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給與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 給與를 받은 후 그 給與의 사유가 遡及하여 消滅된 경우 기타 給與가 잘못 지급된 경우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收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滯納處分의 例에 의한다. ③國防部長官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를 還收함에 있어서 다음 各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缺損處分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缺損處分을 한 후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滯納處分이 종결되고 滯納額에 充當된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한 때 당해 권리에 대한 消滅時效가 완성된 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p>제15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軍인 또는 軍인이었던 자가 다음 各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給與(제30조의5의 規定에 의한 공</p> | <p>계비속이나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에는 그 軍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5조 (급여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제11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42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充當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5조의2 (미납금의 공제 후 지급) 軍인이나 軍인이었던 자가 다음 各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給與(제30조의5에</p> |

| 현행 | 정비안 |
|--|---|
| <p>무상요양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을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p> <p>2. 제16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p> <p>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p> <p>4.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p> <p>第16條 (服務期間의 計算) ①軍人の 服務期間은 그 任用된 날이 屬하는 달부터 退職한 날의 前日 또는 死亡한 날이 屬하는 달까지의 年月數에 依한다.</p> <p>②副士官으로부터 准士官 또는 將校로 任用된 者 및 准士官으로부터 將校로 任用된 者の 服務期間은 相互通算한다.</p> <p>③ 삭제</p> <p>④戰鬪에 從事한 期間은 이를 3倍로 計算한다.</p> <p>⑤이 法의 適用을 받은 軍人으로 任用되기 前의 「병역법」에 의한 現役兵 또는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의 服務期間(防衛召集·常勤豫備役召集 또는 補充役召集에 의하여 服務한 期間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服務期間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服務期間에 算入할 수 있다. 이 경우 服務期間을 算入하고자 하는 者는 服務期間算入申請書를 소속 軍參謀總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退職한 軍人·公務員 또는 私立學校 敎職員(「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제외한다)이 軍人으로 服務하게 된 때에는 本人이 願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年金法</p> | <p>다른 공무상요양비, 제32조의2에 따른 사망조위금과 제32조의3에 따른 재해부조금은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제15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p> <p>2. 제16조제6항·제7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p> <p>3. 제38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p> <p>4.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p> <p>제16조 (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일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의한다.</p> <p>② 부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와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서로 통산한다.</p> <p>③ 삭제</p> <p>④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p> <p>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자는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에 의한 服務期間 또는 在職期間을 第1項의 服務期間에 通算할 수 있다. 이 경우 通算을 받은 者는 退職 당시에 受領한 退職給與額[第33條 또는 「공무원연금법」 第64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第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額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給與額으로 한다]에 大統領令의 政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軍人연금기금에 返納하여야 한다. 다만, 服務期間의 通算을 인정받은 자가 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의 受給者인 경우에는 年金인 給與에 한하여 이를 返納하지 아니한다.</p> <p>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 또는 在職期間의 通算을 받고자 하는 者는 軍人으로서 任用된 날부터 2年 이내에 服務期間通算申請書를 소속 軍參謀總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返納하여야 할 退職給與額과 利子は 大統領令의 政하는 바에 따라 分割하여 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大統領令의 政하는 利子를 加算한다.</p> <p>⑧服務期間 計算에 있어서 19年 6月 이상 20年 미만 服務한 者의 服務期間은 20年으로 한다.</p> <p>⑨服務期間計算은 政府樹立의 年 以前에 遡及하지 못한다.</p> <p>⑩第4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된 期間 또는 第5項·第6項의 規定에 의한 服務期間은 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는 第1項의 服務期間에 이를 合算 또는 算入하지 아니한다.</p> <p>⑪退職手當 支給에 있어서의 服務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을 제외한 休職期間, 職位解除期間 및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の 1을 각각 減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公務上 疾病·負傷으로 인한 休職 2. 國際機構·外國機關·國內外大學 또는 國內外研究機關에 臨時採用됨으로 인한 休職 | <p>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33조나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軍人연금기금에 返納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만 返納하지 아니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으려는 자는 軍人으로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복무기간 통산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返納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p> <p>⑧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p> <p>⑨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을 한 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p> <p>⑩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가산된 기간이나 제5항·제6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퇴직수당 지급할 때에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⑪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

| 현행 | 정비안 |
|--|---|
| <p>2의2.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p> <p>3.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休職</p> <p>第17條 (年金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年金인 給與는 그 給與의 사유(제24조의 規定에 의한 傷痍年金等級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② 退役年金·傷痍年金 및 遺族年金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消滅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消滅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年金인 給與는 大統領令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p> <p>제17조의2 (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規定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u>증액 또는</u> 감액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군인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제2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퇴역연금, 제26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의 規定에</p> | <p>3.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한다)의 양육이나 여자군인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p> <p>4. 그 밖의 법률의 規定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p> <p>제17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24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② 퇴역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p> <p>제17조의2 (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u>증액하거나</u>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군인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21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는</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의한 공무상요양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p> <p>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군인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통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역 또는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p> <p>第18條의2 (年金支給의 特例) ①年金を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外國에 移民하게 된 때에는 本人의 願하는 바에 따라 年金에 같음하여 出國한 다음달을 基準으로 한 4년분의 年金에 相当하는 金額을 支給한다.</p> <p>②年金인 給與를 받을 權利가 있는 자가 國籍을 상실한 때에는 本人이 願하는 바에 따라 年金인 給與에 같음하여 國籍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基準으로 한 4년분의 年金에 相当하는 金額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p> <p>第19條 (給與의 調整) ①同一人에게 退役年金과 傷痍年金 또는 20年 미만 服務한 軍人の 死亡으로 인한 遺族年金과 遺族一時金を 支給할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本人에게 有利한 給與를 擇一하게 하여 支給한다.</p> <p>②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에게는 退職一時金を 支給하지 아니한다.</p> <p>③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던 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의 通算을 받았다가 다시 退職 또는 死亡한 경우에는 退役年金(退役年金控除一時金を 포함한다) 또는</p> | <p>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p> <p>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과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할 때에 군인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자가 제16조제6항에 따른 통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통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역 또는 퇴직 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p> <p>제18조의2 (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인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같음하여 출국한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인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같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p> <p>제19조 (급여의 조정) ①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p> <p>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에 따라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퇴역연금 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이나 유족연금</p> |

| 현행 | 정비안 |
|---|---|
| <p>遺族年金(遺族年金附加金を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u>退役年金一時金 또는 遺族年金一時金</u>을 받을 수 없다.</p> <p>④退役年金 또는 傷痍年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본인의 退役年金 또는 傷痍年金외에 遺族年金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遺族年金額의 2분의 1을 갈함하여 지급한다.</p> <p>第19條의2 (行方不明者등에 대한 退職給與) ①退職給與(退役年金·退役年金一時金·退役年金控除一時金 및 退職一時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年 이상 行方不明인 때에는 그의 財産相續人(第3條第1項의 遺族의 범위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이 될 者의 請求에 의하여 당해 退職給與를 그 請求人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에게 退役年金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하여도 行方不明된 者의 所在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退役年金額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減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請求人의 受給權의 상실에 관하여는 第29條를 準用한다.</p> <p>③行方不明되었던 者가 生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生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그 行方不明되었던 者에게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退役年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項에 따라 減額支給한 경우에는 그 減額支給한 기간중의 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에 大統領令의 정하는 利子를 加算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第19條의3 (다른 法律에 의한 給與와의 調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遺族年金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遺族年金額의 2분의 1을 갈함하여 지급한다.</p> | <p>(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u>퇴역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u>을 받을 수 없다.</p> <p>④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p> <p>제19조의2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제3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인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퇴역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수급권의 상실에 관하여는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에 관한 제29조를 준용한다.</p> <p>③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감액 지급한 기간 중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3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20條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國防部長官은 이 법에 <u>依한</u> 給與의 支給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에 對하여 身分上의 移動, 廢疾狀態 其他 給與에 關하여 必要한 書類 또는 物件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p> <p>②國防部長官은 이 법에 <u>의한</u> 給與 기타 年金制度의 적정한 運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公務員年金管理公團·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u> 所得 등의 <u>조사</u> 기타 軍人年金業務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u>응하여야</u> 한다.</p> <p>③第1項의 境遇에 給與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者에 對한 給與의 支給을 이에 應할 때까지 中止할 수 있다.</p> <p>第2節 退役年金 또는 退役年金一時金</p> | <p>제20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u>따른</u>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u>폐질 상태나 그 밖의</u>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u>따른</u> 급여나 기타 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u> 소득 등의 <u>조사와 그 밖에</u> 군인연금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장부·<u>서류와 그 밖의</u> 물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이에 <u>따라야</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 국민연금공단 5. <u>그 밖의 공공단체</u> <p>③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u>따르지</u>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u>따를</u>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p> <p>제2절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p> |
| <p>第21條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一時金) ①軍인이 20年 이상 服務하고 退職한 때에는 그 때부터 死亡할 때까지 退役年金を 支給한다. 다만, 本人이 願하는 때에는 退役年金에 갈음하여 退役年金一時金を 支給하거나, 20年(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던 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의 通算을 받은 者는 그 通算을 받은 服務期間)을 초과하는 服務期間중 本人이 願하는 期間에 대하여는 그 期間에 해당하는 退役年金에 갈음하여 退役年金控除一時金(이하 “控除一時金”이라 한다)</p> | <p>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u>제16조에 따라</u>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는 <u>그 통산을 받은</u>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p> |

| 현행 | 정비안 |
|--|--|
| <p>을支給할 수 있다.</p> <p>② 退職年金의 金額은 平均報酬月額의 100分の 50에 <u>상당하는 金額</u>으로 하되, 服務期間(控除一時金を支給받는 때에는 服務期間에서 控除一時金支給計算에 算入된 服務期間을 控除한 殘餘服務期間)이 20年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每 1年에 대하여 平均報酬月額의 100分の 2에 상당하는 金額을 <u>加算한 金額</u>으로 한다. 다만, 그 金額은 平均報酬月額의 100分の 76을 <u>초과하지</u> 못한다.</p> <p>③ 退職年金一時金の 金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服務年數(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の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金額의 100分の 150에 <u>상당하는 金額</u>에다 服務年數에서 5年을 控除한 年數의 每 1年에 대하여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の 1에 <u>상당하는 金額</u>을 <u>加算한 金額</u>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服務年數는 33年을 <u>초과하지</u> 못한다.</p> <p>④ 控除一時金の 金額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退職하는 軍人이 控除一時金計算에 算入할 것을 願하는 服務年數(이하 “<u>控除服務年數</u>”라 한다)를 곱한 金額의 100分の 150에 <u>상당하는 金額</u>에다 控除服務年數 每 1年에 대하여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控除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の 1에 <u>상당하는 金額</u>을 <u>加算한 金額</u>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控除服務年數는 13年을 <u>초과하지</u> 못한다.</p>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⑦ 退職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던 자가 第16條第6項의 <u>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 또는 在職期間을 通算받은 후 다시 退職하는 경우에 전의 退職당시의 給與額 算定の 기초가 된 報酬月額(軍人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換算한 金額을 말한다) 또는 平均報</u></p> | <p>급할 수 있다.</p> <p>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u>해당하는 金額</u>으로 하되,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 지급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u>뺀</u> 남은 복무기간)이 20년을 넘을 경우에는 그 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u>해당하는 金額</u>을 더한 金額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u>넘지</u> 못한다.</p> <p>③ 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u>해당하는 金額</u>에다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u>해당하는 金額</u>을 <u>더한 金額</u>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u>넘지</u> 못한다.</p> <p>④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u>공제복무연수</u>”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u>해당하는 金額</u>에다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u>해당하는 金額</u>을 <u>더한 金額</u>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u>넘지</u> 못한다.</p> <p>⑤ 삭제</p> <p>⑥ 삭제</p> <p>⑦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제6항에 <u>따른</u>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金額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정비안 |
|--|---|
| <p>酬月額(軍人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換算한 금액을 말한다)이 再任用후의 平均報酬月額보다 많을 때에는 退役年金의 金額은 再任用되기 전에 받은 退役年金·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에다 再任用후의 退職 당시의 報酬年額에 再任用후의 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 再任用 전후의 服務年數는 33年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21조의2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p> <p>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p> <p>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 : 100분의 10</p> <p>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p> <p>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p> <p>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p> <p>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p> <p>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p> | <p>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 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은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연액에 재임용후의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복무연수는 33年을 넘지 못한다.</p> <p>제21조의2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p> <p>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이나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p> <p><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p> <p>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 : 100분의 10</p> <p>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p> <p>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p> <p>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p> <p>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p> <p>③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과 수산업은 제외</p> |

| 현행 | 정비안 |
|---|---|
| <p>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3節 退職一時金</p> <p>第22條 (退職一時金) ①軍인이 20年未滿服務하고 退職한 때에는 退職一時金を支給한다.</p> <p>②服務期間이 5年 이상 20年未滿인 者의 退職一時金の 額은 退職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の 150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하되, 服務期間이 5年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每 1年에 대하여 退職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分の 1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한다.</p> <p>③服務期間이 5年미만인 者의 退職一時金の 額은 退職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服務年數를 곱한 金額의 100분의 120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한다.</p> <p>第22條의2 삭제</p> | <p>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퇴직일시금</p> <p>제22조 (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p> <p>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의 <u>년을</u> 경우에는 그 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p> <p>③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u>해당</u>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22조의2 삭제</p> |
| <p style="text-align: center;">第4節 傷痍年金</p> <p>第23條 (傷痍年金) ①軍인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廢疾狀態로 되어 退職한 때에는 그때부터 死亡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傷痍年金을 지급한다.</p> <p>1. 第1級은 報酬月額의 100분의 80에 相當하는 金額</p> <p>2. 第2級은 報酬月額의 100분의 75에 相當하는 金額</p> <p>3. 第3級은 報酬月額의 100분의 70에 相當하는 金額</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상이연금(傷痍年金)</p> <p>제23조 (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p> <p>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u>해당</u>하는 금액</p> <p>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u>해당</u>하는 금액</p> <p>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u>해당</u>하는 금액</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4. 第4級은 報酬月額의 100分の 65에 상당하는 금액</p> <p>5. 第5級은 報酬月額의 100分の 60에 상당하는 금액</p> <p>6. 第6級은 報酬月額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p> <p>7. 第7級은 報酬月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p> <p>②第1項의 級別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第2項의 傷痍等級의 決定에 있어서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에게 동시에 2 이상의 廢疾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廢疾을 併合處理한다.</p> <p>第24條 (傷痍等級의 改定등) ①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의 廢疾의 정도가 好轉되거나 惡화된 경우에 本人의 請求가 있거나 또는 國防部長官이 인정한 때에는 軍人年金給與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傷痍等級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國防部長官은 傷痍年金의 受給權者의 廢疾狀態 확인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身體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의 廢疾狀態가 第23條의 各級에 該當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權利는 消滅된다.</p> <p>③退役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傷痍年金의 支給을 받던 中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權利가 消滅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退役年金을 支給한다.</p> <p>④服務期間이 20年 未滿으로서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傷痍年金의 支給을 받지 못하게 된 境遇에 이미 支給받은 傷痍年金의 總額이 그 者가 退職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退職一時金の 額보다 적을 때에는 그 差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支給한다.</p> <p>⑤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給된 差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이를 退職一時金으로 본다.</p> | <p>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p> <p>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p> <p>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p> <p>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p> <p>② 제1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2항의 상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 <u>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질을 병합하여 처리한다.</u></p> <p>제24조 (상이등급의 개정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인연금여심회의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폐질 상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 상태가 제23조의 각 급(級)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그 권리는 소멸된다.</p> <p>③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제2항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한다.</p> <p>④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지급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일시금으로 본다.</p> |

| 현행 | 정비안 |
|--|---|
| <p>第25條 (傷痍年金の支給停止) 傷痍年金の支給停止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p> | <p>제25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제21조의2를 준용한다.</p> |
| <p>第5節 遺族給與</p> | <p>제5절 유족급여</p> |
| <p>第26條 (遺族年金) ①軍人 또는 軍인이었던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を 支給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退役年金を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2. 傷痍年金を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3. 公務上疾病 또는 負傷으로 因하여 服務中에 死亡한 때 <p>②第1項의 遺族年金の 額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軍人 또는 軍인이었던 者가 받을 수 있는 退役年金額 또는 傷痍年金額의 100分の 70에 相當하는 金額 2. 第1項第3號에 該當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軍人이 20年 未滿 服務한 者인 때에는 그 死亡當時의 報酬月額의 100分の 55에, 20年 以上 服務한 者인 때에는 報酬月額의 100分の 65에 相當하는 金額 <p>③ 삭제</p> | <p>제26조 (유족연금)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 중에 사망한 때 <p>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자이면 그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자이면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p>③ 삭제</p> |
| <p>第27條 삭제</p> | <p>제27조 삭제</p> |
| <p>第28條 (行方不明者에게 支給할 遺族年金) 遺族年金を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1年 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同順位者의 請求에 의하여,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行方不明된 期間에 해당하는 당해 年金を 同順位者 또는 次順位者에게 支給할 수 있다.</p> | <p>제2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따라, 같은 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따라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
| <p>第29條 (遺族年金の 受給權喪失) ①遺族年金を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權利를 喪失한다.</p> | <p>제2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1. 死亡한 때</p> <p>2. 再婚한 때(事實上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p> <p>3. 死亡한 軍人과의 親族관계가 終了된 때</p> <p>4.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程度의 廢疾狀態에 있지 아니한 子女 또는 孫子女가 18歲에 達한 때</p> <p>5.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程度의 廢疾狀態로 인하여 遺族年금을 받고 있던 者의 廢疾狀態가 解消된 때</p> <p>② 遺族年금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그 權利를 喪失한 때에 同順位者가 있을 때에는 그 同順位者에게,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에게 그 權利가 移轉한다.</p> | <p>1. 사망한 때</p> <p>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p> <p>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p> <p>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p> <p>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p> |
| <p>第29條의2 (遺族年金附加金) ① 軍人이 20年 이상 服務중 死亡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附加金을 支給한다.</p> <p>② 遺族年金附加金의 額은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準하여 計算한 金額의 4分の1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服務年數는 33年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遺族年金附加金의 支給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p> | <p>제29조의2 (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한다.</p> <p>②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넘지 못한다.</p> <p>③ 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 유족연금에 관한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p> |
| <p>第29條의3 (遺族年金一時金) ① 退役年금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軍服務중 死亡한 경우에 遺族이 願하는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과 遺族年金附加金에 같음하여 遺族年金一時金을 支給한다.</p> <p>② 遺族年金一時金의 金額에 關하여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③ 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遺族年金一時金의 支給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p> | <p>제29조의3 (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군복무 중 사망한 때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같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p> <p>②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퇴직연금일시금에 관한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족연금에 관한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p> |
| <p>第30條 (遺族一時金) ① 軍人이 20年 미만 服務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一時金을 支給한다.</p> <p>② 第1項의 遺族一時金의 金額에 關하여는 第2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p> | <p>제30조 (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퇴직일시금에 관한 제22조제2항</p> |

| 현행 | 정비안 |
|---|---|
| <p>用한다. ③ 삭제 ④第28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遺族一時金の 支給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30條의2 삭제 第30條의3 (遺族年金特別附加金) ① 退職年金 또는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20年 이상 服務한 者에 한한다)가 退職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年 이내에 死亡한 때에는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을 支給한다. ②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의 金額은 退職당시의 退職年金一時金(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年金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退職年金一時金を 말한다)에 相當하는 金額의 4分の 1에 다음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36-(第1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時까지 退職年金을 받을 수 있는 月數)]×1/36</p> <p>第5節의2 退職手當</p> <p>第30條의4 (退職手當) ① 軍인이 1年 이상 服務하고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手當을 支給한다. ② 第1項의 退職手當의 金額은 服務期間 1年에 대하여 報酬月額에 大統領令의 定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③ 退職手當 支給에 關하여는 第19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p> <p>第5節의3 公務上療養費</p> <p>第30條의5 (公務上療養費) ① 軍인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다음의 療養을 하는 때에는 公務上療養費를 支給할 수 있다. 1. 診斷 2. 藥劑·治療材 및 補綴具의 교부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p> | <p>및 第3항의 規定을 準용한다. ③ 삭제 ④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족연금에 관한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p> <p>제30조의2 삭제 제30조의3 (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직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20년 이상 복무한 자만 해당한다)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1/36</p> <p>제5절의2 퇴직수당</p> <p>제30조의4 (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에 관한 제19조의2를 준용한다.</p> <p>제5절의3 공무상요양비</p> <p>제30조의5 (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치료제 및 보철구(補綴具)의 교부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4. 病院 또는 療養所에의 收容 5. 看護 6. 移送</p> <p>②第1項의 公務上療養費는 동일한 疾病 또는 負傷에 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療養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p> <p>第30條의6 (療養機關) 第30條의5의 規定에 의한 療養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療養機關(이하 “療養機關”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p> <p>제30조의7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요양기관이 제30조의5의 規定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 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공무상 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p> <p>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의8 (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1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規定에 의한 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제1호 및 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 <p>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p> <p>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같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든 금액으로 한다.</p> <p>제30조의6 (요양기관)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p> <p>제30조의7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p> <p>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 기관과 위탁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의8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 |

| 현행 | 정비안 |
|--|---|
| <p>의의 요양에 <u>소요되는</u>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p> <p>第30條의9 (公務上療養費 지급의 特例) ①軍인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第30條의6의 規定에 의한 療養機關의의 醫療機關에서 第30條의5의 規定에 의한 療養을 받는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公務上療養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務上療養費의 算定에 관하여는 第30條의8의 規定을 準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6節 災害補償金</p> <p>第31條 (災害補償金) ①軍인이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을 당하거나 또는 死亡한 경우에는 災害補償金을 支給한다. ②第1項의 災害補償金의 額과 그 支給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32條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第6節의2 死亡弔慰金 및 災害扶助金</p> <p>第32條의2 (死亡弔慰金) ①軍人の 配偶者 또는 軍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u>경우에 한한다</u>)이 死亡한 때에는 <u>당해</u> 軍인에게 死亡弔慰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 <u>死亡弔慰金支給對象</u>이 되는 軍인이 2人 이상인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1人의 軍인에게 이를 支給하되, 扶養하던 軍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u>당해</u> 軍인에게 支給한다. ②軍인이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에게 死亡弔慰金을 支給하되, 配偶者가 없는 경우에는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支給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弔慰金은 <u>당해</u> 軍人の 報酬月額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弔慰金은 <u>당해</u> 軍人の 報酬月額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 <p>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p> <p>제30조의9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군인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0조의6에 따른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재해보상금</p> <p>제31조 (재해보상금) ①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보상금의 금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의2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p> <p>제32조의2 (사망조위금) ① 군인의 배우자나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u>경우로 한정한다</u>)이 사망한 때에는 <u>해당</u>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u>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u>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u>해당</u>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u>장제(葬祭)</u>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u>해당</u> 군인의 보수월액에 <u>상당</u>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u>해당</u> 군인의 보수월액의 3배에 <u>해당</u>하는 금액으로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32條의3 (災害扶助金) ①軍인이 水災·火災 기타 災害로 인하여 財産에 損害를 입은 때에는 報酬月額의 6倍에 相當하는 金額의 범위안에서 災害扶助金을 支給한다.</p> <p>②第1項의 災害의 범위와 그 災害의 정도별 扶助金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7節 給與의 制限</p> <p>第33條 (刑罰등에 의한 給與制限) ①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의 일부를 減額하여 지급한다.</p> <p>1. 服務중의 사유로 禁錮 이상의 刑을 받은 때</p> <p>2. 懲戒에 의하여 罷免된 때</p> <p>3. 급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p> <p>②服務중의 사유로 禁錮 이상의 刑에 處할 犯罪行爲로 인하여 搜查가 진행중 에 있거나 刑事裁判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給與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殘餘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지급한다.</p> <p>③『<u>형법</u>』 第2編第1章(內亂의 罪)·第2章(外患의 罪), 『<u>군형법</u>』 第2編第1章(叛亂의 罪)·第2章(利敵의 罪), 『<u>국가보안법</u>』(第10條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 以上の 刑을 받은 경우에 是 法에 의한 給與를 支給하지 아니 한다.</p> <p>④ 삭제</p> <p>第34條 (故意 또는 重過失등에 의한 給與制限) ①이 法의 被適用者로서 故意로 疾病, 負傷 또는 廢疾을 發生하게 하여 給與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取得한 者</p> | <p>제32조의3 (재해부조금) ① 군인이 수재·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급여의 제한</p> <p>제33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①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p> <p>1.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p> <p>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p> <p>3. 급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p> <p>②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u>형법</u>』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p> <p>2. 『<u>군형법</u>』 제2편제1장(반란의 죄) 및 제2장(이적의 죄)</p> <p>3. 『<u>국가보안법</u>』(제10조는 제외한다)</p> <p>④ 삭제</p> <p>제3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 제한) ① 이 법의 피적용자로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p> |

| 현행 | 정비안 |
|--|---|
| <p>에 대하여는 이 법에 <u>依한 一切의 給與</u>를 支給하지 아니한다.</p> <p>② <u>遺族給與</u>를 받을 수 있는 者가 <u>軍人, 軍人</u>이었던 者 또는 <u>遺族給與</u>를 받고 있는 者를 <u>故意로 死亡</u>하게 한 境遇에는 그 者에 對한 <u>遺族給與</u>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u>軍人</u> 또는 <u>軍人</u>이었던 者의 <u>死亡前</u>에 그 者의 <u>死亡</u>으로 因하여 <u>遺族給與</u>를 받을 수 있는 <u>同順位者</u>를 <u>故意로 死亡</u>하게 한 者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p> <p>③ 이 법에 <u>依한 給與</u>를 받을 수 있는 者가 <u>重大한 過失</u>에 依하거나 <u>正當한 事由</u>없이 <u>療養</u>에 關한 指示에 <u>不應함</u>으로써 <u>疾病, 負傷, 廢疾</u>을 發生하게 하거나 <u>死亡</u>하거나 또는 그 <u>疾病, 廢疾</u>의 程度를 <u>增進</u>하게 하거나 그 <u>回復</u>을 妨害하거나 또는 <u>故意로 疾病, 廢疾</u>의 程度를 <u>增進</u>하게 하거나 그 <u>回復</u>을 妨害한 境遇에는 <u>大統領令</u>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에 對한 給與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35條 (身體의 診斷不應에 依한 給與制限) 이 법에 依한 給與의 支給에 關하여 身體의 診斷을 받아야 할 境遇에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u>國防部長官</u>은 <u>大統領令</u>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에 對한 給與의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3章 基金과 費用負擔</p> <p>제36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 <p>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u>따른 모든</u>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u>군인</u>이나 <u>군인</u>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u>군인</u>이나 <u>군인</u>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u>같은 순위자</u>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③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그 질병 또는 폐질의 정도를 심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질병 또는 폐질의 정도를 심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5조 (신체의 진단불응에 따른 급여 제한)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p> <p>제36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급여(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③ 제16조제4항의 <u>규정에</u> 따라 <u>소요되는</u>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p>④ 연금업무에 <u>소요되는</u>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p>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u>충당하기 위하여</u>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p> <p>제3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u>있을 때에는</u>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p> <p>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p>④ 제3항의 <u>규정에</u>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차차년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p> <p>제37조의3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 <p>③ 제16조제4항에 따라 <u>드는</u>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p>④ 연금업무에 <u>드는</u>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p>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u>충당하기 위하여</u>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에 따른 기여금·부담금·보전금 및 책임준비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 4. 그 밖의 수입 <p>제3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u>있으면</u>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p> <p>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p>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차차년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p> <p>제37조의3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p> <p>2.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p> <p>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p> <p>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p> <p>제37조의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p> <p>1. 이 법에 따른 급여금·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p> <p>2.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p> <p>3.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p> <p>第38條 (寄與金) ①軍인은 每月 報酬月額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를 곱한 금액을 寄與金으로 국가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寄與金を 納付한 期間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第1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이 算入되는 者는 그 算入期間에 대하여 소속 軍參謀總長이 算入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當해 月分의 寄與金과 같은 金額의 遡及寄與金を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當해 軍인이 그 遡及寄與金の 納付도중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는 退職 또는 死亡 당시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殘餘遡及寄與金を 計算하여 이를 當해 退職 또는 遺族給與에서 控除한다.</p> <p>③ 삭제</p> <p>제38조의2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과납(過納)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39條 (負擔金) ①국가의 負擔金은 軍人の 定員에 依하여 每 會計年度의 그 報酬豫</p> | <p>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p> <p>2.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p> <p>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p> <p>제37조의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p> <p>1. 이 법에 따른 급여금·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p> <p>2.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p> <p>3.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p> <p>제38조 (기여금) ①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낸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6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소속 군 참모총장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개월분(個月分)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을 내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 또는 유족 급여에서 뺀다.</p> <p>③ 삭제</p> <p>제38조의2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과납(過納)되거나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더하거나 빼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 (부담금) ① 국가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따라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算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의 정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p> <p>제39조의2 (보전금)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p> <p>第40條 삭제</p> <p>第40條의2 (年金額의 移替)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受給權자가 軍人으로 任用되어 第16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의 通算을 받은 후 退職하거나 死亡한 때에는 公務員年金管理公團 또는 私立學校教職員年金管理公團은 그 退職者 또는 遺族(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給與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退職年金·早期退職年金 또는 遺族年金(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遺族年金附加金 및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移替하여야 한다. 이 경우 移替金額의 算定方法 및 移替期限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②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第 4 章 補則</p> <p>第41條 (다른 法令에 依한 給與와의 調整) ①다른 法令에 依하여 국가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이 법에 依한 給與와 同類의 給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者에게는 그 給與金에 相當하는 額에 對하여는 이 법에 依한 給與를 支給하지 아니한다.</p> | <p>1,000분의 85의 범위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p> <p>제39조의2 (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p> <p>제40조 삭제</p> <p>제40조의2 (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14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②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보칙</p> <p>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②國防部長官은 第3者의 <u>행위로 인하여</u> 給與의 사유가 발생하여 給與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給與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의 <u>범위안에서</u> 受給權者가 第3者에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한다. 다만, 第3者가 <u>당해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公務遂行중의 軍人인 경우에는 軍人年金給與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損害賠償請求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③第2項의 受給權者가 第3者로부터 <u>동일한 사유로 인하여</u>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그 賠償額의 <u>범위안에서</u> 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第41條의2 삭제</p> <p>제42조 (신고사항) 제21조의2제1항(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금지급정지사유, 제26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사실, 제29조의 연금수급권상실사유 및 제33조의 급여제한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第43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 <p>②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u>행위로</u>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금액의 <u>범위에서</u>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u>그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③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u>같은 사유로</u>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u>범위에서</u>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41조의2 삭제</p> <p>제42조 (신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의2제1항(제2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금 지급정지 사유 2. 제26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29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3조의 급여제한 사유 <p><삭 제></p> |

○ 『**군인복지기금법**』 **현행** · **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36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u>軍人福祉基金法</u></p> | <p><u>군인복지기금법</u></p> |
| <p>第1條 (目的) 이 법은 軍의 福祉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軍人福祉 基金을 設置· 運用함으로써 軍人등의 生活安定과 國軍의 戰力向上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p> |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軍 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施設을 말한다.</p> |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
| <p>1. 國防部本部 및 各軍에서 운영하는 9 홀 以上 골프장</p> <p>2. 國防部 및 各軍에서 운영하는 福祉 會館· 休養所 및 콘도미니엄</p> <p>3. 各軍에서 운영하는 免稅店</p> <p>4. 기타 國防部長官이 지정하는 施設</p> | <p>1. 국방부 본부와 각군에서 운영하는 9 홀 이상 골프장</p> <p>2. 국방부와 각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휴양소 및 콘도미니엄</p> <p>3. 각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p> <p>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p> |
| <p>第3條 (基金의 設置) 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軍人福祉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p> | <p>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
| <p>第4條 (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p> | <p>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
| <p>1. 軍 福祉施設 및 體育施設(이하 “福祉 施設”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收入金</p> <p>2. 國家외의 者가 福祉施設의 사용· 收益許可를 받아 납부한 使用料</p> <p>3. 다른 會計 및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p> <p>4. 基金增殖事業에 의한 收入金</p> <p>5.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p> <p>6. 基金財産의 賣却代金, 金融機關에의 預託利子등 기타의 收入金</p> | <p>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p> <p>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p> <p>3.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p> <p>4. 기금 증식사업에 의한 수입금</p> <p>5. 제5조에 따른 차입금</p> <p>6. 기금재산의 매각대금과 금융기관에의 예탁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p> |
| <p>第5條 (借入金) ①國防部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다른 基金으로부터 借入(一時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p> | <p>제5조 (차입금)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償還하여야 한다.</p> <p>第6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福祉施設의 유지 및 관리 2. 基金의 造成 및 그 관리·運用 3. 軍人 및 軍務員의 子女에 대한 獎學事業의 지원 4. 軍人에 대한 貸付 5. 大統領令이 정하는 軍人士氣振作에 필요한 사업 6. 豫備役 軍人의 軍事研究活動의 지원 7. 金融機關에의 預託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福祉施設의 新設 및 增設 <p>第7條 (基金의 管理 및 運用) ①基金은 國防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p> <p>②基金은 企業會計의 원칙에 의하여 計理한다.</p> <p>第8條 (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p> <p>第9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國防部長官은 基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p> <p>②第1項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任命은 國防部長官의 所屬官署에 設置된 職位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攄할 수 있다.</p> <p>③ 삭제</p> <p>第10條 (基金計定の 設置) 國防部長官은 韓國銀行에 軍人福祉基金計定을 設置한다.</p> <p>第11條 (權限의 위임) 國防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밖에 의하여 基金의 管理·運用에 관한 事務의 一部를 各軍參謀總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 <p>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 3.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4. 군인에 대한 대부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 6.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 활동의 지원 7. 금융기관에의 예탁과 제5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설 <p>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p> <p>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計理)한다.</p> <p>제8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수입징수관 2. 기금재무관 3. 기금지출관 4. 기금출납공무원 <p>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攄할 수 있다.</p> <p>③ 삭제</p> <p>제10조 (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p> <p>제11조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밖에 따라 基金의 管理·운용에 관한 사무의 一部를 各軍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

【군사 시설·보안·기밀 관계 법률】

○ 『軍需品管理法』 현행·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5645호]

| 현행 | 정비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軍需品管理法</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u>物品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u> 軍需品の 管理에 관한 基本的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軍需品の 效率의이며 適正한 管理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軍需品”이라 함은 <u>物品管理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中 國防部 및 그 直轄機關(이하 “國防官署”라 한다)과 육·해·공군(이하 “各軍”이라 한다)에서 管理하는 物品을 말한다.</u></p> <p>第3條 (軍需品の 區分) 軍需品은 大統領령이 定하는 바에 <u>의하여 戰備品과 通常品으로 區分한다.</u></p> <p>第4條 (準用法規) 軍需品の 管理에 관하여는 이 법에 規定하는 것 외에 <u>物品管理法 第7條·第9條第3項·第10條 내지 第12條·第26條 내지 第28條·第30條·第32條 내지 第34條·第36條·第42條 및 第4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軍需品の 管理機關과 統制</p> <p>第5條 (管理事務의 統制) 國防部長官은 國防官署와 各軍의 所管에 속하는 軍需品の 管理에 관한 制度와 事務를 統制한다.</p> <p>第6條 (管理機關) ①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그 所管에 속하는 軍需品</p> | <p style="text-align: center;">군수품관리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u>물품관리법</u>』 제3조에 따라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軍需品)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u>물품관리법</u>』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과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p> <p>제3조 (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u></p> <p>제4조 (준용 법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u>물품관리법</u>』 제7조,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p> <p>제5조 (관리사무의 통제)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p> <p>제6조 (관리기관)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을 管理한다.</p> <p>②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公務員 또는 다른 國防官署나 軍 또는 다른 中央官署의 소속 公務員에게 그 所管에 속하는 軍需品の 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任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官署의 長 또는 各軍參謀總長으로부터 軍需品 管理에 관한 事務의 委任을 받은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이라 한다.</p> <p>第 7 條 (管理事務의 分任과 代理)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物品管理官이 事故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公務員 또는 다른 國防官署나 軍 또는 다른 中央官署의 소속 公務員에게 그 物品管理官의 事務를 代理하게 하거나 그 一部를 分掌하게 할 수 있다.</p> <p>第 8 條 (軍需品出納事務등의 委任特例)</p> <p>①物品管理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物品管理法 第10條와 第11條의 規定에 準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部隊나 軍 또는 國防官署의 소속 公務員中에서 物品出納公務員 또는 物品運用官을 指定하여 그 管理하는 軍需品の 出納 또는 사용에 관한 事務를 委任할 수 있다.</p> <p>②物品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物品出納公務員 또는 物品運用官이 事故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物品出納公務員이나 物品運用官이 소속하는 部隊나 軍 또는 國防官署의 소속 公務員에게 物品出納公務員 또는 物品運用官의 事務를 代理하게 하거나 物品出納公務員의 事務의 一部를 分掌하게 할 수 있다.</p> <p>第 9 條 (物品管理公務員의 財政保證과 資格) 物品管理官·物品出納公務員 및 物品運用官과 그 分任者 또는 代理者에</p> | <p>품을 관리한다.</p> <p>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방관서,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수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라 한다.</p> <p>제 7 조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국방관서,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p> <p>제 8 조 (군수품 출납사무 등의 위임 특례)</p> <p>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준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p> <p>제 9 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과 자격)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나</p> |

| 현행 | 정비안 |
|--|---|
| <p>대한 財政保證과 資格에 관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3章 軍需品の 管理</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通則</p> <p>第10條 (管理轉換) ①物品管理官은 軍需品の 效率的인 사용과 處分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國防官署의 長 또는 軍參謀總長의 承認을 얻어 그 管理하는 軍需品을 다른 物品管理官의 所管으로 管理의 轉換(이하 “管理轉換”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軍需品은 그 承認을 요하지 아니한다.</p> <p>②國防部長官 이외의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다른 中央官署와의 管理轉換에 대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軍需品을 제외하고는 미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③物品管理法 第22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需品을 管理轉換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節 獲得</p> <p>第11條 (獲得) 軍需品の 獲得에 관하여는 物品管理法 第28條의 規定에 準하는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3節 出納</p> <p>第12條 (出納) ①物品管理官은 軍需品을 出納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物品出納公務員(分任物品出納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出納하여야 할 軍需品의 內容을 明白히 하여 그 出納을 命하여야 한다.</p> | <p>대리자에 대한 재정보증과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군수품의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제10조 (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이나 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p> <p>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 외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획득</p> <p>제11조 (획득) 군수품의 획득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8조를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출납</p> <p>제12조 (출납)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출납하게 하려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사무를 위임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②物品出納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 한 命令이 없이는 軍需品을 出納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4節 處分</p> <p>第13條 (不用의 決定 등) ①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u>사용의 必要性이</u> 없어진 軍需品(이하 “不要品” 또는 “剩餘品”이라 한다) 또는 國防官署나 各軍의 豫測할 수 있는 將來의 需要를 초과하는 <u>在庫가 있는 軍需品(이하 “超過品”이라 한다)中 管理轉換에 의하여 適切한 處分을 할 수 없는 軍需品이 있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修理의 價値가 없는 軍需品(이하 “사용不能品”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軍需品에 대하여 不要品(剩餘品)·超過品 또는 사용不能品등의 決定(이하 “不用의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軍需品에 대하여는 物品管理官이 그 決定을 할 수 있다.</u></p> <p>②國防部長官 <u>이외의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 한 不用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미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③國防官署의 長·各軍參謀總長 또는 物品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用의 決定을 한 軍需品中 <u>賣却하는 것이 國家에 不利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賣却할 수 없는 軍需品이 있을 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u></p> <p>第14條 (貸與) ①國防官署의 長·各軍參謀總長 또는 物品管理官은 軍需品の 製造·修理 기타 施工契約으로 軍需品을 貸與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이를 貸與할 수 있다. 國防官署 또는 各軍의 運營이나 作戰에 특별한 支障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u>無償 또는 有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u></p> | <p>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이는 군수품을 출납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처분</p> <p>제13조 (불용의 결정 등)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u>사용 필요성이</u> 없어진 군수품(이하 “불용품” 또는 “잉여품”이라 한다)이나 국방관서나 각군의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u>재고(在庫)가 있는 군수품(이하 “초과품”이라 한다) 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경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이하 “사용불능품”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품(잉여품)·초과품 또는 사용불능품등의 결정(이하 “불용의 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u></p> <p>② 국방부장관 <u>외의</u>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매각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p> <p>제14조 (대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이를 대여할 수 있으며,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u>무상이나 유상으로</u> 대여할 수 있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②國防部長官 <u>이외의</u> 國防官署의 長·各軍參謀總長 또는 物品管理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需品을 貸與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防部長官 <u>이외의</u>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은 外國軍과의 聯合訓練 및 作戰 기타 聯合任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 各號의 軍需品에 대하여는 미리 貸與하고 事後에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을 수 있다. 다만, 主要完成裝備 및 主要編制裝備의 初度補給修理附屬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食糧 2. 油類 3. 彈藥 4. 被服 및 裝具類 5. 修理附屬品 및 構成品 <p>第15條 (讓渡) 第14條의 規定은 軍需品을 國家 <u>이외의</u> 者에게 無償 또는 有償으로 讓渡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第16條 (交換) 國防官署의 長·各軍參謀總長 또는 物品管理官은 그 所管에 속하거나 管理하는 軍需品을 國家 <u>이외의</u> 者가 所有하는 物品과 交換할 수 없다. <u>그러나</u>, 國防官署 또는 各軍의 運營이나 作戰 또는 國家의 事業에 특히 有利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交換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5節 在庫調查와 調整</p> <p>第17條 (在庫調查) 物品管理官은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定期的으로 그 管理하는 軍需品에 대하여 在庫調查를 하여야 한다.</p> <p>第18條 (在庫調整) 物品管理官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查를 한 결과 발견된 在庫의 增減으로서 事務上 錯誤 또는 이에 準하는 事由에 인한 것에 대하여</p> | <p>② 국방부장관 <u>외의</u> 국방관서의 장, 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u>대여하려면</u>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경우 <u>외에는</u>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u>외의</u>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외국군과의 연합 훈련 및 작전과 그 밖의 연합 임무를 수행할 때에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미리 대여하고 사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요 완성 장비와 주요 편제 장비 <u>중 맨 처음 보급한 수리부속품</u>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량 2. 유류 3. 탄약 4. 피복(被服) 및 장구류(裝具類) 5. 수리부속품 및 구성품 <p>제15조 (양도) 제14조는 군수품을 국가 <u>외의</u>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6조 (교환) 국방관서의 장, 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u>외의</u>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u>다만</u>,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p> <p>제17조 (재고 조사) 물품관리관은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u> 정기적으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p> <p>제18조 (재고 조정) 물품관리관은 제17조에 <u>따른</u> 조사를 한 결과 재고의 증가 또는 감소가 확인된 경우로서 그것이 사무상의 착오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말미암</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정비안 |
|---|---|
| <p>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調整하여야 한다.</p> <p>第19條 (在庫調整에 대한 事後承認) 物品管理官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第20條 (價格調整) 物品管理官은 在庫品에 대하여 價格變動의 事由가 생겼을 때에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庫品の 價格을 調整하여야 한다.</p> <p>第21條 (사용장비품의 減價償却) 國防部長官은 使用中의 軍裝備品の 適正한 現在額을 算定하기 위하여 使用中인 裝備品에 대한 減價償却制度를 정할 수 있다.</p> | <p>은 것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調整(調整)을 하여야 한다.</p> <p>제19조 (재고 조정)에 대한 사후 승인) 물품관리관은 제18조에 따라 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0조 (가격 조정) 물품관리관은 재고품에 대하여 가격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품의 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p> <p>제21조 (사용장비품의 감가상각) 국방부장관은 사용중의 군장비품의 적정한 현재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장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정할 수 있다.</p> |
| <p>第6節 自然減耗와 損亡失處理</p> | <p>제6절 자연감모(自然減耗)와 망실(亡失)·훼손 처리</p> |
| <p>第22條 (自然減耗) ①自然減耗로 整理할 수 있는 軍需品の 범위와 그 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國防部長官은 그 所管에 속하는 軍需品에 自然減耗가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院長官과 監査院에 통보하여야 한다.</p> <p>第23條 (損亡失處理) 物品管理官은 그 管理하는 軍需品으로서 亡失 또는 毀損된 것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調整하여야 한다.</p> | <p>제22조 (자연감모) ①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그 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 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3조 (망실·훼손 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으로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調整)하여야 한다.</p> |
| <p>第7節 軍需品の 官給</p> | <p>제7절 군수품의 관급(官給)</p> |
| <p>第24條 (官給品에 대한 危險保證) 契約擔當公務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相對方으로 하여금 그 官給된 軍需品の 亡失 또는 毀損의 危險에 대한 필요한 保證措置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第25條 (官給品の 收得率) 官給하는 軍需品에 대하여는 適量의 損耗를 인정하며 製造·修理 또는 施工後의 收得率에 관</p> | <p>제24조 (관급품에 대한 위험 보증) 계약 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그 관급된 군수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에 대한 필요한 보증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5조 (관급품의 수득률)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한 양의 손모(損耗: 써서 닳아져 없어짐)를 인정하며 제조·</p> |

| 현행 | 정비안 |
|--|--|
| <p>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軍需品管理의 特例</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軍援供與品</p> <p>第26條 (軍援供與品) 50年 1月 26日 <u>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相互防衛援助協定에 의하여 美合衆國으로부터 無償으로 供與를 받는 軍需品과 기타 外國으로부터 無償으로 供與를 받는 軍需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당해 協定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法을 準用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節 戰時特例</p> <p>第27條 (戰時特例) <u>戰時 또는 事變(이하 “戰時”라 한다)에 있어서의 軍需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u></p> <p>第27條의2 (軍需品讓渡 및 交換의 特例) <u>外國軍과의 聯合訓練 및 作戰 기타 任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軍需品의 讓渡 및 交換에 따라 支給받은 代金은 外國軍에게 제공된 物品과 동일한 物品의 購買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責任</p> <p>第28條 (物品管理公務員의 責任) ① <u>物品管理官·物品運用官과 그 分任者 또는 代理者는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任務에 違背하여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國家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辨償의 責任을 진다.</u></p> <p>② <u>物品出納公務員과 그 分任者 또는 代理者는 그 保管에 속하는 軍需品을 亡失 또는 毀損한 경우에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證明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辨償의 責任을 진다.</u></p> | <p>수리 또는 시공 후의 <u>수득률(收得率)</u>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군사원조 공여품(供與品)</p> <p>제26조 (군사원조에 따른 공여품) 1950년 1월 26일 『<u>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u>』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供與)를 받는 군수품과 <u>그 밖에</u>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를 받는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이 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전시 특례</p> <p>제27조 (전시 등의 특례) <u>전시·사변 시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u></p> <p>제27조의2 (군수품 양도 및 교환의 특례) <u>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과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할 때에 군수품의 양도 및 교환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代金)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구매에만 직접 사용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물품 관리 및 사용 공무원의 책임</p> <p>제28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① <u>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과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나 대리자는 그 직무를 할 때에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u></p> <p>② <u>물품출납공무원과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나 대리자는 그가 보관하는 군수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u></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29條 (物品사용公務員등의 責任) 軍需品을 사용하거나 그 貸與를 받은 公務員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그 사용하거나 貸與받은 軍需品을 亡失 또는 毀損한 때에는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辨償의 責任을 진다.</p> | <p>제29조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그 대여를 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군수품을 망실하거나 손한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p> |
| <p>第6章 記錄과 보고</p> | <p>제6장 기록과 보고</p> |
| <p>第30條 (帳簿의 備置) 物品管理官·物品出納公務員과 物品運用官은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帳簿를 備置하고 필요한 事項을 記錄하여야 한다.</p> | <p>제30조 (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帳簿)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p> |
| <p>第31條 (物品增減과 現在額 보고) 國防部長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通常品에 대하여는 國防官署와 各軍別로 每 會計年度에 있어서의 增減과 每 會計年度末의 現在額의 報告書를 作成하여 다음年度 3月 31日까지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31조 (물품 증감과 현재액 보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상품(通常品)에 대하여는 국방관서와 각군별로 매 회계연도의 증가 및 감소와 매 회계연도말의 현재액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p>第7章 監査와 計理制度</p> | <p>제7장 감사와 계리제도</p> |
| <p>第32條 (監査) 國防部長官과 各軍參謀總長은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定期 또는 隨時로 軍需品の 管理에 관한 監査를 하여야 한다.</p> | <p>제32조 (감사) 국방부장관과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p> |
| <p>第33條 (計理制度) 國防部長官은 國防官署의 長과 各軍參謀總長으로 하여금 그 所管에 속하는 軍需品の 增減과 現在額을 把握하게 함에 필요한 計理制度를 定할 수 있다.</p> | <p>제33조 (계리제도)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증가 및 감소와 현재액을 파악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계리제도(計理制度)를 마련할 수 있다.</p> |
| <p>第8章 補則</p> | <p>제8장 보칙</p> |
| <p>第34條 (이 法을 準用하는 物品) 第2條에 規定한 軍需品 <u>의외의</u> 物品으로서 國防官署와 各軍이 保管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法을 準用하되 그 <u>범위 기타</u> 필요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제34조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2조에 서 규정한 군수품 <u>외의</u> 물품으로서 국방관서와 각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되, 그 <u>범위와 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第35條 (適用排除) ①戰備品에 대하여는 國防部長官의 責任으로 檢査를 實施하며 監査院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②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써 獲得한 軍需品과 기타 大統領령으로 정한 物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一部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36條 (施行令) 이 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 <p>제35조 (적용 배제) ① 전비품(戰備品)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책임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감사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삭 제></p> |

○ 『군사시설보호법』 현행 · 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3. 5. 15. 법률 6870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u>軍事施設保護法</u></p> | <p><u>군사시설 보호법</u></p> |
| <p>第1條 (目的) 이 법은 중요한 軍事施設을 보호하고 軍作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家安全保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u>軍事施設</u>”이라 함은 <u>陸地·障礙物 기타 軍事目的에 직접 供用되는 시설</u>을 말한다.</p> <p>2. “<u>軍事施設保護區域</u>”이라 함은 軍事施設을 보호하고 軍作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國防部長官이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정하는 區域을 말한다.</p> <p>3. “<u>民間人統制線</u>”이라 함은 고도의 軍事活動保障이 요구되는 軍事分界線에 인접한 지역에서 軍作戰상 民間人の 출입을 統制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이 軍事分界線의 南方에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정하는 線을 말한다.</p> <p>4. “<u>管轄部隊長</u>”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作戰責任과 그 地域안에 설정된 軍事施設保護區域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部隊의 長을 말한다.</p> <p>5. “<u>管理部隊長</u>”이라 함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管轄部隊長의 作戰責任地域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指揮系統이 달라 당해 地域의 管轄部隊長과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軍事施設保護區域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部隊의 長을 말한다.</p> <p>第3條 (軍事施設保護區域의 구분) 軍事施設保護區域(이하 “<u>保護區域</u>”이라 한</p> | <p>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u>이바지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군사시설</u>”이란 <u>진지(陸地), 장애물과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쓰이거나 쓰기 위하여 준비되는 시설</u>을 말한다.</p> <p>2. “<u>군사시설 보호구역</u>”이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에 따라 설정하는 區域을 말한다.</p> <p>3. “<u>민간인통제선</u>”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의 <u>남방(南方)</u>에 제4조에 따라 설정하는 선을 말한다.</p> <p>4. “<u>관할부대장</u>”이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작전책임과 그 <u>지역에</u>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u>보호하고 관리</u>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p> <p>5. “<u>관리부대장</u>”이란 제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u>작전책임지역</u>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그 지역의 관할부대장과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p> <p>제3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u>보호구역</u>”이라 한</p> |

| 현행 | 정비안 |
|---|--|
| <p>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p> <p>1. 統制保護區域:고도의 軍事活動保障이 요구되는 軍事分界線에 인접한 地域과 기타 중요한 軍事施設의 機能保全이 요구되는 區域</p> <p>2. 制限保護區域:軍作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地域과 기타 軍事施設의 보호 또는 地域住民의 안전이 요구되는 區域</p> <p>第4條 (保護區域등의 설정등) ①國防部長官은 合同參謀議長의 建議에 따라 保護區域 또는 民間人統制線(이하 “民統線”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國防部長官은 軍事施設의 철거, 作戰環境의 변화 기타의 사유로 第1項에 의한 保護區域 또는 民統線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統線은 第4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안에 설정하되, 軍事分界線의 南方 15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軍事分界線 隣接地域:軍事分界線의 南方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設定한다.</p> <p>가. 統制保護區域:民統線以北地域. 다만, 統一政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地域, 聚落地域, 安保觀光施設地域등으로서 大統領令의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制限保護區域으로 設定할 수 있다.</p> <p>나. 制限保護區域:民統線以南地域. 다만, 중요한 軍事施設이 있는 地域은 당해 軍事施設의 最外廓境界線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統制保護區域으로 設定할 수 있으며, 중요한 軍事施設이 없거나 軍 作戰상 障礙가 되지</p> | <p>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p> <p>1.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그 밖의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機能保全)이 요구되는 구역</p> <p>2. 제한보호구역: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그 밖의 군사시설의 보호나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p> <p>제4조 (보호구역 등의 설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合同參謀議長)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설정한 민통선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와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민통선은 제4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 설정하되, 군사분계선의 남방 1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군사분계선의 남방 25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p> <p>가. 통제보호구역: 민통선 이북 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p> <p>나. 제한보호구역: 민통선 이남 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그 군사시설의 가장 외곽의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아니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制限保護區域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2. 第1號외의 地域:軍事施設의 最外廓境界線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保護區域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統制保護區域은 당해 軍事施設의 最外廓境界線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 및 民統線의 설정은 軍事施設保護와 軍事目的의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p> <p>⑥國防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이나 民統線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⑦國防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이나 民統線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第5條 (軍事施設保護區域審議委員會)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p> <p>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p> <p>2. 국방부장관 소관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p> <p>3. 다른 법률에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p> <p>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작전책임 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p> | <p>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2. 제1호 외의 지역: 군사시설의 가장 외곽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그 군사시설의 가장 외곽의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p> <p>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5 조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p> <p>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둔다.</p> <p>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p> <p>2. 국방부장관 소관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위탁</p> <p>3. 다른 법률에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p> <p>4.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작전책임 지역이나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p> |

| 현행 | 정비안 |
|--|--|
| <p>속하에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둔다.</p> <p>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의 건의</p> <p>2. 보호구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허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p> <p>3.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애의 위탁</p> <p>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 6 條 (保護區域등의 標識) 國防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 또는 民統線을 설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護區域 또는 民統線의 설정사실, 관할부대장등,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處罰의 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民統線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이 官報에 告示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第 7 條 (保護區域 또는 軍事施設에의 出入許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區域 또는 施設안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管轄部隊長등 또는 駐屯地部隊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軍 作戰상 障礙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統制保護區域</p> <p>2. 울타리 또는 出入統制標札이 설치된 部隊駐屯地</p> <p>第 8 條 (保護區域안에서의 금지사항) 保護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p> | <p>속하에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둔다.</p> <p>1. 보호구역 및 민통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의 건의</p> <p>2. 보호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허가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p> <p>3.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의 위탁</p> <p>4.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6 조 (보호구역 등의 표지)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통선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표지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p> <p>1.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 사실</p> <p>2. 관할부대장등</p> <p>3. 제한 또는 금지 사항</p> <p>4.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p> <p>5.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제 7 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통제보호구역</p> <p>2.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p> <p>제 8 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保護區域의 標識나 出入統制標札의 移轉 또는 損壞</p> <p>2. 軍事施設의 촬영·描寫·錄取·測量 및 이에 관한 文書나 圖畫등의 發刊 또는 複製. 다만,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公共事業을 위하여 미리 管轄部隊長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統制保護區域안에서의 住宅 기타 구조물의 新築 또는 增築.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管轄部隊長등이 軍事活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9條 (退去의 強制등) 管轄部隊長등(第7條第2號의 경우에는 駐屯地部隊長을 포함한다)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區域 또는 시설 안에 出入하거나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2號 또는 第3號의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행위로 인한 障礙物에 대하여는 退去의 強制, 障礙物의 제거 기타 軍事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第10條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등) ①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保護區域안에서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許可,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등과 協議하여야 한다.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保護區域의 보호·관리 및 作戰活動에 지장이 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道路·鐵道·橋梁·運河·터널·水路등과 그 附屬工作物의 설치 또는 변경</p> <p>2. 河川 또는 海面의 埋立과 浚渫 및 港灣의 築造 또는 변경</p> | <p>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진(移轉) 또는 손괴(損壞)</p> <p>2.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圖畫) 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통제보호구역에서의 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 (퇴거의 강제 등) 관할부대장등(제7조제2호의 경우에는 주둔지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나 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나 그 밖에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p> <p>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築造) 또는 변경</p> |

| 현행 | 정비안 |
|---|--|
| <p>3. 統制保護區域 및 制限保護區域안에서 <u>의 住宅 기타 구조물의 新築 또는 增築</u>. 다만, 統制保護區域안에서는 第8條第3號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4. 通信施設의 설치 및 그 사용</p> <p>5. 鑛物·土石 또는 土砂의 採取</p> <p>6. 造林 또는 林木의 伐採</p> <p>7. 土地의 開墾 또는 地形의 변경</p> <p>②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협의를 요청 받은 관할부대장등이 이를 <u>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第11條 (保護區域協議業務의 委託등) ① <u>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등은 大統領令으로</u> 정하는 일정한 保護區域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委託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業務의 범위와 委託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2條 (飛行禁止區域 및 對空防禦協助區域의 지정등) ① 國防部長官은 軍事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區域을 航空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飛行禁止區域(이하 “飛行禁止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그 區域을 飛行禁止區域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飛行禁止區域을 변경 또는 解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③ 國防部長官은 일정한 區域이 對空防禦作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을 對空防禦協助區域(이하 “對空協助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이 경우 國</p> | <p>3. 통제보호구역 및 <u>제한보호구역에서</u>의 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제8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p> <p>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p> <p>5.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p> <p>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p> <p>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p> <p>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이 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1조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u>국방부장관이나</u> 관할부대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5조에 따른 소관 군사시설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 (비행금지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항공법 제54조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防部長官은 미리 당해 區域의 都市計劃을 立案 또는 決定하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對空協助區域안에서 地表面으로부터 大統領令의 정하는 일정높이 이상의 建築物 기타 構造物의 設置에 관한 許可·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第13條 (施設管理의 협조) ①管轄部隊長 등은 軍이 常駐하지 아니하는 軍事施設(保護區域밖에 있는 施設을 포함한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警察署長에게 그 施設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警察署長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第14條 (罰則) ①軍事施設을 損壞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p> <p>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15條 (罰則)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2號의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6條 (罰則)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3號의 행위를 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7條 (罰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區域 또는 施設안에 出入하거나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1號의 행위를 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8條 (外國軍의 軍事施設에의 적용) 이 법은 憲法에 規定된 절차에 따라 大韓民國에 駐留하는 外國軍의 軍事施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p> | <p>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그 구역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이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3조 (시설관리의 협조) ① 관할부대장 등은 군이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제14조 (벌칙) ①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15조 (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6조 (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7조 (벌칙)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8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현행·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46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1條 (目的) 이 법은 國防·軍事施設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원활한 事業遂行을 도모하며 國土의 合理的 이용과 國民의 財産權 보장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3.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4. 진지(陣地)구축시설 5.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部隊)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p>②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p>③이 법에서 “土地등”이라 함은 土地와 다음 각號의 물건이나 權利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土地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2. 土地와 함께 國防·軍事施設事業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立木·建物 기타 土地에 定着한 물건 및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3.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4. 진지(陣地) 구축 시설 5.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部隊) 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p>②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p>③ 이 법에서 “토지등”이란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임목·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3. 鑛業權 및 漁業權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p> <p>4. 土地에 속한 土石 또는 砂礫</p> <p>第3條 (事業施行者) 國防·軍事施設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者는 國防部長官·國防部所屬機關長(國防部 直轄部隊長을 포함한다)·陸軍參謀總長·海軍參謀總長 및 空軍參謀總長과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軍事施設事業을 행하는 者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로 한다.</p> <p>1. 地方自治團體</p> <p>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p> <p>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을 施行하는 者</p> <p>4. 그 밖에 國防·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p> <p>第4條 (實施計劃의 승인) ①事業施行者가 國防·軍事施設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實施計劃을 變更하거나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變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事業의 公益性, 位置의 適正性 및 實施計劃의 妥當性등을 檢討하여야 한다.</p> <p>第5條 (協議 및 告示등) ①國防部長官이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을 승인</p> | <p>3. 광업권과 어업권이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p> <p>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자갈</p> <p>제 3 조 (사업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p> <p>1. 국방부장관</p> <p>2.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부 대장을 포함한다)</p> <p>3.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p> <p>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행하는 자</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p> <p>가. 지방자치단체</p> <p>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p> <p>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p> <p>라.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 <p>제 4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p> <p>1. 사업의 공익성</p> <p>2. 위치의 적정성</p> <p>3. 실시계획의 타당성</p> <p>제 5 조 (협의 및 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p> |

| 현 행 | 정 비 안 |
|---|---|
| <p>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關係法令에서 協議의 權限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事業施行者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할 수 있다.</p> <p>②國防部長官은 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告示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 중 軍事保安에 抵触되는 사항은 이를 省略하거나, 다른 적절한 用語로 대체할 수 있다.</p> <p>④國防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그 實施計劃을 事業地域을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⑤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p>第6條 (收用 및 사용) ①事業施行者는 實施計劃의 告示區域안에서 國防·軍事施設事業에 필요한 土地등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適用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適用함에 있어서 이 법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은 이를 동법</p> | <p>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협의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고시를 할 때에 그 내용 중 군사보안에 抵触되는 사항은 省略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p> <p>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⑤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p>제6조 (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고, 이 法の 規定에 의한 告示는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告示로 보며, 裁決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施計劃에 정한 施行期間 내에 하여야 한다.</p> <p>第7條 삭제</p> <p>第7條의2 (寄附 및 讓與의 特例) ①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軍事施設事業의 施行者로 지정된 者가 기존의 國防·軍事施設의 移轉을 위하여 새로이 設置한 國防·軍事施設은 이를 國家에 寄附할 수 있다.</p> <p>②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존 國防·軍事施設의 代替施設을 寄附한 者에게 그 機能이 대체되어 用途廢止된 雜種財産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讓與할 수 있다.</p> <p>第8條 삭제</p> <p>第9條 (移住宅地의 讓渡) 제2조제2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移住民의 移住對策事業으로 造成한 宅地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移住民에게 隨意契約으로 讓渡할 수 있다.</p> | <p>에 따른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p> <p>제7조 삭제</p> <p>제7조의2 (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은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p> <p>제8조 삭제</p> <p>제9조 (이주택지의 양도)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양도할 수 있다.</p> |

○ 『**군사기밀보호법**』 **현행** · 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5. 7. 22. 법률 제7613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軍事機密保護法</u></p> <p>第 1 條 (目的) 이 법은 軍事상의 機密(이하 “<u>軍事機密</u>”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國家安全保障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 2 條 (定義) 이 법에서 “<u>軍事機密</u>”이라 함은 一般人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軍關聯 文書·圖畫·電子記錄等 特殊媒體記錄 또는 물건으로서 <u>軍事機密</u>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告知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p> <p>第 3 條 (軍事機密的 구분) ①軍事機密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級秘密, II級秘密, III級秘密로 等級을 구분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事機密의 等級區分에 관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 4 條 (軍事機密的 指定原則 및 指定權者) ①軍事機密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最低等級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軍事機密의 等級別 指定權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 5 條 (軍事機密的 보호조치) ①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軍事機密에 대하여 軍事機密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軍事機密의 표시 또는 告知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軍事機密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소재</p> | <p style="text-align: center;"><u>군사기밀 보호법</u></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機密)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u>군사상의 기밀</u>”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u>군사상의 기밀</u>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p> <p>제 3 조 (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상의 기밀(이하 “<u>군사기밀</u>”이라 한다)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4 조 (군사기밀의 지정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5 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u>군사기밀</u>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를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를 은폐하는 등 軍事機密의 보호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② 軍事機密을 관리 또는 취급하는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軍事機密의 보호를 위하여 軍事保護區域을 설정할 수 있다.</p> <p>③ 軍事機密의 관리·취급·표시·告知 기타 軍事機密의 보호조치와 軍事保護區域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 6 條 (軍事機密의 解除) 軍事機密을 지정한 者는 軍事機密로 지정된 사항이 軍事機密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解除하여야 한다.</p> <p>第 7 條 (軍事機密의 公開) 國防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事機密을 公開할 수 있다.</p> <p>1. 國民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p> <p>2. 公開함으로써 國家安全保障에 顯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p> <p>第 8 條 (軍事機密의 제공 및 설명) 國防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事機密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p> <p>1.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軍事機密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가 있는 때</p> <p>2. 軍事外交상 필요한 때</p> <p>3. 軍事에 관한 條約 기타 國際協定에 의하여 外國 또는 國際機構의 요청이 있는 때</p> <p>4. 技術開發·學問研究등을 目的으로 研究機關등의 요청이 있는 때</p> <p>第 9 條 (公開要請) ① 모든 國民은 軍事機密의 公開를 國防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文書로써 요청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要請에 따른 軍事機密의 公開에 관하여는 第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事機密의 公開要請 및 처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p> | <p>그 소재를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 설정할 수 있다.</p> <p>③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6 조 (군사기밀의 해제)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제 7 조 (군사기밀의 공개) 國防부장관이 나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p> <p>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p> <p>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p> <p>제 8 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國防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p> <p>1.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가 있는 때</p> <p>2. 군사외교상 필요한 때</p> <p>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때</p> <p>4. 기술개발과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때</p> <p>제 9 조 (공개 요청) ①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國防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요청과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p> |

| 현행 | 정비안 |
|---|---|
| <p>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0條 (軍事機密의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①軍事機密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告知 기타 軍事機密의 보호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②軍事機密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軍事機密을 損壞·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해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1條 (探知·蒐集) 軍事機密을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探知하거나 蒐集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12條 (누설) ①軍事機密을 探知 또는 蒐集한 者가 이를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우연히 軍事機密을 알게 되거나 占有한 者가 그 情을 알면서도 이를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3條 (業務상 누설) ①業務상 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 또는 취급하였던 者가 그 業務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占有한 軍事機密을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의 規定하는 者외의 者가 業務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占有한 軍事機密을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14條 (業務상 과실누설) 過失로 인하여 第13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5條 (外國을 위한 罪에 관한 加重處罰) 外國을 위하여 第11條 내지 第13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處罰한다.</p> <p>第16條 (申告·제출의 불이행) ①軍事機密을 보관하는 者가 이를 紛失하거나 盜難당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p> | <p>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고지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11조 (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探知)하거나 수집(蒐集)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2조 (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3조 (업무상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나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규정하는 자 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4조 (업무상 과실 누설) 과실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5조 (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p> <p>제16조 (신고·제출의 불이행) ①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所屬機關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軍事機密을 拾得하거나 他人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占有한 者가 搜查機關이나 軍部隊로부터 提出要求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17條 (軍事保護區域 侵入 등) ①軍事保護區域을 侵入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軍事保護區域을 侵入하여 軍事機密을 竊취한 者 또는 軍事機密을 損壞·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해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18條 (未遂犯) 第11條 내지 第13條, 第15條 및 第1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19條 (自首減免) 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p> <p>第20條 (資格停止) 이 법에 規定된 罪에 關하여 懲役刑을 宣告할 때에는 그 刑의 長期 이하의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p> <p>第21條 (國際聯合軍 및 外國에서 제공받은 機密등에의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駐屯하고 있는 國際聯合軍의 機密, 國軍과 聯合作戰을 遂行하고 있는 外國軍의 機密 및 軍事에 關한 條約 기타 國際協定등에 의하여 外國으로부터 제공받은 機密로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軍事機密에 해당하는 것에 關하여도 적용한다.</p> <p>第22條 (檢事の 搜查指揮 등) ①軍事法院 法 第43條第2號 및 同法 第46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軍司法警察官吏는 이 법에 規定된 犯罪에 關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者와 그職務範圍에 關한法律이</p> | <p>을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점유한 자가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7조 (군사보호구역의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절취한 자나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18조 (미수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19조 (자수 시의 형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p> <p>제20조 (자격정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長期)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p> <p>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의 적용)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밀로서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2.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 <p>제22조 (검사의 수사지휘 등)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p> |

| 현행 | 정비안 |
|---|---|
| <p>정하는 바에 따라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하는 者는 軍刑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被疑者(이하 “被疑者”라 한다)의 犯罪를 搜查함에 있어서는 미리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하며, 檢事의 職務상 발한 命令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檢事의 指揮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指揮를 받아야 한다.</p> <p>③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被疑者에 대한 不法拘束의 유무를 調査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檢事로 하여금 管下 軍搜查機關의 被疑者의 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며, 監察하는 檢事는 被疑者를 審訊하고 拘束에 관한 書類를 調査할 수 있다.</p> <p>④檢事는 被疑者가 不法으로 拘束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被疑者에 관한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 <p>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균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p> <p>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監察)하게 할 수 있으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자세히 따져서 물어보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p> <p>④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

【비상·방위 관계 법률】

○ 「계엄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6. 10. 4. 법률 제8021호]

| 현행 | 정비안 |
|---|---|
| <p>第1條 (目的) 이 법은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 및 解除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戒嚴의 種類와 宣布) ①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p> <p>②非常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敵과 交戰狀態에 있거나 社會秩序가 극도로 攪亂되어 行政 및 司法機能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軍事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p> <p>③警備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社會秩序가 攪亂되어 一般行政機關만으로는 治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p> <p>④大統領은 戒嚴의 種類·施行地域 또는 戒嚴司令官을 變更할 수 있다.</p> <p>⑤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⑥國防部長官 또는 內務部長官은 第2項 또는 第3項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戒嚴의 宣布를 建議할 수 있다.</p> <p>第3條 (戒嚴宣布의 公告) 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할 때에는 그 理由·種類·施行日時·施行地域 및 戒嚴司令官을 公告하여야 한다.</p> <p>第4條 (戒嚴宣布의 通告) ①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通告하여야 한다.</p> | <p>제1조 (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p> <p>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p> <p>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p> <p>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p> <p>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⑥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p> <p>제3조 (계엄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조 (계엄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②第1項의 경우에 國會가 閉會중인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의 集會를 要求하여야 한다.</p> <p>第5條 (戒嚴司令官 및 戒嚴司令部) ①戒嚴司令官은 現役將官級將校중에서 國防部長官이 추천한 者를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p> <p>②戒嚴司令官의 戒嚴業務를 施行하기 위하여 戒嚴司令部를 두고 戒嚴司令官은 戒嚴司令部의 長이 된다.</p> <p>③戒嚴司令官은 戒嚴地域이 2個의 道(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職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地區戒嚴司令部와 地區戒嚴司令部의 職務를 補助하는 地域戒嚴司令部를 둘 수 있다.</p> <p>④戒嚴司令部의 職制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6條 (指揮·監督) ①戒嚴司令官은 戒嚴의 施行에 관하여 國防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다만, 全國을 戒嚴地域으로 하는 경우와 大統領이 직접 指揮·監督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의 指揮·監督을 받는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戒嚴司令官을 指揮·監督함에 있어서 國策에 관계되는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第7條 (戒嚴司令官의 管掌事項) ①非常 戒嚴의 宣布와 동시에 戒嚴司令官은 戒嚴地域안의 모든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한다.</p> <p>②警備戒嚴의 宣布와 동시에 戒嚴司令官은 戒嚴地域안의 軍事에 관한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한다.</p> <p>第8條 (戒嚴司令官의 指揮·監督) ①戒嚴地域안의 行政機關(情報 및 保安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司法機關은 지체없이 戒嚴司令官의 指揮·監督을 받아야 한다.</p> <p>②戒嚴司令官이 戒嚴地域안의 行政機關 및 司法機關을 指揮·監督함에 있어서</p> | <p>② 제1항의 경우에 國會가 폐회 중인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 없이 國會의 集會를 要求하여야 한다.</p> <p>제5 조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p> <p>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p> <p>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의 도(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하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p> <p>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제6 조 (지휘·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大統領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국책(國策)]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7 조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항) ①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司法事務)를 관장한다.</p> <p>② 계엄사령관은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p> <p>제8 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p> <p>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에 그</p> |

| 현행 | 정비안 |
|---|--|
| <p>그 地域이 1個의 行政區域에 局限될 때에는 당해 區域의 最高責任者를 통하여, 2個이상의 行政區域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區域의 最高責任者 또는 主務部處의 長(法院의 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p> <p>第9條 (戒嚴司令官의 特別措置權) ①非常戒嚴地域안에서 戒嚴司令官은 軍事上 필요한 때에는 逮捕·拘禁·押收·搜索·居住·移轉·言論·出版·集會·結社 또는 團體行動에 대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戒嚴司令官은 그 措置內容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p> <p>②非常戒嚴地域안에서는 戒嚴司令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員 또는 徵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軍需에 供할 物品의 調査·登錄과 搬出禁止를 命할 수 있다.</p> <p>③非常戒嚴地域안에서는 戒嚴司令官은 作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國民의 財産을 破壞 또는 燒燬할 수 있다.</p> <p>④계엄사령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國民의 財産을 파괴 또는 소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①제9조제3항의 規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正當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交戰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국방부장관은 보상금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 <p>지역이 한 개의 행정구역에 한정될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나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p> <p>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하거나 징발(徵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에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p> <p>③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불에 태워 없앨 수 있다.</p> <p>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불에 태워 없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 (재산을 파괴하거나 불에 태워 없앤 것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正當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交戰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u>파괴 또는 소훼</u>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조사서·확인서·사진 등 <u>증빙</u>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보상금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9 조의3 (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손실액의 산정은 <u>파괴 또는 소훼</u>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9 조의4 (보상제외) <u>파괴 또는 소훼</u>로 인한 재산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때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p> <p>제 9 조의5 (공탁) 국방부장관은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제출하지 <u>아니함</u>으로 인하여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u>지원</u>에 공탁하여야 한다.</p> <p>제 9 조의6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u>시효</u>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p> <p>第10條 (非常戒嚴下の 軍事法院裁判權) ①非常戒嚴地域안에 있어서는 第14條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者는 軍事法院에서 裁判한다. 다만, 戒嚴司令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管轄法院으로 하여금 이를 裁判하게 할 수 있다.</p> <p>1. 內亂의 罪 2. 外患의 罪</p> | <p>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을 <u>파괴</u>하거나 태워 없앴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확인서·사진 등 <u>증명</u> 서류 및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보상금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9 조의3 (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손실액의 산정은 <u>재산을 파괴하거나 불에 태워 없앴</u>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9 조의4 (보상 제외) <u>파괴하거나 불에 태워 없앴</u> 재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p> <p>제 9 조의5 (공탁) 국방부장관은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제출하지 <u>아니하여</u>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u>지원(支院)</u>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p> <p>제 9 조의6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u>시효(時效)</u>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p> <p>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 있어서는 제14조의 <u>벌칙 사항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u>해당</u>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p> <p>1. 내란의 죄 2. <u>외환(外患)</u>의 죄</p> |

| 현행 | 정비안 |
|--|---|
| <p>3. 國交에 관한 罪 4. 公安을 害하는 罪 5. 爆發物에 관한 罪 6. 公務妨害에 관한 罪 7. 放火의 罪 8. 通貨에 관한 罪 9. 殺人の 罪 10. 強盜의 罪 11.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 12.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東法에 規定된 罪 13. 軍事상 필요에 의하여 制定한 法令에 規定된 罪 ②非常戒嚴地域안에 法院이 없거나 당해 管轄法院과의 交通이 遮斷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모든 刑事事件에 대한 裁判은 軍事法院이 이를 行한다.</p> <p>第11條 (戒嚴의 解除) ①大統領은 第2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되거나 國會의 戒嚴解除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戒嚴을 解除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大統領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戒嚴을 解除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③國防部長官 또는 內務部長官은 第2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事態가 平常회복된 때에는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戒嚴의 解除를 建議할 수 있다.</p> <p>第12條 (行政·司法事務의 平常化) ①戒嚴이 解除된 날로부터 모든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는 平常狀態로 復歸한다. ②非常戒嚴施行중 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軍事法院에 係屬중인 裁判事件의 管轄은 非常戒嚴解除와 동시에 一般法院에 속한다. 다만, 大統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軍事法院의 裁判權을 1月 이내에 한하여 延期할 수 있다.</p> <p>第13條 (國會議員의 不逮捕特權) 戒嚴宣布중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p> | <p>3. 國交(國交)에 관한 罪 4. 公安(公安)을 害치는 罪 5. 폭발물에 관한 罪 6. 公務(公務) 방해에 관한 罪 7. 방화(放火)의 罪 8. 통화(通貨)에 관한 罪 9. 살인의 罪 10. 강도의 罪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罪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罪 13. 군사상 필요에 따라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罪 ② 비상계엄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p> <p>제11조 (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시의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p> <p>제12조 (행정·사법 사무의 정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의 해제와 동시에 일반 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p> <p>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14條 (罰則)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戒嚴司令官의 指示나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戒嚴司令官의 措置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違反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②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당해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④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 <p>제14조 (벌칙)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④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p> |

○ 『徵發法』 현행 · 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7. 3. 29. 법률 제8319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徵發法</u></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非常事態下에서 軍作戰遂行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 (用語의 定義) ①이 법에서 “徵發官”이라 함은 徵發令狀을 發付하여 이를 執行하게 할 수 있는 權限이 있는 者를 말한다.</p> <p>②이 법에서 “徵發執行官”이라 함은 徵發令狀에 依하여 徵發을 執行하는 者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徵發 및 解除</p> <p>제 3 조 (징발관) ①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으로 된다.</p> <p>②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第4條 (徵發執行官) 徵發執行官은 徵發目的物의 所在地 또는 所有者·占有者의 居住地를 管轄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市長·郡守 또는 警察署長이 된다. 다만, 軍作戰上 부득이한 경우에는 徵發官이 現役 將校중에서 命할 수 있다.</p> <p>第5條 (徵發目的物) ①徵發目的物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動産·不動産 및 權利로 區分하며, 動産은 이를 다시</p> | <p style="text-align: center;"><u>징발법</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 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補償)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징발관(徵發官)”이란 징발영장(徵發令狀)을 발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p> <p>2. “징발집행관”이라 함은 징발영장에 따라 징발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징발 및 해제</p> <p>제 3 조 (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p> <p>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 4 조 (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 목적물의 소재지나 소유자·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징발집행관을 명할 수 있다.</p> <p>제 5 조 (징발 목적물) ① 징발 목적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이를 다시</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消耗品인 動産과 非消耗品인 動産으로 區分한다.</p> <p>1. 消耗品인 動産</p> <p>가. 食糧·食料品·飲料水</p> <p>나. 醫藥品</p> <p>다. 建築 및 築城用材</p> <p>라. 化學用品</p> <p>마. 燃料</p> <p>바. 通信用品</p> <p>사. 기타 軍作戰上 緊要한 消耗性品</p> <p>2. 非消耗品인 動産</p> <p>가. 船舶·航空機·車輛 기타의 輸送 機器 및 그 附屬品</p> <p>나. 醫療機器 및 그 附屬品</p> <p>다. 印刷機器 및 그 附屬品</p> <p>라. 通信機器 및 그 附屬品</p> <p>마. 被服製造加工機器 및 그 附屬品</p> <p>바. 建築機器 및 그 附屬品</p> <p>사. 動物</p> <p>아. 기타 軍作戰上 緊要한 施設, 設備 等 非消耗性品</p> <p>3. 不動産</p> <p>가. 土地</p> <p>나. 建物</p> <p>다. 工作物</p> <p>4. 權利</p> <p>軍作戰上 緊要한 特許權 및 기타 大統 領수으로 정하는 財産에 관한 權利</p> <p>② 삭제</p> <p>第 6 條 (從物) 徵發目的物의 從物은 目的 物과 함께 徵發할 수 있다.</p> <p>第 7 條 (徵發執行節次) ①徵發官이 徵發 을 하하고자 할 때에는 徵發令狀을 발행 하여 徵發執行官에게 交付하고 이를 執 行하게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發令狀을 받 은 徵發執行官은 徵發執行通知書를 徵 發目的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 者(이하 “被徵發者”라 한다)에게 交付 하여야 한다.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電 信을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p> | <p>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p> <p>1. 소모품인 동산</p> <p>가. 식량·식료품·음료수</p> <p>나. 의약품</p> <p>다. 건축 및 축성용재(築城用材)</p> <p>라. 화학용품</p> <p>마. 연료</p> <p>바. 통신용품</p> <p>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꼭 필요한 소 모성 물품</p> <p>2. 비소모품인 동산</p> <p>가. 선박·항공기·차량이나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p> <p>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p> <p>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p> <p>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p> <p>마. 피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p> <p>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p> <p>사. 동물</p> <p>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꼭 필요한 시 설·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p> <p>3. 부동산</p> <p>가. 토지</p> <p>나. 건물</p> <p>다. 공작물</p> <p>4. 권리</p> <p>군 작전상 꼭 필요한 특허권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p> <p>② 삭제</p> <p>제 6 조 (종물) 징발목적물의 종물(從物) 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p> <p>제 7 조 (징발 집행절차) ① 징발관이 징 발을 하려는 때에는 징발영장(徵發令 狀)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내주어 집행하게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 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피징발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징발관으로부터 제8조에 따라 전신 (電信)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③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당해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이 교부될 때까지 징발집행관을 경유하여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8條 (遠隔地徵發 등) ①徵發官은事態가 急迫하여 徵發令狀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遠隔地이어서 徵發令狀이 필요한 期日內에 到達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電信으로 徵發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p> <p>②徵發執行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信을 받은 때에는 즉시 徵發을 執行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경우에는 徵發官은 그 徵發을 執行하게 한 후 지체없이 徵發令狀을 발행하여 徵發執行官에게 交付하여야 한다.</p> <p>第9條 (徵發目的物提出義務) ①被徵發者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徵發執行通知書를 받은 때에는 그 目的物을 指定期日內에 指定場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不動産과 權利인 徵發目的物에 있어서는 指定期日內에 徵發執行官에게 引繼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發目的物의 제출 또는 引繼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庫의 負擔으로 한다.</p> <p>第10條 (徵發目的物의 貸與·讓渡 또는 原狀變更의 制限) 徵發目的物은 徵發執行通知書가 交付된 날로부터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發官에게 引繼完了될 때까지에는 徵發官의 許可없이 이를 貸與 또는 讓渡하거나 그 原狀을 變更하지 못한다.</p> <p>第11條 (徵發物引受證) 徵發執行官은 徵發目的物의 제출이 있거나 그 引繼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被徵發者에게 徵發物引受證을 交付하고 당해 徵發目的物을 徵發官에게 引繼하여야 한다.</p> | <p>③ 제2항에 따라 징발집행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징발 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징발 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이 교부될 때까지 징발집행관을 경유하여 징발관에게 그 정정(訂正)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8조 (원격지 징발 등)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징발 집행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9조 (징발 목적물의 제출 의무) ① 피징발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목적물을 지정기일 내에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징발목적물은 지정기일 내에 징발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징발 목적물의 제출 또는 인계에 드는 비용은 국고(國庫)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0조 (징발 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장 변경의 제한) 징발 목적물은 징발 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가 끝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장(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p> <p>제11조 (징발물 인수증)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인계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피징발자에게 징발물 인수증을 내주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12條 (徵發證交付 등) ①徵發官이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發執行官으로부터 徵發目的物을 受領한 때에는 大統領令의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形狀·課稅基準·價格 기타 필요한 事項을 調査하고 그에 대한 徵發證을 그 被徵發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p> <p>②징발관은 제7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정정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 <p>제12조 (징발증 교부 등)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形狀(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피징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내주어야 한다.</p> |
| <p>第13條 (徵發報告) 徵發執行官은 徵發令狀의 執行結果를 徵發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13조 (징발 보고) 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 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p>第14條 (原狀回復) 徵發物은 消耗品인 것을 제외하고는 原狀을 維持하여야 하며, 徵發解除로 인하여 被徵發者에게 返還할 때에는 原狀으로 返還하여야 한다. 다만, 被徵發者가 原狀回復을 願하지 아니하거나 滅失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原狀回復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 <p>제14조 (원장 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原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 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장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장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장 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p> |
| <p>第15條 (徵發解除) ①徵發官은 徵發物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滅失된 때에는 지체없이 徵發을 解除하여야 한다.</p> <p>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삭제</p> | <p>제15조 (징발 해제) ① 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② 피징발자는 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삭제</p> |
| <p>第16條 (解除節次) ①徵發官이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發을 解除할 때에는 徵發解除通知書와 徵發解除證을 발행하여 徵發執行官에게 交付하고 徵發物을 被徵發者에게 返還하게 한다. 다만, 徵發物의 滅失로 인하여 그 返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返還不能通知書를 발행하여 交付하게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發執行官이 徵發物을 被徵發者에게 返還할 때에는 徵發解除證을 交付하여야 한다.</p> | <p>제16조 (해제 절차) 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내주고 징발물을 피징발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을 할 수 없으면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내주어야 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③徵發官은 徵發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直接 被徵發者에게 徵發解除證을 交付하고 이를 返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徵發官은 지체없이 徵發執行官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p> <p>④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徵發物의 返還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庫의 負擔으로 한다.</p> <p>第17條 (徵發目的物의 事前調査) ①國防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發目的物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p> <p>②누구든지 正當한 이유없이 第1項의 調査를 拒否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p> <p>第18條 (強制執行의 制限) 徵發物에 대한 強制執行은 徵發物의 사용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限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p> | <p>③ 징발관은 징발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피징발자에게 징발해제증을 내주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7조 (징발 목적물의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 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p> <p>제18조 (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
| <p>第3章 徵發物에 대한 補償</p> | <p>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p> |
| <p>第19條 (補償) ①消耗品인 動産을 徵發한 때에는 正當한 代價를 被徵發者에게 補償한다.</p> <p>②非消耗品인 動産 또는 不動産을 徵發한 때에는 正當한 使用料를 支給한다.</p> <p>③第14條 但書의 경우, 被徵發者에게 損失이 있을 때에는 이를 補償한다. 다만, 그 損失이 天災·地變·戰爭 기타 不可抗力의 事由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④權利를 徵發한 때에는 第2項에 準한다.</p> <p>⑤第2項과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는 每 使用年度分을 그 翌年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은 徵發이 解除되는 날로부터 2年 이내에 支給한다. 다만, 補償金支給이 遲延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法定利率 이상 利率에 의한 利子를 加算하여 支給하여야 한다.</p> | <p>제19조 (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피징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상(補償)한다.</p> <p>② 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징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p> <p>③ 제14조 단서에 따른 징발물의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징발자에게 손실이 있으면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④ 권리를 징발한 경우에는 제2항의 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징발에 준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p> <p>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20條 (補償除外) 徵發物이 國有 또는 公有財産인 때에는 第19條의 規定에 不구하고 補償을 하지 아니한다.</p> | <p>제20조 (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의 보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p> |
| <p>第21條 (補償基準) ①徵發物에 대한 使用料는 當해 使用年度의 課稅標準을, 기타의 補償은 徵發解除 당시의 課稅標準을 基準으로 하여 정한다.</p> <p>②第1項에 있어서 補償基準이 되는 課稅標準은 大統領令으로 指定한다.</p> | <p>제21조 (보상기준)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그 밖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p> <p>② 제1항에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p> |
| <p>第22條 (보상시행공고등) ①國防部長官은 徵發物에 대한 補償을 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의 범위와 日時, 補償의 請求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告期間은 10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②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 <p>제22조 (보상 시행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보상의 청구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p> |
| <p>第22條의2 (補償金の 支給) ①徵發財産에 대한 補償金은 現金으로 支給하되 國家의 財政形便上 不得已한 경우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徵發補償證券(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支給할 수 있다. 다만, 補償金額 또는 그 端數가 證券의 額面價額 미만인 경우에는 現金으로 支給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으로 支給하는 경우에는 10年의 범위안에서 期間을 정하여 一時 또는 分割 償還하여야 하며, 償還金에 대한 利率과 償還金の 支給節次 및 證券의 額面價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償還金에 대한 利率은 法定利率 이상으로 한다.</p> | <p>제22조의2 (보상금의 지급) 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단수(端數)가 증권액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금에 대한 이율과 상환금의 지급절차 및 증권의 액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한다.</p> |
| <p>제22조의3 (補償金の 支給節次) ①第22條 第2項 또는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徵發補償金支給通知書를 받은 被徵發者는 現金補償의 경우에는 當해 通知書를 國防部長官에게 제출하고 國防部長官으로부터 現金을 支給받으며, 證券補償의</p> | <p>제22조의3 (보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p> |

| 현행 | 정비안 |
|--|---|
| <p>경우(第22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現金補償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通知書를 韓國銀行에 제출하고 韓國銀行으로부터 證券을 交付받거나 現金을 支給받는다.</p> <p>② 한국은행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대장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비치하고 나머지 1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22조의4 (공탁) ① 被徵發者가 現金 또는 證券의 受領을 拒否하거나 大統領令의 정하는 期間내에 第22條第2項 또는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徵發補償金 支給通知書를 國防部長官 또는 韓國銀行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被徵發者에게 現金 또는 證券을 支給 또는 交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現金 또는 證券을 공탁관에게 供託하여야 한다. 이 경우 現金補償인 때에는 國防部長官이, 證券補償인 때(第22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現金補償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韓國銀行이 供託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에 대하여도 第1項과 같다.</p> <p>제22조의5 (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p> <p>제22조의6 (준용규정)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第22條의2 내지 第22條의5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國채법을 준용한다.</p> <p>第23條 (補償請求權의 消滅時效) 補償請求權은 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公告期間滿了日로부터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p> | <p>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 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p> <p>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하거나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2부의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갖추어 두고 나머지 1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p> <p>제22조의4 (공탁) ① 피징발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징발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하거나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현금 또는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인 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p> <p>제22조의5 (증권의 소각)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p> <p>제22조의6 (발행 증권에 대한 「국채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規定에 따르는 것 외에는 「국채법」을 준용한다.</p> <p>제2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정비안 |
|---|---|
| <p>第24條 (補償審議會) ①補償料率의 <u>査定</u>과 그 <u>調整</u>을 하게 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徵發補償審議會를 둔다.</p> <p>②第1項의 徵發補償審議會의 <u>構成과 運營</u>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補償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徵發補償審議會에 그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徵發補償審議會는 再審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再審決定을 하여야 한다.</p> <p>④第3項의 <u>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u></p> | <p>제24조 (보상심의회) ① 보상 요율의 <u>사정(査定)과 그 조정(調整)을 하기</u>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징발보상심의회의 <u>구성·운영과 그 밖의</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그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에 따라 징발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p> |
| <p>第24條의2 (前置主義) 徵發補償金支給請求의 訴는 國防部長官의 徵發補償金支給決定의 통지를 받고 第24條第3項의 <u>規定에 의한 再審節次를 거친 후가</u> 아니면 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第19條第5項 本文에 <u>規定하는</u> 期限内에 徵發補償金支給決定의 통지가 없거나 再審請求를 한 날로부터 60日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p> | <p>제24조의2 (징발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의 요건) 징발보상금 지급청구의 <u>소(訴)는</u>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u>제기할 수 없다.</u>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징발보상금 지급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p> |
| <p>제24조의3 (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21조의 <u>규정에 의한</u>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p> | <p>제24조의3 (보상 청구 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21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p> |
| <p>제24조의4 (재판상의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징발자와 국가 사이에 <u>민사소송법의</u>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u>화해가</u> 성립된 것으로 본다.</p> | <p>제24조의4 (재판상의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징발자와 국가 사이에 『<u>민사소송법</u>』에 따른 재판상의 <u>화해(和解)가</u> 성립된 것으로 본다.</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의3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現金을 支給받거나 證券을 交付받은 때 제22조의4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공탁된 現金 또는 證券을 공탁관으로부터 수령한 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現金을 지급받거나 證券을 교부받은 경우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現金 또는 證券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
| <p>第2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 <p><삭 제></p> |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 4 章 罰 則</p> <p>第26條 (罰則) ①詐僞 기타 不正한 手段으로 이 法에 의한 補償을 받은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는 그 補償을 받은 金額의 3倍 이내의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p> <p>第27條 (罰則) 第9條第1項 및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28條 (罰則) ①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벌칙</p> <p>제26조 (벌칙)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p> <p>제27조 (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8조 (벌칙) ① 제10조에 따른 징발 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장 변경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

○ 『통합방위법』 현행·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7. 5. 11. 법률 제8420호]

| 현행 | 정비안 |
|--|--|
| <p>第1條 (目的) 이 법은 敵의 浸透·挑發이나 그 威脅에 있어서 國家總力戰의 概念에 입각하여 國家防衛要素를 統合·運用하기 위한 統合防衛對策을 수립·施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 <p>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동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p> |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
| <p>1. “<u>統合防衛</u>”라 함은 敵의 浸透·挑發이나 그 威脅에 있어서 각종 國家防衛要素를 統合하고 指揮體系를 一元化하여 國家를 防衛하는 것을 말한다.</p> <p>2. “<u>國家防衛要素</u>”라 함은 統合防衛作戰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各目的의 防衛戰力 또는 그 支援要素를 말한다.</p> <p>가. 『<u>국군조직법</u>』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國軍</p> <p>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u>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u>』에 의한 자치경찰기구</p> <p>다.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p> <p>라. 『<u>향토예비군설치법</u>』 第1條의 規定에 의한 鄉土豫備軍</p> <p>마. 『<u>민방위기본법</u>』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民防衛隊</p> <p>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防衛協議會를 두는 職場</p> <p>3. “<u>統合防衛事態</u>”라 함은 敵의 浸透·挑發이나 그 威脅에 대응하여 第6號 내지 第8號의 구분에 따라 宣布하는 段階別 事態를 말한다.</p> <p>4. “<u>統合防衛作戰</u>”이라 함은 統合防衛事態가 宣布된 地域에서 그 事態의 구분에 따라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p> | <p>1. “<u>통합방위</u>”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p> <p>2. “<u>국가방위요소</u>”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요소를 말한다.</p> <p>가. 『<u>국군조직법</u>』 제2조에 따른 국군</p> <p>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u>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u>』에 따른 자치경찰기구</p> <p>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u>향토예비군설치법</u>』 제1조에 따른 향토예비군</p> <p>마. 『<u>민방위기본법</u>』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p> <p>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p> <p>3. “<u>통합방위사태</u>”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p> <p>4. “<u>통합방위작전</u>”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p> |

| 현행 | 정비안 |
|--|--|
| <p>統合防衛本部長・地域軍司令官・艦隊司令官 또는 地方警察廳長(이하 “作戰指揮官”이라 한다)이 國家防衛要素를 統合하여 指揮・統制하는 防衛作戰을 말한다.</p> <p>5. “地域軍司令官”이라 함은 統合防衛作戰 管轄區域안에 所在하는 軍部隊의 旅團長級 이상 指揮官중에서 統合防衛本部長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p> <p>6. “甲種事態”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非常事態로서 統合防衛本部長 또는 地域軍司令官의 指揮・統制하에 統合防衛作戰을 수행하여야 할 事態를 말한다.</p> <p>7. “乙種事態”라 함은 일부 또는 數個 地域에서 敵의 浸透・挑發로 인하여 短期間내에 治安回復이 어려워 地域軍司令官의 指揮・統制하에 統合防衛作戰을 수행하여야 할 事態를 말한다.</p> <p>8. “丙種事態”라 함은 敵의 浸透・挑發 威脅이 豫想되거나 小規模의 敵이 浸透한 때에 地方警察廳長・地域軍司令官 또는 艦隊司令官의 指揮・統制하에 統合防衛作戰을 수행하여 短期間내에 治安이 회복될 수 있는 事態를 말한다.</p> <p>9. “浸透”라 함은 敵이 特定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大韓民國領域을 侵犯한 상태를 말한다.</p> <p>10. “挑發”이라 함은 敵이 特定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大韓民國 國民 또는 領域에 가하는 일체의 危害行爲를 말한다.</p> <p>11. “威脅”이라 함은 浸透 및 挑發이 豫想되는 敵의 能力과 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p> <p>12.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한 기능을 정상</p> | <p>(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가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p> <p>가. 통합방위본부장 나. 지역군사령관 다. 합대사령관 라. 지방경찰청장</p> <p>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p> <p>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몇 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 간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p> <p>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의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짧은 기간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p> <p>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p> <p>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가하는 모든 위해(危害) 행위를 말한다.</p> <p>11. “위협”이란 침투나 도발이 예상되는 적의 능력과 침투나 도발의 계획 또는 행동이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p> <p>12. “방호(防護)”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각 기능을 정상적</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p> <p>13.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u>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u>을 말한다.</p> <p>第3條 (統合防衛態勢의 확립등) ①政府는 國家防衛要素의 <u>육성 및 統合防衛態勢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②各級 行政機關 및 軍部隊의 長은 원활한 統合防衛作戰의 수행을 위하여 서로 <u>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u></p> <p>③政府는 統合防衛事態의 宣布에 따른 國家防衛要素의 <u>動員所要費用</u>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할 수 있다.</p> <p>第4條 (中央統合防衛協議會) ①國務總理 소속하에 中央統合防衛協議會(이하 “中央協議會”라 한다)를 둔다.</p> <p>②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밖에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u></p> <p>③中央協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統合防衛本部의 副本部長이 된다.</p> <p>④中央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統合防衛政策 2. 統合防衛作戰·訓練 및 指針 | <p>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p> <p>13.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u>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u>을 말한다.</p> <p>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u>육성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②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u>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u></p> <p>③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u>동원에 드는 비용</u>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 (중앙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u></p> <p>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분부장이 된다.</p> <p>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 및 지침 |

| 현행 | 정비안 |
|---|--|
| <p>3. 統合防衛事態의 宣布 또는 解除</p> <p>4. 기타 統合防衛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p> <p>⑤中央協議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條 (地域統合防衛協議會) ①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소속하에 特別市·廣域市·道統合防衛協議會(이하 “市·道協議會”라 한다)를 두되, 그 議長은 市·道知事が 된다.</p> <p>②市長·郡守·區廳長 소속하에 市·郡·區統合防衛協議會를 두고, 그 議長은 市長·郡守·區廳長이 된다.</p> <p>③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한다.</p> <p>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p> <p>2. 통합방위 대비책</p> <p>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p> <p>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p> <p>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p> <p>④地域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條例로 정한다.</p> <p>第6條 (職場統合防衛協議會) ①職場에는 職場統合防衛協議會(이하 “職場協議會”라 한다)를 두되, 그 議長은 職場의 長이 된다.</p> <p>②職場協議會를 두어야 하는 職場의 범위와 職場協議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7條 (協議會의 統合·운영) 中央協議會·地域協議會 및 職場協議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음各號의 機構와 統合·운영할 수 있다.</p> | <p>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p> <p>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⑤ 중앙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p> <p>③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정한다.</p> <p>1. 적의 침투 또는 은거(隱居) 활동이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p> <p>2. 통합방위 대비책</p> <p>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p> <p>4.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p> <p>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p> <p>④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p> <p>제6조 (직장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p> <p>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 (협의회 통합·운영) 중앙협의회·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1. 「향토예비군설치법」 第1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衛協議會</p> <p>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規定에 의한 中央民防衛協議會 또는 地域民防衛協議會</p> <p>第 8 條 (統合防衛本部) ①合同參謀本部에 統合防衛本部를 둔다.</p> <p>②統合防衛本部는 本部長 및 副本部長 각 1人을 두되, 統合防衛本部長은 合同參謀議長이 되고, 부분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된다.</p> <p>③統合防衛本部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分掌한다.</p> <p>1. 統合防衛政策의 수립·調整</p> <p>2. 統合防衛 對備態勢의 확인·監督</p> <p>3. 統合防衛作戰狀況의 綜合分析 및 對備策의 수립</p> <p>4. 統合防衛作戰·訓練指針 및 計劃의 수립과 그 施行의 調整·統制</p> <p>5. 統合防衛 關係機關間的 業務協調 및 事業執行事項의 協議·調整</p> <p>④統合防衛本部에 統合防衛에 관한 政府內 業務協調 기타 統合防衛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統合防衛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⑤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 9 條 (統合防衛支援本部) ①市·道知事 소속하에 市·道統合防衛支援本部를, 市長·郡守·區廳長·邑長·面長·洞長 소속하에 市·郡·區·邑·面·洞統合防衛支援本部를 둔다.</p> <p>②市·道統合防衛支援本부와 市·郡·區·邑·面·洞統合防衛支援本部(이하 “각 統合防衛支援本部”라 한다)는 管轄地域別로 다음 各號의 事務를 分掌한다.</p> <p>1. 統合防衛作戰 및 訓練에 대한 支援計劃의 수립·施行</p> <p>2. 統合防衛綜合狀況室의 設置·운영</p> <p>3. 國家防衛要素의 육성·지원</p> | <p>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p> <p>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p> <p>제 8 조 (통합방위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p> <p>② 통합방위본부는 본부장 및 부분부장 각 1명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분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된다.</p> <p>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p> <p>1. 통합방위정책의 수립·조정</p> <p>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p> <p>3. 통합방위 작전상황의 종합 분석과 대비책의 수립</p> <p>4.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p> <p>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와 사업 집행 사항의 협의·조정</p> <p>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의 통합방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9 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p> <p>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p> <p>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p> <p>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p> |

| 현행 | 정비안 |
|--|---|
| <p>4. 統合防衛 脆弱地の 住民申告體制 확립</p> <p>5. 기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하는 사항</p> <p>③각 統合防衛支援本部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條例로 정한다.</p> <p>第10條 (統合防衛事態의 宣布) ①統合防衛事態는 甲種事態·乙種事態 또는 丙種事態로 구분하여 宣布한다.</p> <p>②國防部長官은 甲種事態에 해당하는狀況이 발생한 때 또는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쳐 乙種事態에 해당하는狀況이 발생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國防部長官은 2 이상의 市·道에 걸쳐 丙種事態에 해당하는狀況이 발생한 때에 즉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統合防衛事態의 宣布를 建議하여야 한다.</p> <p>③大統領은 第2項의 建議를 받은 때에는 中央協議會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할 수 있다.</p> <p>④地方警察廳長 또는 地域軍司令官은 乙種事態나 丙種事態에 해당하는狀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市·道知事에게 統合防衛事態의 宣布를 建議하여야 한다.</p> <p>⑤市·道知事は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議를 받은 때에는 市·道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乙種事態 또는 丙種事態를 宣布할 수 있다.</p> <p>⑥市·道知事は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乙種事態 또는 丙種事態를 宣布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國防部長官과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⑦第3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宣布日時·區域 및 作戰指揮官에 관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p> <p>⑧市·道知事が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한 地域에 대하여 大統領이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한 때에는 그 때부터 市·道</p> | <p>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의 확립</p> <p>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사항</p> <p>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p> <p>제10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p> <p>③ 대통령은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p> <p>④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p> <p>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선포일시·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⑧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도</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사가 宣布한 統合防衛事態는 효력을 상실한다.</p> <p>⑨ 統合防衛事態의 구체적인 宣布要件 및 節次, 公告方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1條 (國會 또는 市·道議會에 대한 통고 등) ① 大統領은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p> <p>② 市·道知事は 統合防衛事態를 宣布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市·道議會에 통고하여야 한다.</p> <p>③ 大統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 國會 또는 市·道議會가 閉會중인 때에는 그 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p> <p>第12條 (統合防衛事態의 解除) ① 大統領은 統合防衛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되거나 國會가 解除要求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統合防衛事態를 解除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p> <p>② 大統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防衛事態를 解除하고자 할 때에는 中央協議會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國會가 解除要求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國防部長官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統合防衛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된 때에는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統合防衛事態의 解除를 建議하여야 한다.</p> <p>④ 市·道知事は 統合防衛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되거나 市·道議會에서 解除要求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統合防衛事態를 解除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は 그 統合防衛事態의 解除事實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國防部長官과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市·道知事が 第4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防衛事態를 解除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市·道議會가 解除要求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 <p>지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p> <p>⑨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 및 절차와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p> <p>③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하는 경우 <u>국회나 시·도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그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u></p> <p>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u>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정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도의회에서 해제요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가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u>시·도议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

| 현행 | 정비안 |
|--|--|
| <p>⑥ <u>地方警察廳長 또는 地域軍司令官</u>은 統合防衛事態가 平常狀態로 회복된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統合防衛事態의 解除를 建議하여야 한다.</p> <p>第13條 (統合防衛作戰) ① 統合防衛作戰의 管轄區域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地上管轄區域: 特定警備地域·軍管轄地域 및 警察管轄地域 2. 海上管轄區域: 特定警備海域 및 一般警備海域 3. 空中管轄區域: 飛行禁止空域 및 一般空域 <p>② <u>地方警察廳長·地域軍司令官 또는 艦隊司令官</u>은 統合防衛事態가 宣布된 때에는 즉시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統合防衛作戰(空軍作戰司令官의 경우에는 統合防衛支援作戰)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乙種事態가 宣布된 경우에는 <u>地域軍司令官</u>이, 甲種事態가 宣布된 경우에는 <u>統合防衛本部長 또는 地域軍司令官</u>이 각각 統合防衛作戰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警察管轄地域: 地方警察廳長 2. 特定警備地域 및 軍管轄地域: 地域軍司令官 3. 特定警備海域 및 一般警備海域: 艦隊司令官 4. 飛行禁止空域 및 一般空域: 空軍作戰司令官 <p>③ <u>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防衛作戰 管轄區域의 細部範圍</u> 기타 統合防衛作戰의 施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實務委員會의 審議</u>를 거쳐 統合防衛本部長이 정한다.</p> <p>④ 統合防衛作戰의 任務를 수행하는 者는 그 作戰地域안에서 <u>大統領令</u>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務의 수행에 필요한 檢問을 할 수 있다.</p> <p>第14條 (統制區域등)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統合防衛事態가</p> | <p>⑥ <u>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군사령관</u>은 통합방위사태가 平常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市·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p> <p>제13조 (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各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地上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p>② <u>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u>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各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중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u>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중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p>③ <u>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와 그 밖에</u>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실무위원회의 심의</u>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p> <p>④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者는 그 작전지역에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檢問을 할 수 있다.</p> <p>제14조 (통제구역 등) ① 市·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宣布된 때에는 <u>大統領令</u>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人命·身體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統制區域을 設定하고, 統合防衛作戰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出入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統制區域으로부터 退去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統制區域의 設定基準·節次 및 公告方法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5條(待避命令)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統合防衛事態가 宣布된 때에는 人命·身體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作戰地域안에 있는 住民이나 滞在者에 대하여 待避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待避命令(이하 “待避命令”이라 한다)은 放送·擴聲器·壁報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依하여 公告하여야 한다.</p> <p>③安全待避方法과 待避命令의 실시방법·節次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2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경비·보안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에 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p> <p>④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p> | <p>선포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人命·신체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關 聯되지 不 關한 자에 對 하여는 出 入을 禁 止·制 限하 거 나 그 統 制 區 域 으 로 부 터 退 去 할 것 을 命 令 할 수 있 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기준·절차 및 공고방법 등에 關 하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p> <p>제15조(대피명령)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人 命·신체에 對 하여 防 止 하 기 위 하여 즉 시 作 戰 地 域 에 있 는 主 人 이 나 滯 在 者 에 對 하여 대 피 할 것 을 命 令 할 수 있 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 송·확 성 기·벽 보 와 그 밖 에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방 법 에 따 라 공 고 하 여 야 한 다.</p> <p>③ 안전대피의 方 法 과 대 피 명 령 의 實 시 方 法 및 절 차 등 에 關 하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p> <p>제15조의2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경비·보안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에 關 하여 필 요 한 경 우 에 는 지 방 경 찰 청 장 이 나 지 역 군 사 령 관 에 기 협 조 를 요 청 할 수 있 다.</p> <p>②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한다.</p> <p>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방호지원 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16條 (合同報道本部 등) ① 作戰指揮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言論機關의 取材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作戰指揮官은 統合防衛 進行狀況 및 對國民 協助事項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合同報道本部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p> <p>③ 統合防衛作戰을 수행함에 있어 兵力 또는 裝備의 移動·配置·性能이나 作戰計劃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統合防衛作戰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國民 또는 地域住民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 및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3. 적의 저공(低空) 침투 또는 저속 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開闊地)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p>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 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 (합동보도본부 등)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의 진행 상황과 대국민 협조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배치·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 활동이 쉬운 지역 3. 적의 저공(低空) 침투나 저속 항공기의 착륙이 쉽도록 앞이 막힘없이 트여 열려 있는 지역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의2 (검문소의 운용) ①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합대사령관은 관할 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합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검문소의 지휘·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18條 (申告) 누구든지 敵의 浸透 또는 出現이나 그에 관한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軍部隊 또는 行政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p> <p>第19條 (問責 및 시정요구 등) ①統合防衛本部長은 統合防衛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 또는 統合防衛作戰 및 訓練에 참여한 者가 그 職務를 게을리하여 國家安全保障이나 統合防衛業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그 所屬機關 또는 職場의 長에게 해당자의 名單을 통보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所屬機關 또는 職場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懲戒등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統合防衛本部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p> | <p>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의2 (검문소의 운용) ① 지방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지역군사령관 및 합대사령관은 관할 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합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검문소의 지휘·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 (신고) 누구든지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에 관한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군부대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p> |

| 현 행 | 정 비 안 |
|---|--|
| <p>우에는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20條 (罰則) ①第14條第1項의 <u>規定에 의한</u> 금지·제한 또는 退去命令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第15條第1項의 <u>規定에 의한</u> 待避命令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 <p>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u>따라</u>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0조 (벌칙)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퇴거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5조제1항에 <u>따른</u>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군사법 관계 법률】

○ 『군형법』 현행 · 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6. 1. 2. 법률 제7845호]

| 현행 | 정비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軍刑法</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編 總則</p> <p>第1條 (被適用者) ①이 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법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p> <p>②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に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은 제외한다.</p> <p>③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軍人에 準하여 이 법을 適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 · 生兵 役法徒와 士官候補生 · 副士官候補生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을 가지는 在營中인 學生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p>④다음 各호의 1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內外國人에 대하여도 第3項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罪 2. 第42條의 罪 3. 第54條 내지 第59條의 罪 4. 第66條 내지 第71條의 罪 5. 第75條第1項第1號의 罪 6. 第77條의 罪 7. 第78條의 罪 8. 第87條 내지 第90條의 罪 9.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未遂犯 | <p style="text-align: center;">군형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편 총칙</p> <p>제1조 (피적용자)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 생도(生徒),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과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 중인 예비역 ·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10. 第58條의2의 未遂犯 11. 第59條第1項의 未遂犯 12. 第66條 내지 第70條와 第71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 13. 第87條 내지 第90條의 未遂犯</p> <p>⑤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者가 軍服務中이나 在學 또는 在營중에 이 법에 정한 罪를 犯한 때에는 轉役·召集解除·退職 또는 退校나 退營후에도 이 법을 適用한다.</p> <p>第 2 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의 各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上官이라 함은 命令服從關係에 있는 者間에서 命令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命令服從關係가 없는 者間에서의 上階級者와 上序列者는 上官에 準한다.</p> <p>2. 指揮官이라 함은 中隊以上の 單位部隊의 長과 艦船部隊의 長 또는 艦艇 및 航空機를 指揮하는 者를 말한다.</p> <p>3. 哨兵이라 함은 警戒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守地, 守海 또는 守空에 配置된 者를 말한다.</p> <p>4. 部隊라 함은 軍隊, 軍의 機關 및 學校와 戰時 또는 事變時에 있어서 이에 準하는 特設機關을 말한다.</p> <p>5. 敵前이라 함은 敵에 對하여 攻擊防禦의 戰鬪行動을 開始하기 直前과 開始後의 狀態 또는 敵과 直接對峙하여 그 來襲을 警戒하는 狀態를 말한다.</p> <p>6. 戰時라 함은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하여 宣戰布告를 하였거나 對敵行爲를 取한때로부터 當該 相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의 期間을 말한다.</p> <p>7. 事變이라 함은 戰時에 準하는 動亂狀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이 宣布된 期間을 말한다.</p> <p>第 3 條 (死刑執行) 死刑은 所屬軍參謀總長 또는 軍事法院의 管轄官이 指定한</p> | <p>10. 제58조의2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과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의 미수범</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상관(上官)”이란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사이에서 높은 계급자 및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p> <p>2. “지휘관”이란 중대(中隊)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부대(艦船部隊)의 장 또는 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p> <p>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땅, 바다, 하늘을 지키기 위하여 배치된 자를 말한다.</p> <p>4.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사변 시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p> <p>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시작하기 직전과 시작한 후의 상태나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이 습격하여 오는 것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p> <p>6. “전시(戰時)”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적과 맞서 거무는 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p>7. “사변(事變)”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 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p> <p>제 3 조 (사형 집행) 사형(死刑)은 소속군참모총장이나 군사법원의 관할관이</p> |

| 현행 | 정비안 |
|---|---|
| <p>場所에서 銃殺로써 이를 執行한다.</p> <p>第4條 (他法適用例) 第1條의 規定에 依한 이 法의 被適用者가 犯한 罪에 關하여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을때에는 他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編 各則</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叛亂의 罪</p> <p>第5條 (叛亂) 作黨하여 兵器를 携帶하고 叛亂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首魁는 死刑에 處한다</p> <p>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한 者도 또한 같다.</p> <p>3. 附和雷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6條 (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 叛亂을 目的으로 作黨하여 兵器, 彈藥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者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p> <p>第7條 (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8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以上の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p> <p>②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9條 (叛亂不報告) ①叛亂을 알고도 이를 上官 其他 關係官에게 遲滯없이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 <p>지정한 장소에서 銃殺(銃殺)로써 집행한다.</p> <p>제4 조 (피적용자에 대한 법 적용)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피적용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편 각칙(各則)</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반란의 죄</p> <p>제5 조 (반란) 무리를 이루어 병기(兵器)를 지니고 반란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한다.</p> <p>2. 반란을 꾀하고 의논하는 데에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無期)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p> <p>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제6 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무리를 이루어 병기, 탄약이나 그 밖의 군용(軍用)에 쓰이는 물건을 탈취한 자는 제5조의 예에 따른다.</p> <p>제7 조 (미수범) 제5조 및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8 조 (예비, 음모, 선동 및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p> <p>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p>제9 조 (반란 미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이나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②前項의 境遇에 敵을 利롭게 할 目的으로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10條 (同盟國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p> | <p>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章)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p> |
| <p>第2章 利敵의 罪</p> | <p>제2장 이적(利敵)의 죄</p> |
| <p>第11條 (軍隊 및 軍用施設提供) ①軍隊要塞, 陣營 또는 軍用に 供하는 艦船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 또는 建造物을 敵에게 提供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p> | <p>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쓰이는 함선, 항공기나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p> |
| <p>②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12條 (軍用施設等破壞) 敵을 爲하여 前條에 規定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p> | <p>② 병기 또는 탄약이나 그 밖에 군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p>제12조 (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p> |
| <p>第13條 (間諜) ①敵을 爲하여 間諜한 者는 死刑에 處하고 敵의 間諜을 幫助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 <p>제13조 (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행위를 도운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 |
| <p>②軍事上の 機密을 敵에게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p> | <p>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지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
| <p>1. 部隊·基地·軍港地域 기타 軍事施設保護를 위한 法令에 의하여 告示 또는 公告된 地域</p> <p>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指定 또는 委囑된 방위산업체와 研究機關</p> <p>3. 部隊移動地域·部隊訓練地域·對間諜作戰地域 기타 軍의 特殊作戰을 수행하는 地域</p> <p>④ 삭제</p> | <p>1. 부대·기지·군항 지역이나 그 밖의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p> <p>2.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p> <p>3. 부대 이동지역, 부대 훈련지역, 대간첩작전 지역과 그 밖에 군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p> <p>④ 삭제</p> |
| <p>第14條 (一般利敵) 前3條에 記載한 以外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p> | <p>제14조 (일반 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다음 각</p> |

| 현행 | 정비안 |
|--|---|
| <p>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1. 敵을 爲하여 嚮導하거나 地理를 指示한 者</p> <p>2. 敵에게 降服하게 하기 爲하여 指揮官에게 이를 強要한 者</p> <p>3. 敵을 隱匿하거나 庇護한 者</p> <p>4. 敵을 爲하여 通路, 橋梁, 燈臺, 標識 其他 交通施設을 損壞하거나 不通하게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部隊 또는 軍用に 供하는 艦船, 航空機 또는 車輛의 往來를 妨害한 者</p> <p>5. 敵을 爲하여 暗號 또는 信號를 使用하거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詐傳하거나 傳達를 怠慢히 하거나 또는 虛偽의 命令, 通報나 報告를 한 자</p> <p>6. 敵을 爲하여 部隊, 艦隊, 編隊 또는 隊員을 解散시키거나 混亂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連絡이나 集음을 妨害한 者</p> <p>7. 軍用に 供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に 供할 수 있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p> <p>8. 前各號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에게 軍事上 利益을 供與한 者</p> <p>第15條 (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16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の 有期 懲役に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p> <p>②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17條 (同盟國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p> |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1. 적을 위하여 길을 인도하거나 지리를 가리켜 보인 자</p> <p>2. 적에게 강복(降服)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자</p> <p>3. 적을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p> <p>4. 적을 위하여 도로, 교량, 등대, 표지나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 또는 불통(不通)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쓰이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자</p> <p>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전하거나 전달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p> <p>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編隊) 또는 대원(隊員)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자</p> <p>7. 군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이나 전투용에 쓰일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p> <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이 돌아가게 한 자</p> <p>제15조 (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및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p> <p>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p>제17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3章 指揮權濫用の罪</p> <p>第18條 (不法戰鬥開始) 指揮官이 正當한事由없이 外國에 對하여 戰鬥을 開始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p>第19條 (不法戰鬥繼續) 指揮官이 休戰 또는 講和의 告知를 받고도 正當한事由없이 戰鬥을 繼續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p>第20條 (不法進退)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 있어서 指揮官이 權限을 濫用하여 不得已한事由없이 部隊, 艦船 또는 航空機를 進退시킨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21條 (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 <p>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p> <p>제18조 (불법 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p> <p>제19조 (불법 전투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告知)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p> <p>제20조 (불법 진퇴)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u>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뒤로 물러나게 한</u>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제21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
| <p>第4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罪</p> <p>第22條 (降服) 指揮官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敵에게 降服하거나 部隊, 陣營, 要塞, 艦船 또는 航空機를 敵에게 放任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p>第23條 (率隊逃避) 指揮官이 敵前에서 그 할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部隊를 引率하여 逃避한 때에는 死刑에 處한다.</p> <p>第24條 (職務遺棄) 指揮官이 正當한事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敵前의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 以上の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p>第25條 (未遂犯) 第22條 및 第2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 <p>제4장 지휘관의 강복(降服)과 도피의 죄</p> <p>제22조 (강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u>돌보지 아니하고 적에게 내버려 둔</u>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p> <p>제23조 (부대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u>도피[솔대도피(率隊逃避)]</u>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p> <p>제24조 (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遺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u>그 밖의</u>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p>제25조 (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第26條 (豫備, 陰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守所離脫의 罪</p> <p>第27條 (指揮官의 守所離脫) 指揮官이 正當한 理由없이 部隊를 引率하여 守所를 離脫하거나 配置區域에 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p>第28條 (哨兵의 守所離脫) 哨兵이 正當한 理由없이 守所를 離脫하거나 指定된 時間내에 守所에 臨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2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p>第29條 (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 <p>제26조 (예비·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p> <p>제27조 (지휘관의 수소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를 이탈[수소가탈(守所離脫)]하거나 배치구역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p>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守所)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수소를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제29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軍務離脫의 罪</p> <p>第30條 (軍務離脫) ①軍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部隊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5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군무이탈의 죄</p> <p>제30조 (군무이탈) ① 군무(軍務)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②部隊 또는 職務에서 離脫된 者로서 正當한 事由없이 相當한 期間內에 復歸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第31條 (特殊軍務離脫) 危險 또는 重要한 任務를 回避할 目的으로 配置地 또는 職務를 離脫한 者도 前條의 例에 依한다.</p> <p>第32條 (離脫者庇護) 前2條의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庇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 是 5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其他의 境遇에 是 3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p>第33條 (敵陣에의 逃走) 敵에게 逃走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p> <p>第34條 (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 <p>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p>제31조 (특수 군무이탈) 위협이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配置地)나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p> <p>제32조 (이탈자 보호) 제30조 및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제33조 (적진에의 도주) 적에게 도주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p> <p>제34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
| <p>第 7 章 軍務怠慢의 罪</p> | <p>제 7 장 군무태만의 죄</p> |
| <p>第35條 (勤務怠慢) 勤務를 怠慢히 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無期 또는 1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指揮官 또는 이에 準하는 將校로서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敵과의 交戰이 豫測되는 境遇에 戰鬪準備를 怠慢히 한 者 將校로서 部隊 또는 兵員을 引率하여 그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敵에 遭遇하거나 其他 危難에 處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部隊 또는 兵員을 遺棄한 者 職務上 攻擊하여야 할 敵에 對하여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攻擊하지 아니하거나 職務上 當面하여야 할 危難으로부터 離脫한 者 軍事機密의 文書 또는 物件을 保管하는 者로서 危急한 境遇에 있어서 不得已한 事由없이 敵에게 이를 放任한 者 | <p>제35조 (군무태만) 군무를 태만히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휘관이나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인데도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 적과 만나거나 그 밖에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당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력을 버린 자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로부터 이탈한 자 군사기밀의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급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내버려 둔 자 |

| 현행 | 정비안 |
|---|--|
| <p>5.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兵器, 彈藥, 食糧, 被服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運搬 또는 供給하는 者로서 不得已한 事由없이 이를 缺乏하도록 한 者</p> <p>第36條 (飛行軍紀紊亂) 飛行에 關한 法規 또는 命令을 違反하여 航空機를 操縱함으로써 飛行軍紀를 紊亂하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 以上の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p>第37條 (僞計로 因한 航行危險) 詐僞의 信號를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軍用に 供하는 艦船 또는 航空機의 航行에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 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 <p>第38條 (虛僞의 命令, 通報, 報告) ①軍事に 關하여 虛僞의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7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p>②軍事に 關한 命令, 通報 또는 報告를 할 義務가 있는 者가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前項各號에 定한 刑의 2分の1까지 加重한다.</p> <p>第39條 (命令等의 虛僞傳達)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에서 軍事に 關한 命令,</p> | <p>5.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과 그 밖에 군용에 쓰이는 물건을 운반하거나 공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지게 하거나 모자라게 한 자</p> <p>제36조 (비행군기 문란)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p>제37조 (속임수로 인한 항행위험) 거짓의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쓰이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이 발생하도록 한 자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p>제38조 (허위의 명령, 통보 및 보고) ① 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p> <p>제39조 (명령 등의 허위 전달)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정비안 |
|---|--|
| <p>通報 또는 報告를 傳達하는 者가 이를 <u>虛偽傳達하거나 傳達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u></p> <p>第40條 (哨令違反) ①정당한 사유없이 <u>所定の 規則에 의하지 아니하고 哨兵을 交替시키거나 交替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2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 戰時·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경우에는 5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2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p>②哨兵으로서 <u>瞌睡 또는 飲酒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u></p> <p>第41條 (勤務忌避目的의 詐術) ①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身體를 傷害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p>②勤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假病 其他 <u>僞計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敵前인 境遇에는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p>第42條 (有害飲食物供給) ①有毒성이 있는 飲食物을 軍에 供給한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②前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③過失로 因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④敵을 利롭게 하기 爲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 <p>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자가 이를 <u>허위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u></p> <p>제40조 (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계를 서는 병사가 지켜야 할 규칙[초령(哨令)]에 <u>따르지 아니하고 초병(哨兵)을 교체시키거나 교체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u>그 밖의</u>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② 초병으로서 <u>잠을 자거나 음주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u></p> <p>제41조 (근무기피 목적의 속임수)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u>상해(傷害)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u>그 밖의</u>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u>피병이나 그 밖의 거짓 구실을 꾸민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u>그 밖의</u>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제42조 (유해음식물 공급) ① 유독성이 있는 食物을 軍에 供給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u>제1항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p> <p>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罪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④ <u>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罪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p> |

| 현행 | 정비안 |
|--|--|
| <p>第43條 (出兵拒否) 指揮官이 出兵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者로부터 그 要求를 받고 相當한 理由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 <p>제43조 (출병 거부) 지휘관이 출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
| <p>第8章 抗命의 罪</p> | <p>제8장 항명(抗命)의 죄</p> |
| <p>第44條 (抗命) 上官의 正當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服從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1年 以上 7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3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 <p>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p>第45條 (集團抗命)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7年 以上の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3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7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 <p>제45조 (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전인 경우에는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우두머리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우두머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p>第46條 (上官의 制止不服從) 暴行을 하는 者가 上官의 制止에 服從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 <p>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자가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47條 (命令違反) 正當한 命令 또는 規則을 遵守할 義務가 있는 者가 이를 違反하거나 遵守하지 아니한 때에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 <p>제47조 (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
| <p>第9章 暴行·脅迫·傷害와 殺人の 罪</p> | <p>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p> |
| <p>第48條 (上官에 對한 暴行, 脅迫) 上官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1. 敵前인 境遇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5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49條 (上官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제49조 (상관에 대한 집단폭행 및 협박)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 <p>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 우두머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 우두머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50條 (上官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8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및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 <p>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51條 (上官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49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제51조 (상관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및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 <p>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에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無期 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2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 우두머리는 무기 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52條 (上官에 對한 暴行致死傷) ①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致死)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
| <p>②第48條 내지 第51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②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u>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
| <p>第52條의2 (上官에 대한 傷害) 上官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 <p>제52조의2 (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
|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u>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
| <p>第52條의3 (上官에 대한 重傷害) 第52條 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上官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發生하게 하거나 <u>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 <p>제52조의3 (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 제2항과 제52조의2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發生하게 하거나 <u>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
|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u>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52條의4 (上官에 대한 傷害致死) 第52條의2 및 第52條의3의 罪를 犯하여 上官을 致死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 <p>제52조의4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者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
|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u>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53條 (上官殺害와 豫備, 陰謀) ①上官을 殺害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p> <p>②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 <p>제53조 (상관살해와 예비 및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者는 사형에 처한다.</p> <p>② <u>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者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p> |
| <p>第54條 (哨兵에 對한 暴行, 脅迫) 哨兵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u></p> | <p>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초병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
| <p>1. 敵前인 境遇에는 7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2. <u>其他</u>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55條 (哨兵에 對한 集團暴行, 脅迫) 集團을 이루어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u>다</u></p> | <p>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및 협박) 집단을 이루어 <u>제54조의 죄를 범한 者는</u></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5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2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 <p>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적전인 경우 우두머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 우두머리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56條 (哨兵에 對한 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4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및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 <p>1. 敵前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
| <p>第57條 (哨兵에 對한 集團特殊暴行, 脅迫)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第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제57조 (초병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및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제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 <p>1. 敵前인 境遇에는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の 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5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首魁는 10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하고 其他의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 우두머리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58條 (哨兵에 對한 暴行致死傷) ①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
| <p>②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 <p>②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
|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한다.</p> | <p>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
| <p>第58條의2 (哨兵에 對한 傷害) 哨兵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다음 區別에 依하여</p> | <p>제58조의2 (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p> |

| 현행 | 정비안 |
|---|---|
| <p>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58條의3 (哨兵에 대한 重傷害) 第58條 第2項 및 前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58條의4 (哨兵에 대한 傷害致死) 第58條의2 및 第58條의3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第59條 (哨兵殺害와 豫備陰謀) ①哨兵을 殺害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②前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60條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暴行, 脅迫등) ①上官 또는 哨兵 이외의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2. 기타의 경우에는 3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②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고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p> <p>1. 敵前인 경우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 <p>따라 처벌한다.</p> <p>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58조의3 (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 제2항과 제58조의2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도록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58조의4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와 제58조의3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60조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2. <u>기타의</u> 경우에는 5년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③上官 또는 哨兵 <u>이외의</u>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死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의</u>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④上官 또는 哨兵 <u>이외의</u>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하여 暴行을 하여 致傷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의</u> 경우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⑤集團을 이루어 <u>第1項 내지 第4項의</u>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 2분의 1까지 加重한다.</p> <p>第60條의2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上官 또는 哨兵 <u>이외의</u> 職務遂行중인 者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의</u> 경우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60條의3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重傷害) <u>第60條第4項 및 前條의</u> 罪를 犯하여上官 또는 哨兵 <u>이외에</u> 職務遂行중인 者의 生命에 대한 危險을 발생하게 하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p>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의</u> 경우에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60條의4 (職務遂行중인 者에 대한 傷害致死) <u>第60條의2 및 第60條의3의</u> 罪를 犯하여上官 또는 哨兵 <u>이외의</u> 職務</p> |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상관 또는 초병 <u>외의</u>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사한 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p>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상관 또는 초병 <u>외의</u>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상한 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p>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⑤ 집단을 이루어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제60조의2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u>외의</u> 직무수행 중인 자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p>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60조의3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중상해) <u>제60조제4항과 제60조의2의</u>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u>외의</u> 직무수행 중인 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p>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60조의4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상해치사) <u>제60조의2와 제60조의3의</u>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u>외의</u> 직무수행</p> |

| 현행 | 정비안 |
|--|---|
| <p>遂行중인 者를 致死한 者는 <u>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u></p> <p>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2. <u>기타의</u>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第61條 (特殊騷擾) 集團을 이루어 <u>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u>을 携帶하고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u>首魁</u>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2. <u>他人</u>을 指揮하거나 率先하여 <u>助勢</u>한 者는 1年以上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3. 附和雷同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62條 (苛酷行爲) 職權을 濫用하여 虐待 또는 苛酷한 行爲를 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63條 (未遂犯) 第52條의2·第53條第1項·第58條의2·第59條第1項 및 第60條의2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 <p>중인 자를 치사한 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u> 처벌한다.</p> <p>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u>그 밖의</u>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61조 (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u>흉기나 그 밖의</u>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u> 처벌한다.</p> <p>1. <u>우두머리</u>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2. <u>다른 사람</u>을 지휘하거나 술선하여 <u>도움을 준</u>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3. 부화뇌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63조 (미수범) 제52조의2, 제53조제1항, 제58조의2,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
| <p>第10章 侮辱의 罪</p> | <p>제10장 모욕의 죄</p> |
| <p>第64條 (上官侮辱등) ①上官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②文書, 圖畫 또는 <u>偶像</u>을 <u>公示</u>하거나 演說 其他 <u>公然한</u> 方法으로 上官을 侮辱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③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④公然히 虛偽의 事實을 摘示하여 上官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65條 (哨兵侮辱) 哨兵을 그 面前에서 侮辱한 者는 1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 <p>제64조 (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② 문서, 도화 또는 <u>우상(偶像)</u>을 <u>공개적으로 보여주거나</u> 연설이나 그 밖의 <u>공공연한</u>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③ <u>공공연하게</u>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④ <u>공공연하게</u>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제65조 (초병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정비안 |
|---|---|
| <p>第11章 軍用物에 關한 罪</p> <p>第66條 (軍用施設等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軍의 工場, 艦船, 航空機 또는 戰鬪에 供하는 施設, 汽車, 電車, 自動車, 橋梁을 燒毀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② 불을 놓아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貯藏하는 倉庫를 燒毀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軍用に 供하는 物件이 現存하는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軍用に 供하는 物件이 現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第67條 (露積軍用物에의 放火) 불을 놓아 露積한 兵器, 彈藥, 車輛, 裝具, 器材, 食糧, 被服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燒毀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2. 其他의 境遇에는 無期 또는 3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第68條 (爆發物破裂) 火藥, 汽罐 其他 爆發性있는 物件을 破裂하게 하여 前2條에 規定된 物件을 損壞한 者도 前2條의 例에 依한다.</p> <p>第69條 (軍用施設等損壞) 第66條에 規定된 物件 또는 軍用に 供하는 鐵道, 電線 其他의 施設이나 物件을 損壞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 以上의 懲役に 處한다.</p> <p>第70條 (鹵獲物毀損) 敵으로부터 鹵獲한 物件을 橫領하거나 燒毀 또는 損壞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 <p>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p> <p>제66조 (군용시설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쓰이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불에 태워 없앤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불을 놓아 군용에 쓰이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태워 없앤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군용에 쓰이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군용에 쓰이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67조 (쌓아 둔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쌓아 둔 병기, 탄약,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과 그 밖에 군용에 쓰이는 물건을 태워 없앤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그 밖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68조 (폭발물 파열) 화약, 기관(汽罐)과 그 밖에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破裂)하게 하여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자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p> <p>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쓰이는 철도, 전선과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70조 (노획물 훼손) 적으로부터 노획(鹵獲)한 물건을 횡령하거나 불에 태워 없애거나 손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第71條 (艦船, 航空機의 覆沒損壞) ①就役中에 있는 艦船을 衝突 또는 坐礁시키거나 危險한 곳을 航行하게 하여 艦船을 覆沒 또는 破壞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②就役中에 있는 航空機를 墜落시키거나 覆沒 또는 損壞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③前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 <p>제71조 (함선 및 항공기의 복몰손괴) ①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坐礁)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뒤집혀 가라앉게 하거나[복몰(覆沒)]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뒤집혀 가라앉게 하거나 손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
| <p>第72條 (未遂犯) 第66條 乃至 前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 <p>제72조 (미수범) 제66조부터 제71조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p> |
| <p>第73條 (過失犯) ①過失로 因하여 第66條 乃至 第71條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 <p>제73조 (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p>第74條 (軍用物 紛失) 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기타 軍用に 供하는 物件을 保管할 責任이 있는 者로서 이를 紛失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 <p>제74조 (군용물 분실)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裝具)·기재(器材)·식량·피복과 그 밖의 군용에 쓰이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p>第75條 (軍用物 등 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銃砲·彈藥·爆發物·車輛·裝具·器材·食糧·被服 기타 軍用に 供하는 物件 또는 軍의 財産上의 利益에 關하여 刑法 第2編第38章 내지 第41章의 罪를 犯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p>1. 銃砲·彈藥 또는 爆發物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2. 第1號 이외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1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②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刑法에 定한 刑과 比較하여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p> | <p>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과 그 밖의 군용에 쓰이는 물건이나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罰金を 併科할 수 있다.</p> <p>第76條 (豫備, 陰謀) 第66條 乃至 第69條와 第71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p> <p>第77條 (外國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物에 對한 行爲) 이 章의 規定은 國軍과 共同作戰에 從事하고 있는 外國軍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に 供하는 物件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12章 違令의 罪</p> <p>第78條 (哨所侵犯) 哨兵을 欺罔하여 哨所를 通過하거나 哨兵의 制止에 不應한 者는 다음 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 以上 5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2. 戰時, 事變 또는 戒嚴地域인 境遇에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p>第79條 (無斷離脫) 許可없이 勤務場所 또는 指定場所를 一時離脫하거나 指定한 時間內에 指定한 場所에 到達하지 못한 者는 1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80條 (軍事機密漏泄) ①軍事上의 機密을 漏泄한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②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前項의 罪를 범한 때에는 3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81條 (暗號不正使用) 暗號를 許可없이 發信하거나 受信할 資格이 없는 者에게 受信하게 하거나 또는 自己가 受信한 暗號를 傳達하지 아니하거나 虛偽傳達한 者는 2年 以上の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p> | <p>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p> <p>제76조 (예비 및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규정과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p> <p>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쓰이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위령(違令)의 죄</p> <p>제78조 (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p>제79조 (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제80조 (군사 기밀 누설) ①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제81조 (암호 부정사용)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하거나 수신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신하게 하거나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전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13章 掠奪의 罪</p> <p>第82條 (掠奪)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軍의 威力 또는 戰鬪의 恐怖를 利用하여 住民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②戰鬪地域에서 戰死者 또는 戰傷病者의 衣類 其他의 財物을 掠取한 者는 1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83條 (掠奪로 인한 致死傷) ①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殺害하거나 致死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に 處한다.</p> <p>②前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하거나 致傷한 者는 無期 또는 7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第84條 (戰地強姦) ①戰鬪地域 또는 占領地域에서 婦女를 強姦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p> <p>②前項의 罪에 對한 公訴에는 告訴를 要하지 아니한다.</p> <p>第85條 (未遂犯) 이 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약탈의 죄</p> <p>제82조 (약탈) ① <u>전투지역이나 점령지역</u>에서 軍의 威力(威力)이나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훔쳐서 <u>빼돌려 가지거나 약탈하여 가진</u>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u>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戰傷病者)의 의류나 그 밤의 재물을 훔쳐서 빼돌려 가지거나 약탈하여 가진</u>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84조 (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에는 <u>고소(告訴)를 필요로 하지</u> 아니한다.</p> <p>제85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第14章 捕虜에 關한 罪</p> <p>第86條 (捕虜) 敵에게 捕虜가 된 者로서 <u>友軍部隊 또는 陣地로 歸還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歸還할 適切한 行動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他友軍捕虜로 하여금 歸還하지 못하게 한 者</u>는 2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第87條 (看守者의 捕虜逃走援助) 捕虜를 <u>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그 捕虜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 3年 以上の 有期懲役に 處한다.</u></p> <p>第88條 (捕虜逃走援助) ①捕虜를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p> <p>②捕虜를 逃走시킬 目的으로 捕虜에게 器具를 供與하거나 其他 그 逃走를 容</p> |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포로에 관한 죄</p> <p>제86조 (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자로서 <u>우군부대(友軍部隊)나 진지로 귀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로 하여금 귀환하지 못하게 한 자</u>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87조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u>간수(看守)하거나 호송하는 자가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p> <p>제88조 (포로 도주 원조)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u>그 밖에 그 도주를</u></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易하게 하는 行爲를 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89條 (捕虜奪取) 捕虜를 奪取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に 處한다.</p> <p>第90條 (逃走捕虜庇護) 逃走한 捕虜를 隱匿하거나 庇護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91條 (未遂犯) 第87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15章 其他의 罪</p> <p>第92條 (醜行) 鷄姦 其他 醜行을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p> <p>第93條 (部下犯罪不鎮定) 部下가 多數共同하여 罪를 犯함을 알고도 그 鎮定을 爲하여 必要한 方法을 다하지 아니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p> <p>第94條 (政治關與)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演說 또는 文書 其他의 方法으로 政治的 意見을 公表하거나 其他 政治運動을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에 處한다.</p> | <p>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89조 (포로 탈취) 포로를 탈취(奪取)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90조 (도주 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은닉하거나 비호(庇護)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91조 (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장 그 밖의 죄</p> <p>제92조 (추행) <u>계간(鷄姦)</u>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93조 (부하 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도 그 진정(鎮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제94조 (정치 관여)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또는 문서나 <u>그 밖의</u>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u>그 밖의</u> 정치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p> |

○ 『**군행형법**』 현행 · 정비안 대비표

[일부개정 2006. 2. 21. 법률 제7849호]

| 현 행 | 정 비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軍行刑法</u></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u>軍事法院에 의하여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를 隔離保護하여 矯正敎化하고, 건전한 國民思想과 견고한 軍人精神을 함양하여 社會 또는 軍에 復歸하게 하며, 아울러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의 收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u></p> <p>第2條 (矯導所등의 設置) ①軍行刑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 소속하에 軍矯導所(이하 “矯導所”라 한다)를 두며, 矯導所에는 필요에 따라 支所를 둘 수 있다.</p> <p>②矯導所(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當該 軍 參謀總長(이하 “參謀總長”이라 한다)이 指揮·監督한다.</p> <p>③矯導所에는 懲役刑·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이하 “受刑者”라 한다)를 收容한다.</p> <p>④參謀總長은 필요한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受刑者 또는 刑事被疑者나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이하 “未決收容者”라 한다)를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女子受刑者 또는 女子未決收容者는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하여야 한다.</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收容된 受刑者 및 未決收容者(이하 “收容者”라 한다)에 대하</p> | <p style="text-align: center;"><u>군행형법</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u>군사법원(軍事法院)에서 징역형·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 보호하여 교정 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견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사회나 군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收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 (교도소 등의 설치) ① <u>군행형(軍行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u> <u>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두며, 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支所)를 둘 수 있다.</u></p> <p>② <u>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지휘·감독한다.</u></p> <p>③ <u>교도소에는 징역형·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이하 “수형자(受刑者)”라 한다]를 수용한다.</u></p> <p>④ <u>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이하 “미결수용자”라 한다)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여자수형자나 여자미결수용자는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u></p> <p>⑤ 제4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u>행형법</u>』을</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여는 <u>行刑法</u>을 적용한다.</p> <p>⑥ <u>矯導所</u>의 명칭·位置 및 職制에 관한 사항은 <u>大統領</u>승으로 정한다.</p> <p>⑦ <u>未決收容者</u>를 收容하기 위하여 <u>矯導所</u> 및 <u>大統領</u>승의 정하는 部隊안에 <u>未決收容室</u>을 둘 수 있다.</p> <p>⑧ <u>矯導所長</u>·支所長 또는 <u>未決收容室</u>이 設置된 部隊의 長(이하 “<u>所長</u>”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u>第3項</u>의 <u>規定</u>에 의하여 <u>矯導所</u>로 移送하여야 할 <u>收容者</u>를 <u>3月</u>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u>범위안에서 계속하여</u> 收容할 수 있다.</p> <p>第3條 (矯導所의 巡廻點檢 등) ① <u>參謀總長</u>은 <u>矯導所</u> 및 <u>未決收容室</u>을 巡廻點檢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巡廻點檢하게 할 수 있다.</p> <p>② <u>軍判事</u>와 <u>檢察官</u>은 <u>矯導所</u> 및 <u>未決收容室</u>을 수시로 살펴 볼 수 있다.</p> <p>③ <u>第2項</u>에 規定된 者외의 者가 <u>學術研究</u> 기타 正當한 이유로 <u>矯導所</u>를 <u>參觀</u>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미리 <u>所長</u>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p> <p>第4條 (請願) ① <u>收容者</u>가 그 處遇에 不服하는 때에는 <u>參謀總長</u> 또는 <u>巡廻點檢公務員</u>에게 請願할 수 있다.</p> <p>② <u>收容者</u>가 <u>參謀總長</u>에게 請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書面을 <u>所長</u>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u>矯導官</u>은 請願書를 開封하지 못한다.</p> <p>③ <u>巡廻點檢公務員</u>에 대한 請願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u>巡廻點檢公務員</u>이 口述에 의한 請願을 듣는 때에는 <u>矯導官</u>을 참여 시키지 못한다.</p> <p>④ <u>第2項</u>의 <u>規定</u>에 의하여 <u>參謀總長</u>이 請願에 대한 決定을 하는 때에는 文書로써 하여야 하며, <u>所長</u>은 그 決定書를 지체없이 請願人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第5條 (矯導官의 執務規程) <u>矯導所</u>에서 <u>行刑業務</u>를 다루는 <u>矯導官</u>의 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國防部</u>승으로 정한다.</p> | <p>적용한다.</p> <p>⑥ <u>교도소</u>의 명칭·위치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⑦ <u>미결수용자</u>를 수용하기 위하여 <u>교도소</u>와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부대 안에 <u>미결수용실</u>을 둘 수 있다.</p> <p>⑧ <u>교도소장</u>·지소장 또는 <u>미결수용실</u>이 설치된 부대의 장(이하 “<u>소장</u>”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u>제3항</u>에 따라 <u>교도소</u>로 이송하여야 할 <u>수용자</u>를 <u>3개월</u>이 넘지 아니하는 <u>범위에서 계속</u> 수용할 수 있다.</p> <p>제3조 (교도소의 순회점검 등) ① <u>참모총장</u>은 <u>교도소</u> 및 <u>미결수용실</u>을 <u>순회점검</u>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순회점검</u>하게 할 수 있다.</p> <p>② <u>군판사와 검찰관</u>은 <u>교도소</u>와 <u>미결수용실</u>을 수시로 살펴볼 수 있다.</p> <p>③ <u>제2항</u>에서 규정된 자 외의 자가 <u>학술연구</u>나 그 밖의 正當한 이유로 <u>교도소</u>를 <u>참관</u>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미리 <u>소장</u>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 (청원) ① <u>수용자</u>가 그 처우에 불복하는 때에는 <u>참모총장</u>이나 <u>순회점검</u>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p> <p>② <u>수용자</u>가 <u>참모총장</u>에게 <u>청원</u>하려는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u>소장</u>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교도관</u>은 그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p> <p>③ <u>순회점검</u>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u>서면</u>이나 <u>구술</u>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 <u>순회점검</u> 공무원이 <u>구술</u>에 의한 청원을 들을 때에는 <u>교도관</u>을 참여 시키지 못한다.</p> <p>④ <u>제2항</u>에 따라 <u>참모총장</u>이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u>문서</u>로써 하여야 하며, <u>소장</u>은 그 결정서를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제5조 (교도관의 직무규정) <u>교도소</u>에서 <u>행형(行刑)</u> 업무를 다루는 <u>교도관</u>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방부령</u>으로 정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收容</p> <p>第6條 (新入者の 收容等) ①所長은 收容者로서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新入하는 者(이하 “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執行指揮書 및 裁判書 기타 書類를 調査·確認한 후 收容하여야 한다.</p> <p>②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軍醫官의 健康診斷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 결과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서 適當한 治療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者와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傳染病에 걸린 者에 대하여는 第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第7條 (身體檢査等) ①所長은 新入者의 身體와 衣類를 檢査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촬영하여야 한다.</p> <p>②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受刑중인 者에 대하여도 身體와 衣類를 檢査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촬영할 수 있다.</p> <p>第8條 (收容方法) 收容者는 獨房收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共同收容할 수 있다.</p> <p>第9條 (共同收容) ①共同收容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居室을 區別하여 收容한다. 다만, 收容者의 罪質·性格·犯數·年齡·經歷 또는 刑期 등을 고려하여 居室을 별도로 區別하여 收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將官級將校 및 이와 동등의 軍務員 2. 將官級외의 將校, 准士官 및 이와 동등의 軍務員 또는 士官候補生 3. 兵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者 <p>②第1項의 規定은 作業場의 就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③教育·教誨·診察하거나 病室에 收容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p> |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수용(收容)</p> <p>제6조 (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새로 들어오는 자[이하 “신입자(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확인한 후 수용하여야 한다.</p> <p>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의관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교도소나 미결수용실에서 適當한 治療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와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병원 이송에 관한 제27조를 준용한다.</p> <p>제7조 (신체검사 등) ① 소장은 신입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p> <p>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도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p> <p>제8조 (수용 방법) 수용자는 독방에 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수용할 수 있다.</p> <p>제9조 (공동 수용) ① 공동 수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居室)을 구별하여 수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죄질·성격·범수(犯數)·연령·경력 및 형기(刑期) 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별하여 수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관급장교와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군무원 2. 장관급 외의 장교, 준사관과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군무원 또는 사관 후보생 3. 병(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 <p>② 제1항의 규정은 작업장의 취업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③ 교육·교회(教誨: 선도·교화)·진찰하거나 병실에 수용하는 때에는 제1항</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아니할 수 있다. 第10條 (收容者の 移送) 所長은 收容者の 收容·作業·教化 기타 處遇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參謀總長의 승인을 얻어 收容者를 다른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移送할 수 있다. 第11條 (死刑囚의 收容) 死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未決收容室에 收容한다.</p> | <p>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u>교화와 그 밖의</u>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u>교도소 나 미결수용실</u>에 이송할 수 있다. 제11조 (사형수의 수용)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p> |
| <p>第3章 警戒監護</p> | <p>제3장 경계감호</p> |
| <p>第12條 (保護器具) ①收容者の 逃走·暴行·騷擾 또는 自殺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保護器具를 사용할 수 있다. ②保護器具의 종류·규격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 <p>제12조 (보호기구) ① 수용자의 도주·폭행·<u>소요(騷擾)</u> 또는 자살의 방지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보호기구의 종류·규격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p> |
| <p>第13條 (武器의 사용) ①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1. 矯導官에 대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事態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지니고 그 投棄命令에 복종 하지 아니하는 때 3. 달아날 目的으로 많은 사람이 騷擾하는 때 4. 달아나고자 하는 者가 制止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달아나고자 하는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人命·身體·建物 기타 施設과 機具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矯導官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밖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 收容者에 대한 奪取의 沮止, 建物 기타 施設과 武器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p> | <p>제13조 (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교도관에 대하여 <u>폭행이나</u> 협박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u>폭행이나</u>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지니고 그 <u>투기(投棄) 명령</u>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달아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소요하는 경우 4. <u>달아나려는 자가 제지에 따르지</u> 아니하거나 계속 달아나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인명·신체·<u>건물과 그 밖의</u> 시설과 기구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도관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안(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 밖에서의 작업 또는 호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u>한도</u>에서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p> |

| 현행 | 정비안 |
|--|---|
| <p>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u>한도안에서</u> 收容者외의 者에 대하여도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p> <p>第14條 (收容者의 緊急移送等) ①所長은 天災地變 기타 事變으로 인하여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에서는 避難의 方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다른 곳에 移送할 수 있다.</p> <p>②다른 곳에서의 移送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釋放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는 釋放後 24時間 이내에 矯導所 또는 가까운 憲兵隊나 국가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p> <p>④정당한 이유없이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刑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面會와 書信</p> <p>第15條 (面會와 書信의 受發) ①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他人과 面會하거나 書信을 受發할 수 있다. 다만, 搜查중인 未決收容者에 대하여는 檢察官이 이를 許可 한다.</p> <p>②收容者의 面會와 書信受發은 教化 또는 處遇上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③收容者의 面會와 書信受發은 矯導官의 참여와 檢閱을 요한다. 다만,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 面會의 경우를 제외한다.</p> <p>④收容者가 受發하는 書信의 檢閱·發送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p> <p>⑤所長이 교부를 許可하지 아니한 書信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釋放할 때 本人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⑥面會에의 참여, 書信의 檢閱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 <p>1.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p> <p>2.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p> <p>3. 건물과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협 방지</p> <p>제14조 (수용자의 긴급이송 등) ① 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 안에서는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다른 곳에 이송할 수 있다.</p> <p>②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석방된 자는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도소나 가까운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p> <p>④ 정당한 이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자는 형법 제145조에 따라 처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면회와 서신</p> <p>제15조 (면회와 서신의 수발)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면회하거나 서신을 수발(受發)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검찰관이 이를 허가 한다.</p> <p>② 수용자의 면회와 서신 수발은 교화나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p> <p>③ 수용자의 면회와 서신 수발에는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변호인 면회의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p> <p>⑤ 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⑥ 면회에의 참여와 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第16條 (書信등의 領置) 收容者에게 교부된 書信 기타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후 이를 領置한다. 다만, 教化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書信 기타 文書는 이를 領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p>제16조 (서신 등의 영치) 수용자에게 교부된 서신이나 그 밖의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領置)한다.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신이나 그 밖의 문서는 영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p>第5章 給與</p> | <p>제5장 급여</p> |
| <p>第17條 (衣類와 이부자리의 給與) ①收容者에게는 일정한 衣類와 이부자리를 給與한다.</p> | <p>제17조 (의류와 이부자리의 제공) ①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이부자리를 제공한다.</p> |
| <p>②衣類와 이부자리의 給與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 <p>② 의류와 이부자리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第18條 (食糧의 給與) ①收容者에게는 體質·健康·年齡 및 作業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食糧을 給與한다.</p> | <p>제18조 (식량의 제공) ① 수용자에게는 체질·건강·연령 및 작업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식량을 제공한다.</p> |
| <p>②食糧給與의 기준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 <p>② 식량 제공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p> |
| <p>第19條 (酒類등의 給與禁止) 收容者에 대하여는 酒類와 담배를 給與하지 못한다.</p> | <p>제19조 (주류 등의 급여금지) 수용자에 대하여는 주류(酒類)와 담배를 주지 못한다.</p> |
| <p>第20條 (衣類등의 自費負擔) ①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收容者에게 衣類·이부자리 및 食糧의 自費負擔을 許可할 수 있다.</p> | <p>제20조 (의류 등의 자비 부담)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에게 의류·이부자리 및 식량의 자비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p> |
| <p>②自費負擔의 衣類·이부자리 및 食糧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 <p>② 자비 부담의 의류·이부자리와 식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第6章 衛生과 醫療</p> | <p>제6장 위생과 의료</p> |
| <p>第21條 (理髮과 面刀) 受刑者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남은 刑期가 2月 이하인 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 <p>제21조 (이발과 면도) 수형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남은 형기(刑期)가 2개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
| <p>第22條 (運動 및 沐浴의 허용) 所長은 收容者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運動과 沐浴을 하게 하여야 한다.</p> | <p>제22조 (운동 및 목욕의 허용)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p> |
| <p>第23條 (傳染病의 豫防) 所長은 收容者에게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 <p>제23조 (전염병의 예방) 소장은 수용자에게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p>第24條 (病室收容등) 所長은 疾病에 걸린 收容者에 대하여는 病室에 收容하거나</p> | <p>제24조 (병실 수용 등)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는 병실에 수용하거나</p> |

| 현행 | 정비안 |
|--|---|
| <p>기타 적당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p> <p>第25條 (隔離收容) 所長은 傳染病에 걸린 收容者에 대하여는 다른 收容者와 隔離 收容하여야 한다.</p> <p>第26條 (自費治療)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收容者가 自費로 治療하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p> <p>第27條 (病院移送) ①所長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안에서 收容者에게 적당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軍病院에 移送할 수 있다.</p> <p>②軍病院에서 적당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收容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外 病院등으로 移送하여 治療하게 할 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者는 收容者에 준한다.</p> | <p>나 그 밖에 적당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p> <p>제25조 (격리 수용)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른 수용자와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p> <p>제26조 (자비 치료)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가 자비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27조 (병원 이송) ① 소장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 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군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p> <p>② 군병원에서 적당한 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외 병원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p> |
| <p>第7章 教育·訓練과 敎誨</p> | <p>제7장 교육·훈련과 교회(敎誨)</p> |
| <p>第28條 (敎誨) 所長은 受刑者가 자기가 信奉하는 宗派의 敎義에 의한 敎誨를 申請하는 때에는 그 宗派에 위촉하여 敎誨를 할 수 있다.</p> <p>第29條 (教育과 訓練) 受刑者에게는 社會 또는 軍에 復歸함에 필요한 教育 또는 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p> <p>第30條 (圖書의 閱覽) 所長은 收容者가 圖書의 閱覽을 申請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第31條 (教育規程) 敎誨의 申請방법, 教育·訓練의 科目·時間과 圖書의 閱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 <p>제28조 (교회) 소장은 수형자가 자기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敎義)에 따른 교회(敎誨)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p> <p>제29조 (교육과 훈련) 수형자에게는 사회나 군에 복귀함에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30조 (도서의 열람)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p> <p>제31조 (교육규정) 교회(敎誨)의 신청 방법, 교육·훈련의 과목·시간과 도서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p> |
| <p>第8章 作業</p> | <p>제8장 작업</p> |
| <p>第32條 (作業) ①作業은 受刑者의 刑期·年齡·건강 및 特技등을 고려하여 課한다.</p> | <p>제32조 (작업) ① 작업은 수형자의 형기·연령·건강 및 특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한다.</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정비안 |
|--|---|
| <p>②所長은 受刑者의 社會復歸와 技術習得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受刑者로 하여금 외부 企業體등에 通勤作業하게 할 수 있다.</p> <p>③作業의 종류·시간, 通勤作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 <p>② 소장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형자로 하여금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p> <p>③ 작업의 종류·시간과 통근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p> |
| <p>第33條 (休日의 作業) 國家慶祝日·日曜日 기타 公休日에는 作業을 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밥짓기·清掃·看護·經理 기타 필요한 作業은 예외로 한다.</p> | <p>제33조 (휴일 작업) 국가 경축일, 일요일과 그 밖의 공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밥짓기, 청소, 간호, 경리와 그 밖에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p> |
| <p>第34條 (作業의 免除) 受刑者중 祖父母·父母·妻子·兄弟 또는 姉妹의 訃告를 받은 者는 2日間 作業을 免除하고, 父母 또는 妻의 忌日을 맞은 者는 1日間 作業을 免除한다.</p> | <p>제34조 (작업의 면제) 수형자 중 조부모·부모·처자·형제 또는 자매의 부고(訃告)를 받은 자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하고, 부모 또는 처의 기일(忌日)을 맞은 자는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p> |
| <p>第35條 (申請에 의한 作業) 禁錮와 拘留刑을 받은 者에게는 申請에 의하여 作業을 課할 수 있다.</p> | <p>제35조 (신청에 따른 작업)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p> |
| <p>第36條 (作業收入등) ①作業으로 인한 收入은 國庫에 귀속된다.</p> <p>②受刑者로서 作業에 就業하는 者에게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作業의 종류·成績 및 態度등을 고려하여 作業賞與金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賞與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지급한다. 다만, 本人의 家族生活扶助 또는 教化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釋放전이라도 作業賞與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p> | <p>제36조 (작업 수입 등) ① 작업으로 인한 수입은 국고에 귀속된다.</p> <p>② 수형자로서 작업에 취업하는 자에게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성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扶助)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석방 전이라도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p> |
| <p>第37條 (慰勞金 및 弔慰金의 지급) ①受刑者가 就業중 負傷을 당하거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에 의하지 아니한 事故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不具가 된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慰勞金 또는 弔慰金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慰勞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지급하고, 弔慰金은 그 相續人에게 지급한다.</p> | <p>제37조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 ① 수형자가 취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弔慰金)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第9章 領置</p> <p>第38條 (携帶金品の 領置) ①收容者의 携帶金品은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領置한다. 다만, 領置의 價値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p> <p>②所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을 本人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p> <p>第39條 (領置金品の 使用許可) 所長은 收容者가 領置金品으로 父母 또는 妻子의 <u>生計扶助 기타</u> 正當한 用途에 充當할 것을 申請한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p> <p>第40條 (收容者에 對한 金品교부) ①所長은 收容者에 對한 金品의 交부를 申請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p> <p>②所長은 收容者에게 보내온 金品으로서 本人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 物品을 本人에게 交부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發送人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p> <p>③第2項의 경우 發送人이나 發送人의 住所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한 후 <u>6月이 經過하여도</u> 交부를 請求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그 物品은 國庫에 귀속된다. 다만, 價値가 없다고 인정되는 物品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p> <p>第41條 (領置金品の 반환) ①領置金品은 釋放할 때 本人에게 반환한다.</p> <p>②死亡한 收容者가 남겨 놓은 金品은 請求에 의하여 그 相續人에게 交부한다.</p> <p>③收容者의 死亡後 1年이 經過하여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없을 때에는 그가 남겨 놓은 金品은 國庫에 귀속된다.</p> <p>④逃走者가 남겨 놓은 金品은 請求에 의하여 本人이나 本人의 直系尊屬 또는</p> |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영치(領置)</p> <p>제38조 (휴대금품의 영치) ① 수용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영치한다. 다만,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p> <p>② 소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p> <p>제39조 (영치금품의 사용 허가) 소장은 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 또는 처자의 <u>생계 부조나 그 밖의</u> 정당한 용도에 충당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제40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u>있을 경우에는</u>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으로서 본인이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송인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p> <p>③ 제2항의 경우 발송인이나 발송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u>6개월이 지나도</u>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p> <p>제41조 (영치금품의 반환) ①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반환한다.</p> <p>② 사망한 수용자가 남겨 놓은 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그 상속인에게 교부한다.</p> <p>③ 수용자의 사망 후 1년이 지나도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가 남겨 놓은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p> <p>④ 도주자가 남겨 놓은 금품은 청구에 따라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直系卑屬에게 교부한다. 다만, 逃走 후 1年이 경과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귀속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10章 賞罰</p> <p>第42條 (賞으로서의 處遇) ①所長은 收容者로서 優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賞으로서의 處遇를 할 수 있다. ②賞으로서의 處遇의 종류와 방법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 ③1年 이상 服役한 受刑者로서 그 刑期의 2分の 1을 경과하고 優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行實이 優秀한 者에게는 國防部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刑期間중 3週 이내의 歸休를 許可할 수 있다. 歸休期間은 刑執行期間에 넣어 計算한다.</p> <p>第43條 (規律) 收容者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規律을 준수하여야 한다.</p> <p>第44條 (懲罰) ①收容者가 規律을 위반한 때에는 懲罰에 處한다. ②懲罰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 決定한다. ③懲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警告 2. 賞으로서의 處遇의 정지 또는 取消 3. 2月 이내의 圖書閱覽 제한 4. 申請에 의한 作業의 정지 5. 作業賞與金の 일부 또는 전부의 削減 6. 2月 이내의 禁置 ④懲罰을 科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p>第45條 (懲罰委員會) ①收容者의 懲罰에 관한 사항을 議決하기 위하여 矯導所와 未決收容室에 懲罰委員會를 둔다. ②懲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人 이상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長은 所長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當해 矯導所 또는 未決收容室 소속 將校중에서 任命한다.</p> | <p>직계비속에게 교부한다. 다만, 도주 후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상벌</p> <p>제42조 (상으로서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로서 優우치는 빛이 뚜렷하거나 행실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賞)으로서의 처우를 할 수 있다. ② 상으로서의 처우의 종류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이 지나고 優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실이 우수한 자에게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 기간 중 3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歸休)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넣어 계산한다.</p> <p>제43조 (규율의 준수) 수용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44조 (징벌) ①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② 징벌은 제45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상으로서의 처우의 정지 또는 취소 3. 2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 4.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5.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6. 2월 이내의 금치(禁置) ④ 징벌을 과(科)할 때에 필요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 (징벌위원회) ①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미결수용실에 징벌위원회를 둔다. ② 징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교도소 또는 미결수용실 소속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p> |

| 현행 | 정비안 |
|---|--|
| <p>第46條 (懲罰의 執行停止 및 免除) ① 所長은 懲罰을 받은 者에게 疾病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懲罰의 執行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懲罰을 받은 者가 누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 懲罰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11章 假釋放</p> | <p>제46조 (징벌의 집행정지 및 면제) ① 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징벌을 받은 자가 누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징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가석방</p> |
| <p>第47條 (假釋放審査委員會) ① 刑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의 適格與否를 審査하기 위하여 矯導所에 假釋放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査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4人 이상 6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委員長은 所長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軍法務官과 憲兵將校중에서 위촉한다. ④ 審査委員會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國防部令으로 정한다.</p> | <p>제47조 (가석방심사위원회) ①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과 헌병 장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p> |
| <p>第48條 (假釋放의 審査) ① 審査委員會가 假釋放의 適格與否를 審査함에 있어서는 受刑者의 年齡, 罪名, 犯罪의 動機, 刑期, 受刑중의 行實, 假釋放후의 生計手段과 生活環境, 再犯의 危險性 유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審査委員會가 假釋放適格決定을 한 때에는 5日 이내에 國防部長官에게 假釋放許可를 申請하여야 한다.</p> | <p>제48조 (가석방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다음 각 호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 2. 죄명 3. 범죄의 동기 4. 형기(刑期) 5. 수형 중의 행실 6. 가석방 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7. 재범의 위험성 유무 <p>②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
| <p>第49條 (假釋放의 許可) 國防部長官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會의 假釋放許可申請이 正當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假釋放을 許可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12章 釋放</p> | <p>제49조 (가석방의 허가) 국방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가석방 허가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석방</p> |
| <p>第50條 (釋放) 收容者의 釋放은 赦免, 刑期終了 또는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p> | <p>제50조 (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 종료나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p> |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정 비 안 |
|---|---|
| <p>의하여 關係書類를 調査한 후 所長이 이를 행한다.</p> <p>第51條 (釋放時期) ①赦免, 假釋放, 刑의 執行免除, 減刑에 의한 釋放은 그 書類 到達후 12時間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p> <p>②權限이 있는 者の 命令에 의한 釋放은 書類到達후 5時間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p> <p>③刑期終了에 의한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행하여야 한다.</p> <p>第52條 (被釋放者의 일시 收容保護) 被釋放者가 疾病으로 인하여 歸還하기 곤란한 때에는 本人의 請求에 의하여 일시 矯導所내에 收容保護할 수 있다.</p> <p>第53條 (歸還旅費등) 被釋放者가 歸還에 필요한 旅費 또는 衣類를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그 旅費 또는 衣類를 當해 矯導所에서 빌려 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13章 死刑執行과 屍體處理</p> | <p>여 관계 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한다.</p> <p>제51조 (석방 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형기 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p> <p>제52조 (피석방자의 일시 수용보호)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귀환(歸還)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도소 내에 수용 보호할 수 있다.</p> <p>제53조 (귀환 여비 등) 피석방자가 귀환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를 지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여비 또는 의류를 해당 교도소에서 빌려 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사형집행과 시체의 처리</p> |
| <p>第54條 (死刑의 執行) ①死刑의 執行場所는 參謀總長이 정한다.</p> <p>②國家慶祝日·日曜日 기타 公休日에는 死刑을 執行하지 아니한다.</p> <p>第55條 (屍體의 假埋葬등) 收容者가 死亡한 때에 그의 親族 또는 親知가 그 屍體를 즉시 引受하지 아니하면 이를 假埋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火葬할 수 있다.</p> <p>第56條 (屍體 및 遺骨의 교부) 屍體 또는 遺骨은 親族 또는 親知의 請求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合葬후에는 屍體 또는 遺骨의 교부를 請求할 수 없다.</p> <p>第57條 (屍體 및 遺骨의 合葬) 屍體 또는 遺骨을 假埋葬한 후 2年을 경과하여도 그 교부를 請求하는 者가 없는 때에는 이를 合葬할 수 있다.</p> <p>第58條 (屍體의 解剖) 受容者의 屍體는 學術研究上 필요한 경우로서 本人의 遺言 또는 相續人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p> | <p>제54조 (사형의 집행) ① 사형의 집행 장소는 참모총장이 정한다.</p> <p>② 국가경축일·일요일과 그 밖의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p> <p>제55조 (시체의 가매장 등)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매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할 수 있다.</p> <p>제56조 (시체 및 유골의 인계) 시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따라 인계한다. 다만, 제57조에 따른 합장 후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인계를 청구할 수 없다.</p> <p>제57조 (시체 및 유골의 합장)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후 2년이 지나도 그 인계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합장(合葬)할 수 있다.</p> <p>제58조 (시체의 해부) 수용자의 시체는 학술 연구상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유언이나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p> |

| 현행 | 정비안 |
|--|--|
| <p>한하여 <u>解剖</u>를 목적으로 이를 <u>醫科大學</u> (<u>齒科大學</u>을 포함한다)·<u>病院</u>(<u>軍病院</u>을 포함한다) 기타 <u>研究機關</u>에 보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14章 未決收容</p> <p>第59條 (未決收容室의 參觀禁止) 未決收容室은 參觀할 수 없다.</p> <p>第60條 (未決收容者의 分離收容) 未決收容室에 收容된 者로서 事件에 <u>相互關聯</u>인 있는 者는 分離收容하고 서로 만나 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p> <p>第61條 (未決收容者의 理髮) 未決收容者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本人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p> <p>第62條 (辯護인과의 面會등) 未決收容者와 辯護人(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과의 面會에는 矯導官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錄音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未決收容者를 監視할 수 있다.</p> <p>第63條 (作業과 敎誨) ①未決收容者에게는 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作業을 課하거나 敎誨를 할 수 있다. ②第28條·第32條第1項·第33條·第34條·第36條 및 第3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決收容者의 作業과 敎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 <p>해부를 목적으로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u>병원</u>(<u>군병원</u>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에 보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장 미결수용(未決收容)</p> <p>제59조 (미결수용실의 참관 금지)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p> <p>제60조 (미결수용자의 분리 수용)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u>서로 관련</u>이 있는 자는 분리 수용하고 서로 만나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p> <p>제61조 (미결수용자의 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p> <p>제62조 (변호인과의 면회 등)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의 면회에는 <u>교도관</u>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음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p> <p>제63조 (작업과 교회) ①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u>부과</u>하거나 <u>교회</u>(<u>敎誨</u>)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결수용자의 작업과 교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p> |